

2014년

고충민원 조정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 부패방지 · 행정심판 · 제도개선



목 차

총론	5
국방보훈민원	9
1. 대체 농로 신설 요구 (집단민원, 생활불편 민원)	10
2. 관광리조트 조기착공을 위한 군부지사용 요구 (규제완화 민원)	14
3. 천안 서북구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집단민원(307명), 규제완화민원, 장기숙원 해결)	18
4. 국유지에 위치한 농로포장 요구 (집단민원(77명), 생활불편민원, 장기숙원 해결)	24
5.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산업단지 조성 군 동의 요구 (국방민원, 규제완화민원)	28
경찰민원	33
1. 태백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대책 요구 (집단민원(61명), 안전민원)	34
2. 부산 광안대교 소음피해 대책 요구 (집단민원(31명), 환경민원, 장기숙원 해결)	38
3. 경찰대학 이전부지 인접 미수용 토지 대책 요구 (집단민원(18명), 생활불편민원)	43
4. 경남 고성군 교통사고 빈발구간 안전대책 마련 (안전민원)	47
산업농림환경민원	51
1. 광명역세권 ○○아파트 교통소음 저감대책 수립 (집단민원(2,506세대), 환경민원)	52
2. 목포내항 주변 해수 역류 피해 방지대책 요구 (집단민원(4,263명), 안전민원, 피해구제민원)	57
도시수자원민원	61
1. 전북 김제 한센인정착촌 고층 및 민민갈등 해결 (피해구제민원)	62
2. 하남미사공공주택사업지구내 천주교 구산성지 존치계획 (피해구제민원)	67
3. 강원 정선 동강 소재 세월교 재축 (집단민원(80명), 안전민원, 생활불편민원, 장기숙원 해결)	72
4. 학익유수지 환경개선사업 조속 추진 요구 (집단민원(2,626명), 환경민원)	78
5. 양재대로 보도육교 설치 (집단민원(175명), 안전민원, 생활불편 민원)	82

6. 강원혁신도시 단독주택용지 도시가스 공급 요구 (집단민원(506명), 생활불편민원)	85
7. 양주신도시내 마을 진출입도로 안전대책 요구 (집단민원(252명), 안전민원)	89
8. 공주 쌍신 산업단지 개발 기업고충 해결 (기업민원, 경제활성화 관련 민원)	92
9. 부산에코델타시티 이주대책 시행 (집단민원(12명), 피해구제 민원)	95

교통도로민원 99

1. ○○민자고속도로 개설로 인한 도로구조 개선 (집단민원(100명 이상), 생활불편 민원)	100
2. 구평 IC교 성토구간 교량화(생활불편민원, 집단민원(1,281명))	107
3. 경주 건천송전선로 지중화(환경민원, 집단민원(719명), NIMBY민원)	112
4. 북영천역 인근 통로암거 신설 요구 (안전민원, 생활불편민원, 집단민원(9,507명))	114
5. 경주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성토부 교량화(집단민원(1,112명), 환경민원, NIMBY민원)	118
6. ○○택지개발 사업 관련 교차로 개선 (집단민원(601명), 안전민원)	121
7. 태안 신덕마을 통로암거 설치 (집단민원(57명), 안전민원, 생활불편민원)	124
8. 원주-강릉 복선철도사업 통로암거 위치변경 요구 (집단민원(82명), 안전민원, 생활불편민원)	127
9. 경부선 구미 상미교 확장 (집단민원, 생활불편 민원, 장기 숙원 해결)	133
10. 갈계마을 부체도로 신설 요구 (집단민원(216명), 생활불편민원)	136
11. ○○고속도로 통행불편으로 인한 영농피해구제 (집단민원(69명), 생활불편 민원)	140
12. 고속철도 건설 관련 지하차도 개선 (집단민원(1,537명), 안전민원)	146
13. 택지사업지구내 어린이 통학로 개선 (집단민원(1,060세대), 안전민원, 생활불편민원)	151
14. 횡성 둔내정거장 통로암거 확장 (집단민원(12가구), 생활불편 민원)	155
15. 항공기 소음 주민 지원사업 변경 (집단민원(779명), 환경민원)	158
16. 연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개선 (집단민원(120명), 생활불편민원)	161
17. 지방도 확장 개선 (집단민원(185명), 안전민원, 생활불편민원)	165
18. 도서주민 교통 불편 해소 (집단민원(151명), 생활불편민원)	169

고충민원 특별조사팀 175

1. 우곡교 차량통행 등 교통난 해소 요구 (13,048명의 집단민원, 지역갈등 민원, 의회 등이 개입한 정치적 민원, NIMBY민원)	176
--	-----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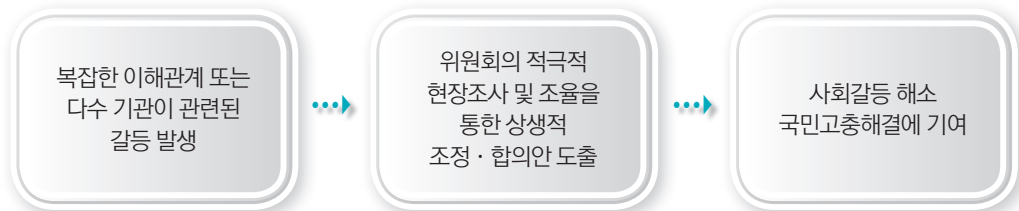
A stylized graphic of three overlapping leaf-like shapes in shades of gray, positioned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2014년
고충민원
조정사례집

총론

○ 위원회의 현장 조정 · 합의

-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



○ 위원회의 현장 조정 · 합의 건수는 전반적인 증가추세

- 특히 2012년 이후 매년 40건 이상을 현장 조정 및 합의를 통해 해결

<표> 연도별 고충민원 현장 조정 및 합의 추진 현황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건수	28	26	19	24	42	43	54

○ 2014년에는 54건의 주요 민원을 현장 조정 및 합의로써 해결

<표> 현장 조정 및 합의 분야

민원 분야	교통 도로	도시 수자원	주택 건축	경찰	국방 보훈	산업 농림	행정 문화	특별 조사	합계
건수	20	11	7	6	5	2	2	1	54

○ 2014년 조정사례 42건 내용 분석

- 대부분 집단민원(신청인 10인 이상)의 성격을 지님
- 생활불편대책 및 안전대책을 조정안을 마련한 사례가 많음

<표> 현장조정 사례 내용 분류

민원 종류	집단민원	생활불편	안전민원	환경민원 NIMBY	규제완화 경제활성화	장기숙원 해결	피해구제 민원
건수	36	20	13	7	6	5	4

<표> 현장조정 사례 내용 분류

조정 사례 제목	집단 민원	생활 불편 민원	규제 완화/경제 활성화	환경/ NIMBY	안전	피해 구제	장기 숙원
대체 농로 신설 요구	○	○					
관광리조트 조기착공을 위한 군부지사용 요구			○				
천안 서북구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		○				○
국유지에 위치한 농로포장 요구	○	○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산업단지 조성 군 동의 요구			○				
태백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대책 요구	○				○		
부산 광안대교 소음피해 대책 요구	○			○			○
경철대학 이전부지 인접 미수용 토지 대책 요구	○	○					
경남 고성군 교통사고 빈발구간 안전대책 마련					○		
광명역세권 ○○아파트 교통소음 저감대책 수립	○			○			
목포내항 주변 해수 역류 피해 방지대책 요구	○				○	○	
전북 김제 한센인정착촌 고충 및 민민갈등 해결						○	
하남미사공공주택사업지구내 천주교 구산성지존치계획						○	
강원 정선 동강 소재 세월고 재축	○	○			○		○
학익유수지 환경개선사업 조속 추진 요구	○			○			
양재대로 보도육교 설치	○	○			○		
강원혁신도시 단독주택용지 도시가스 공급 요구	○	○					
양주신도시내 마을 진출입도로 안전대책 요구	○				○		
공주 쌍신 산업단지 개발 기업고충 해결			○				
부산에코델타시티 이주대책 시행	○					○	
광양마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절차 이행 요구	○		○				
○○민자고속도로개설로인한도로구조개선	○	○					
구평IC교성토구간교량화	○	○					
경주 건천송전선로 지중화	○			○			
북영천역 인근 통로암거 신설 요구	○	○			○		
경주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성토부 교량화	○			○			
○○택지개발사업관련교차로개선	○				○		
태안 신덕마을 통로암거 설치	○	○			○		
원주-강릉복선철도사업통로암거위치변경요구	○	○			○		
경부선 구미 상미구교 확장	○	○					○
갈계마을부체도로신설요구	○	○					
○○고속도로통행불편으로인한영농피해구제	○	○					
고속철도 건설 관련 지하차도 개선	○				○		
택지사업지구내 어린이 통학로 개선	○	○			○		
횡성 둔내정거장 통로암거 확장	○	○					
항공기 소음 주민 지원사업 변경	○			○			
연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개선	○	○					
지방도 확장 개선	○	○			○		
도서주민 교통 불편 해소	○	○					
우륵교 차량통행 등 교통난 해소 요구	○			○			
구미상모동 임시도로 포장요구	○	○					
서산 롯데캐슬 사업부지 지적정리	○		○				

(※ 집단민원 : 신청인 10인 이상의 민원)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 stylized graphic of three overlapping leaf-like shapes in shades of gray, positioned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2014년
고충민원
조정사례집

국방보훈민원

- 01 대체 농로 신설 요구
- 02 관광리조트 조기착공을 위한 군부지사용 요구
- 03 천안 서북구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 04 국유지에 위치한 농로포장 요구
- 05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산업단지 조성 군 동의 요구

대체 농로 신설 요구

민원번호 : 2BA-1401-160791(국방보훈민원과)

▶ 민원 개요

공군 오산기지 확장 공사와 주변 개발로 인해 농로가 사라져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처했으나 대체 농로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에 대해 국방부와 평택시가 협력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조정·중재

*집단민원, 생활불편 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리 주민
- 피신청인: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장, 공군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장
- 관련기관: 평택시장,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장

2) 민원주요내용

- 공군 오산기지 확장 공사와 주변 개발로 인해 농로가 사라져 농사가 불가능한 상태에 처했다며 대체 농로 신설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기존 농로 폐쇄의 책임 소재 규명
- 농로 신설시 예산의 효율적 사용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지역 전체가 농지여서 농로가 여러 개 있었는데, 좌측은 주택지로 개발되고, 우측은 부대가 확장되면서 농로가 모두 사라짐
- (국방부) 부대 확장공사 당시 지자체로부터 대체농로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지 못했으며, 따라서 이를 위한 예산 또한 편성되어 있지 않음

- (평택시) 최종적으로 남아있던 농로가 폐쇄된 것은 부대 확장으로 인한 것이므로 국방부에서 대체농로를 신설해야 함

2) 민원특성 : 생활불편 민원, 국방부와 지자체가 함께 관련된 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및 자료 조사를 통해 본 민원 발생 원인 분석(피신청인 모두에게 책임 있음)
-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구거를 복개해 대체 농로를 신설하기로 결정
- 구거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를 관련기관으로 참석시킨 후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해 조정 · 중재안 도출

2) 갈등해결수단 : 갈등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해결 중심의 대안 도출

5. 조정 결과

- (국방부) 공군 오산기지 확장 공사 준공일까지 부대 외곽 지역에 총연장 350m의 구거(폭50Cm) 및 농로(폭3m)를 신설
- (평택시) 신설된 농로를 콘크리트 포장
- (한국농어촌공사) 기존 국방부 토지에 있던 구거와 신설 구거를 교환한 후 농민들이 구거와 농로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 관리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농민들이 주택가를 통과해 농지로 접근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분쟁 →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 발생	•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

2) 시사점

- 위원회 조정이 없었다면 민원인의 피해에 각 기관이 모두 책임을 미루었을 것임
- 공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 조정이 성사되어, 큰 예산 투입 없이 설계변경을 통해 민원 해결(조정 시기의 중요성)

'서울신문

2014년 03월 31일 (월)
정책 27면

'공군 오산기지 갈등' 중재로 봉합

기지확장사업 싸고 軍·주민 마찰
권익위, 조정회의서 합의 끌어내

공군의 오산기지 확장 사업으로 경기 평택시 일대 농로를 둘러싸고 벌어진 군과 주민 간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공군 측은 2012년부터 기지 확장 사업을 추진하며 평택시 고덕면 인근 농지를 매입했다. 매입 부지에 농로가 포함되어면서 기지 밖 주변 농지들의 진출입로가 사라지게 됐다. 지난해 초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돼 기존 농로가 차단되자 농민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다른 주민의 사도(개인 도로)를 침범해 먼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은 군에 대체 농로 개설을 요구했으나

설계 변경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거절됐다.

권익위는 네 차례의 현장 조사를 통해 매입된 농지와 농로를 살펴보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확인했다. 또 공군 측의 공사 상황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들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쳤다. 그 결과 지난 28일 평택시청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중재안에 따라 국방부와 공군은 오산기지 확장 지역 외곽에 농민들을 위한 대체 농로와 수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최학균 권익위 상임위원은 "관계 기관들이 현장에서 주민의 어려움을 직접 살펴보고 대안을 찾기 위한 협업으로 지혜를 모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세계일보

2014년 03월 29일 (토)
사회 10면

오산 공군기지 인근 농로
권익위 중재로 재개설 합의

박세준 기자 3junpark@segye.com

공군 오산기지 확장사업으로 폐쇄된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일대 농로가 다시 개설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평택시청에서 농민과 국방부, 공군, 평택시, 한국농어촌공사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농로 재개설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이번 중재에 따라 국방부와 공군은 대체 농로와 수로를 개설해 주고 평택시는 농로 콘크리트 포장을, 한국농어촌공사는 폐구거(현재 폐쇄된 상태인 물이 흐르는 길)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기로 했다.

군부대 확장 대체 농로 개설 민원 해결한 권익위



【서울=뉴시스】국민권익위원회 최학균 상임위원(왼쪽 여섯번째)이 28일 오후 경기 평택시청에서 공군 오산기지 확장으로 농로가 폐쇄되면서 발생한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국방부와 공군이 기지 외곽에 대체농로와 수로를 개설하도록 중재한 후 민원인 등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4.03.28. (사진=국민권익위 제공)

photo@newsis.com

관광리조트 조기착공을 위한 군부지사용 요구

민원번호 : 2AA-1402-290908 (국방보훈민원과)

▶ 민원개요

강원도 삼척시 일원에 추진 중인 관광리조트 조성공사의 조기착공을 위해 사업 부지 내에 있는 군 시설 부지를 사용하려 하나 사용허가가 나지 않고 있으니 해결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해당 군사시설을 이전하고 삼척시가 대체시설을 제공하여 리조트 착공을 통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기여하도록 조정·중재

*규제완화 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주)○○리조트 대표이사 조○○(대리인 회사원 황○○)
- 피신청인 : 국방부장관, 육군 제23보병사단장, 강원도 삼척시장
- 관련기관 : 강원도지사

2) 민원주요내용

- 관광리조트 공사의 조기착공을 위해 사업부지 내에 있는 군사시설부지 사용 허가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이 민원 사업(관광리조트 조성)의 시급성
- 군사시설(휴양소 및 창고) 부지의 이전 가능성 및 적절성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야 함
- (삼척시)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군(軍)이 제시하는 어떠한 사안도 수용 가능
- (군부대) 군사시설 부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는 없음
- (강원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으로 2017. 1. 개최예정인 프레올림픽(Pre-Olympic) 전까지 완공 필요

2) 민원특성 : 규제완화 민원, 국방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해 군사시설 이전·대체시설 제공 등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4회 : '14. 3. 18, 3. 26, 4. 4, 4. 21 ~ 22), 관계기관 협의('14. 3. 28)
- 군(軍)의 군사시설 사용여건을 보장
- 신청인은 와우산 해양관광리조트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민원 해소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상급기관 법령해석

5. 조정 결과

- (삼척시) 군사시설을 이전해 원형과 기능을 유지시키되, 기능 유지가 곤란할 경우 대체시설을 제공
- (국방부) 삼척시가 군부대 시설을 이전하면 그 부지사용을 허가
- (강원도) 이 민원 사업과 관련된 제반 행정사항을 적극 지원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차질 예상 • 부당한 법령의 적용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집단 및 기업의 고충이 발생	•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여건 조성 • 이 민원을 계기로 先기부 後양여토록 된 규정을 '15. 3. 개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42조(양여의 조건)를 개정하도록 하였음 ※ 공공사업의 경우, 국유지 先사용 가능

2) 시사점

- 약 3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군(軍) 부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민원이 해결
- 군(軍)은 대체시설을 사용하고, 신청인은 와우산 해양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을 착공함으로써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기여

KBS강릉

KBS강릉
2014년 05월 08일 (목) 방송

[뉴스9] 와우산 리조트 개발 탄력



[뉴스9] 와우산 리조트 개발 탄력

〈앵커멘트〉

사업장 내 군 시설물 이전 문제로 난항을 겪던 삼척 와우산 리조트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군부대가 군 시설물 이전과 리조트 공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터파기 공사가 한창인 삼척 와우산 리조트 공사현장입니다.

서울신문 ■ 서울매일

2014년 05월 09일 (금)
정책 25면

민원 해결 '권익위의 힘'

평창 올림픽 숙소 와우산리조트
軍시설물 이전문제로 착공 지연
갈등 중재... 기한 내 완공 가능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숙소의 착공 지연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최근 해결돼 기한 안에 완공이 가능해졌다. 대명리조트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숙박시설로 '삼척 와우산 해양관광 리조트' 건설을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 2417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에는 국비와 도비, 시비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사업부지에 있던 군부대 휴양시설 이전 문제로 국방부와 갈등을 빚으며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강원도와 삼척시는 2017년 프레올림픽

전에 리조트를 완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방부는 삼척시와 합의된 군부대 휴양소 대체 시설이 준비되기 전에는 부지 사용을 허가해 줄 수 없다고 버텼다.

리조트 측은 착공 지연 때 수천억원의 경제적 손실과 기업 이미지 손상 등이 우려된다며 지난 2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접수했다. 권익위는 관계자들을 모아 수차례의 실무 협의를 거친 끝에 합의를 도출했다.

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라 삼척시는 다른 부지에 군 휴양소를 이전해 주고 육군은 대체 휴양시설을 제공받기로 했다. 또 국방부는 군 휴양소 이전 후 리조트 측에 해당 부지의 사용을 허가해 주기로 했다. 강원도는 리조트가 완성되면 선수단 등에 숙소로 제공할 예정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간접과잉민원

경찰민원

산림청국민권익위원회

도시수자원민원

교통안전민원

간접민원 특별조사팀

천안 서북구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민원번호 : 2BA-1403-212742, 2BA-1402-137695, 2CA-1403-243467(국방보훈민원과)

▶ 민원 개요

천안 서북구 일대는 군 탄약창의 폭발물 안전거리로 인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불합리하게 넓게 설정되어 개발 등 재산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탄약재배치를 통해 폭발물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국민의 사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없도록 조정·중재하여 40여년 만에 주민 숙원 해결

*집단민원(307명), 규제완화민원, 장기숙원 해결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홍○○(천안 서북구 탄약창 주변 주민 307명 대표)
- 피신청인 : 천안시장(피신청인1), 육군 32보병사단장(피신청인2), 육군 탄약지원사령관(피신청인3)
- 관련기관 :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장

2) 민원주요내용

- 천안 서북구 일대 탄약창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불합리하게 넓게 설정되어,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어 완화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탄약고 현대화 공사로 인한 탄약재배치
- 탄약재배치에 따른 폭발물 안전거리 재산정
- 재산정한 폭발물 안전거리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천안시장) 천안시 서북구 지역은 교통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탄약창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발전을 저해받고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성 인정
- ※ 부대이전 계획과 도시개발 계획을 연계하여 기부대양여 방식 등을 통해 상생방안 협의가 필요

- (육군 32보병사단장) 2019년 부대통합계획에 따라 민원지역 일부를 훈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 설정되어 있는 폭발물 안전거리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성 인정
- (육군 탄약지원사령관) 민원지역은 탄약재배치 전 폭발물 안전거리를 기준으로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이므로 현실에 맞게 완화 검토 중
-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장) 훈련장 조성을 위한 경지정리와 관련해 피신청인 등과 협의 필요

2) 민원특성

- 규제 완화, 집단민원, 국방민원, 장기숙원 해결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민·군협의체 구성 등 조정·중재안 도출
- 자료검토,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합동회의 개최
- 폭발물 안전거리 재산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49만㎡(여의도 공원의 2배 면적) 완화
-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장 등 40년 숙원 해소

2) 갈등해결수단

- 대화를 통해 도출된 중재안을 활용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육군 탄약지원사령관) 이서지역을 포함하여 3탄약창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2014년 말까지 추진
- (천안시장, 육군 제32보병사단장, 육군 탄약지원사령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장) 기부대양여 방식 등으로 탄약창의 훈련장 등 군사시설과 도시계획이 연계될 수 있도록 민·군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1976년 천안 서북구 지역 사유지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약 1,229만㎡)	• 탄약재배치 및 폭발물 안전거리 재산정을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49만㎡ 완화

2) 시사점

- 4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노력한 결과, 군(軍) 부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40년 이상 지속되어온 주민의 사유 재산권 행사 제한이 완화되는 계기 마련
- 탄약재배치를 통해 폭발물 안전거리를 보장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끌어냄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서울신문

권익위, 40년 숙원 군사보호구역 풀었다

천안 군부대 탄약창 부지
민원 중재로 주인 품으로

40년 가까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토지가 정부의 민원 중재를 거쳐 지역 주민들의 손에 돌아가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 조정회의를 통해 1976년부터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였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일대 약 49만㎡의 토지를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중재 방안을 이끌어 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이정보 권익위원장 주재로 천안시청에서 열린 조정회의에는 지역 주민과 성무용 천안시장, 육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1963년 정부가 군부대 탄약창 부지로 결정한 뒤 이곳은 폭발물 안전거리 확보 등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당시 탄약고는 부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안전거리 역시 넓게 형성됐다. 군사보호구역 면적은 여의도공원의

2배에 해당한다. 그 뒤 육군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탄약 창고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산재해 있던 탄약고를 부대 중심으로 모았다. 탄약고가 한곳에 모여 있는 만큼 군사보호구역 역시 완화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온 지역 주민들이 국방부 등에 군사보호구역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국방부 등에서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주민들은 결국 지난 3월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신청했다.

중재에 나선 권익위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육군에게 탄약고 재배치를 마친 49만㎡의 토지를 오는 12월까지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새로 지정된 탄약고 주변의 폭발물 안전거리를 재산정해 추가로 군사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완화하는 작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천안시에는 민군 협의회를 만들어 군사시설과 도시계획 간 연계가 이뤄지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아시아경제 ▷ 석간

천안 서북구 일대 49만㎡ 군사보호구역 40년만에 해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천안시 서북구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40년 만에 완화된다.

지난 40년간 육군 탄약고 등으로 인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천안시 서북구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49만㎡(여의도공원 면적 2배)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제가 추진된다.



이 지역은 1963년 8월에 정부가 군부대와 3탄약창 부지로 징발하여 폭발물 안전거리 확보 등을 위해 1976년에 군사시설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해 왔다. 이후 주민들은 지역발전과 재산권행사 등을 들어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와 지역발전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최종적인 해결 대안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르면 탄약고 철거와 탄약 재배치를 마친 약 49만㎡는 오는 12월까지 군사시설보호 구역에서 해제를 추진하고, 3탄약창 주변의 폭발물 안전거리를 재산정하여 추가 완화도 추진하며, 천안시에서는 군사시설과 도시계획간의 연계를 통해 민과 군이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민·군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도록 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이정보 권익위 위원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40여 년간 이어온 주민들의 고충이 사유재산 보호와 군작전 환경 보장 모두를 충족하는 방안으로 해결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대전 **MBC**

[리포트]천안 3탄약창 군사보호구역 일부 해제

◀ A N C ▶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천안 제3탄약창 주변 일부가 38년 만에 해제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육군과 주민,천안시가 합의해 해제하기로 한 첫 사례로 타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문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최혁재 기자입니다.

◀ E N D ▶

천안시 성환읍과 직산읍,임장면에 걸쳐 있는 서울 여의도 공원의 2배에 달하는 천 2백여만 제곱미터의 제 3탄약창,

국민권익위원회와 육군 관계자들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현지 실사를 벌였습니다.

38년 전 3탄약창 주변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유지 361만 제곱미터도 포함됐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온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해왔습니다.

◀ I N T ▶홍봉표/천안시 직산읍
"담보 설정을 할려고 해도 해주지도 않고 또 전답을 빛이 있어서 팔려고 해도 들여다 보는 사람도 없고.."

실사를 마친 국민권익위원회가 육군과 주민,천안시간 조정 회의를 갖고 3탄약창 주변 사유지 가운데 49만여 제곱미터를 오는 12월까지 우선 해제하고,

민·군협의회를 구성해 탄약창 서쪽지역 29만여 제곱미터도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I N T ▶이정기/육군 32사단장
"작전을 하는데 최소한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38년 동안 제한돼있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제되는 첫 사례로 주민들의 재산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I N T ▶오형조/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향후 탄약고 현대화 공사가 완료되는 부대들에 대해서 동일 사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해제 요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최혁재 임니다.///

국유지에 위치한 농로포장 요구

민원번호 : 2BA-1403-278044(국방보훈민원과)

▶ 민원 개요

경기 이천시 ○○면 ○○리에는 80여 가구 33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리에서 □□리로 연결되는 농로 약 2km중 약 1km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 비가 내리면 통행이 불편하니, 농로를 포장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농로를 포장할 수 있도록 조정·중재

*집단민원(77명), 생활불편민원, 장기숙원 해결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지○○ 외 76명
- 피신청인 : 육군항공작전사령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장
- 관련기관 : 경기도 이천시장

2) 민원주요내용

- 국유지 상에 조성되어 있는 비포장 농로의 포장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국유지에 위치한 농로의 영구시설물 설치(포장) 가능 여부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농로가 비포장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여 포장 요구
- (육군항공작전사령부) 농로가 포장될 경우, 군사작전에 유리
-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국유재산법」에 근거할 때,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설치 불가
- (관련기관) 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영농환경개선을 위해 포장 필요

2) 민원특성 : 주민생활불편 민원, 집단민원, 장기 숙원 해결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해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 (4회 : '14. 5. 15, 5. 27, 7. 5, 8. 27)
- 군사작전여건을 보장하고, 주민불편을 해소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관련 예산 확보

5. 조정 결과

- (육군항공작전사령관) 이천시장이 이 민원 농로를 포장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에 동의하고, 포장물을 기부채납 받기위해 관련절차에 따라 조치
- (이천시장) 육군항공작전사령관이 이 민원 농로를 포장할 것을 통보하면, 예산허용 범위 내 연차적으로 포장한 후, 육군항공작전사령관에게 기부채납
-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장) 육군항공작전사령관이 이 민원 농로의 포장물을 기부채납 받으면 포장물을 국유재산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마을주민들의 생활불편 • 군사작전 제한	• 마을주민 생활여건 개선 • 관할부대의 작전여건 보장

2) 시사점

- 약 5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군(軍) 부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민원이 해결
- 농로가 포장됨으로써 군(軍)의 군사작전 여건을 보장하고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대안을 끌어냄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이천 도리리 주민 '변듯한 농로' 희망이 현실로...

국방부·市 '도로포장' 숙원 해결

국방부가 부대 청설 후 30여년 동안 대체도로를 마련해 주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불편해보도 4월22일자 10면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국방부와 이천시 등이 정비사업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군부대 외곽 농로를 주민 통행 및 영농 등에 불편이 없도록 빈틈하게 정비하는데 국방부, 이천시 등과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농로 2km 중 절반가량인 1km는 2009년도에 이천시가 군부대 동의를 얻어 포장을 했지만, 나머지 구간은 동의를 얻지 못해 비포장 상태로 남아 비가 오면 물렁이가 생기는 등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권익위는 이에 현장조사와 실무협의를 거쳐 이날 이천시 대월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과 군부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이천시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지역주민과 군 모두가 수용하는 조정안을 이끌어 냈다.

구체적 조정 내용은 우선 이천시가 남은 비포장 농로를 포장, 군에 기부채납을 요청하고 군은 이에 동의하는 것

이 주요 골자다.

박창수 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30년 된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면서 군의 작전 환경도 개선하는 것"이라며 "주민과 기관이 소통해 '윈-윈'한 의미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양주 옥정신도시와 고읍택지개발지구를 연결하는 본선도로(4차선)와 접속하는 옥정고읍동 마을 진출입도로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조

정의에서도 교차로와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이끌어냈다.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내용에 따라 LH는 양주 옥정신도시~고읍택지개발지구 연결 본선 도로에 교차로와 신호 등,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국유지를 활용해 옥정동 전입도로의 경사를 10%에서 6.99%로 완화하고 곡선부를 확장해 급커브를 개선키로 했다.

이천·양주=김동수·이종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 박창수 상임위원, 이천시 농로 합의안 성사



[경기방송=임인용기자] 국민권익위원회 박창수 상임위원(왼쪽 네 번째)이 오늘 오후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사무소에서 대월면 도리리 소재 군부대를 따라 울퉁불퉁하게 조성된 비포장 농로를 30년만에 포장하기로 하는 합의안을 성사시킨 후 군 관계자들과 민원인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습니다. 임인용 umiy@naver.com 수도권에 살아있는 뉴스 경기방송 뉴스 FM99.9MHz

수도권일보

2014년 09월 05일 (금)
경기 09면

이천시 군 소유 비포장 농로 정비

권익위, 주민 민원 수용 관계기관 중재·30여년 만에 해결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소재 육군부대의 외곽을 따라 울퉁불퉁하게 개설된 농로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중재로 30여년 만에 주민 원안대로 정비된다.

이 농로 2km중 절반가량인 1km정도가 지난 2009년에 이천시와 군부대 동의를 얻어 포장했지만, 나머지는 동의를 얻지 못해 비포장상태로 남겨두면서 비가 오면 웅덩이가 생기는 등 주민들이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어 오고 있었다.

이에따라 권익위는 지난 3월 주민 77명으로부터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현장조사와 실무협의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해 왔다.

그 결과로 4일 대월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과 육군부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창수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지역주민과 군 모두가 수용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권익위의 조정에 따라 시는

남은 비포장 농로를 포장하여 군에 기부채납을 요청하고, 군은 시의 기부채납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되게 되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 회의를 주재한 권익위 박창수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30년 된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면서 군의 작전 환경도 개선하는 것”으로, “주민과 기관이 소통하여 ‘원·원’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천/임태종기자 jong@sudokwon.com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

산업·농림·수산·민원

도시·수자·원민원

교통·국·로·민원

고충민원 특별조사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산업단지 조성 군 동의 요구

민원번호 : 2CA-1412-030488(국방보훈민원과)

▶ 민원 개요

유기발광다이오드 생산에 필요한 기술 및 장비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공장 증설이 필요한데 공장 증설 예정부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민원에 대해, 작전수행의 제한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장설계변경 및 재심의를 통해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중재하여 기업민원 해결

*국방민원, 규제완화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주식회사 □□ 대표이사 정○○ 외 직원 121명
- 피신청인 : 육군 제9보병사단장(피신청인1), 파주시장(피신청인2)

2) 민원주요내용

- 공장 증설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장 증설 예정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어 관할 부대장 협의결과 부동의 되었는데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도움 요청

2. 주요 쟁점사항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공장증설 등 건축협의
- 작전수행의 제한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 사전상담 및 현지도의 등을 실시한 후 공장설계변경 및 재심의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육군 제9보병사단장) 민원지역은 3차례에 걸쳐 면밀히 작전성 검토 후 심의결과 부동의된 지역으로 원활한 작전수행을 위해 건축 제한이 필요

- (파주시장) ○○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유치를 통한 공장의 계획적 입지 유도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민원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

2) 민원특성 : 국방민원, 규제완화 민원(기업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조정·중재안 도출
- 자료검토,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합동회의 개최
- 작전수행의 제한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재심의를 통해 기업활동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갈등해결수단

- 이해설득을 통한 중재안 도출

5. 조정 결과

- (신청인) 민원지역 작전수행의 제한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육군 제9보병사단장과 사전상담 및 현지도의 등을 실시한 후 재협의 요청
- (육군 제9보병사단장) 신청인이 재협의를 요청할 경우 작전수행의 제한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의 유무 등에 대해 확인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재협의를 진행하고, 재심의를 할 때 신청인이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작전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하여 심의결과에 반영
- (파주시장) 민원지역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기반시설 및 행정지원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파주 축현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관할군 부대장은 3차에 걸쳐 부동의	작전수행의 제한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산업단지 설계변경 및 재심의를 통한 기업활동 보장 방안 마련

2) 시사점

- 위원회 조정을 통해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추산으로 1,200명에 이르는 고용창출과 1조 원 이상의 지역경제발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활성화에 기여



권익위, 군사보호구역 내 파주 축현2산단 사업 중재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돼 난항을 겪던 경기 파주시 축현2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가 이뤄졌습니다.

권익위는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유기발광다이오드 생산업체의 고충 민원에 따라 오늘 파주시청에서 업체와 9사단, 파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 회의를 열어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정안을 보면 업체와 9사단은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도록 산업단지 설계 변경과 작전 수행 제한 사항을 각각 다시 협의하고, 파주시는 기반 시설과 행정 사항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지난해부터 약 250억 원을 들여 파주시 탄현면 7만㎡에 유기발광다이오드 생산 단지를 짓는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조성 예정지에 진지 등 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군부대 동의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남승우기자 (futurist@kbs.co.kr)



'파주축현2산단' 사업에 탄력...권익위 중재해 軍규제 해결

'파주축현2산단' 사업에 탄력...권익위 중재해 軍규제 해결

(파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돼 난항을 겪던 경기도 파주시 축현2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탄력을 받게 됐다.

축현2 산업단지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생산 장비를 제조하는 쥘야스가 지난해부터 252억원을 들여 탄현면 축현리 7만㎡에 공장을 지으려 추진한 사업이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 진지와 교통호 등 군부대 시설물이 있다는 이유로 3차례나 군부대 동의를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야스의 고충민원 접수에 따라 17일 오후 3시 파주시청에서 이성보 위원장과 9사단·해당 업체·파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의 골자는 '업체가 9사단과 협의해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도록 산업단지 설계를 변경하고, 9사단은 작전수행 제한사항 보완 방안을 협의 재심의 할 것, 파주시는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 기반시설 및 행정지원을 할 것' 등이다.

이에 따라 야스가 축현2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축현2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1천200명의 고용 창출과 1조원 이상 지역경제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yshik@yna.co.kr

인천일보

경인일보
Since 1960 창간 47주년

경향신문
www.kynews.com

kgmaeil.net
경인지역 최고 인터넷 신문

경기매일

경기도민일보
www.kgdn.co.kr

중부일보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파주시청서 열린 파주 산단 조성 관련 군 동의 요구 현장 조정회의에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파주 '축현2 산단' 조성사업 탄력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돼 난항을 겪던 파주시 축현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탄력을 받게 됐다.

축현2 산업단지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생산 장비를 제조하는 (주)야스가 지난해부터 252억원을 들여 탄현면 축현리 7만㎡에 공장을 지으려 추진한 사업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야스의 고충민원 접수에 따라 17일 오후 3시 파주시청에서 이성보 위원장과 9사단·해당 업체·파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

를 열어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의 골자는 '업체가 9사단과 협의해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도록 산업단지 설계를 변경하고, 9사단은 작전수행 제한사항 보완 방안을 협의 재심의 할 것, 파주시는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기반시설 및 행정 지원을 할 것' 등이다. 이에 따라 야스가 축현2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박상돈기자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 stylized graphic of three overlapping leaf-like shapes in shades of gray, positioned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2014년
고충민원
조정사례집

경찰민원

- 01 태백 어린이 통학로交通安全대책 요구
- 02 부산 광안대교 소음피해 대책 요구
- 03 경찰대학 이전부지 인접 미수용 토지 대책 요구
- 04 경남 고성군 교통사고 빈발구간 안전대책 마련

태백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대책 요구

민원번호 : 2AA-1402-059831(경찰민원과)

▶ 민원 개요

강원 태백시 통리 소재 38번국도와 철도가 만나는 지점의 철도건널목은 어린이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굽어진 도로선형과 철도건널목 관리실로 인해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민원에 대해 횡단보도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도로시설을 보완 및 시야장애물 제거를 통해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조정·중재하여 주민들의 숙원 해결

*집단민원(61명), 안전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태백시 통리 주민대표 김○○ 외 60명
- 피신청인 : 태백경찰서장, 태백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2) 민원주요내용

- 어린이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태백시 통리 소재 철도건널목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으니 교통안전 대책 마련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철도건널목 근방 횡단보도 설치여부
- 철도건널목 관리실 철거 여부
- 보행 동선 단순화를 위한 철도시설물 철거 및 도로포장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태백경찰서장)
 - 어린이들이 철도 건널목을 건넌 후, 국도38호선을 다시 횡단해야 하는 상황으로 철도 건널목 근방에 횡단보도 설치 검토 공감

- 철도건널목 관리실은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에 장애가 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요소가 되므로 철거에 공감
- **(태백시장)** 어린이들이 등하교 시 빈번하게 국도38호선을 횡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태백경찰서장이 횡단보도 설치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건널목 관리실 철거 시 철도부지 내 도로 포장을 긍정적 검토
- **(한국철도시설공단)**
 - 철도건널목 관리실은 비록 안전요원이 상주하지 않지만, 하루 2회(왕복 4회) 운행하는 석탄운송 철도차량으로 인해 준치가 필요
 - 철도건널목 보행자 횡단방향 변경에 따른 검지장치 등 철도시설물 철거는 긍정적으로 검토

2) 민원특성

- 안전민원, 집단민원(신청인 외 60명)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14. 03. 12), 관계기관 협의('14. 03. 15. ~ 04.25.)
-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해 철도건널목 근방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
- 운전자 시야장애물인 철도건널목 관리실을 철거
- 어린이들의 보행동선을 단순화하기 위한 철도 검지장치 등 철도시설물 철거와 철도부지내에 도로포장

2) 갈등해결수단

- 이해·설득 및 제3의 중재안 제시(보행동선 단순화)

5. 조정 결과

- **(태백경찰서장, 태백시장)** 어린이 통학로 중 국도38호선의 안전한 횡단을 위해 횡단보도 설치
-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도38호선을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장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안전요원이 상주하지 않는 철도건널목 관리실 철거
- **(태백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어린이통학로의 보행동선 단순화와 이를 위한 철도건널목의 보행횡단 위치 변경, 철도부지 내 검지장치 등 철도시설물 철거 및 도로포장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철도건널목 앞 도로 횡단보도 미설치로 무단횡단 빈발 • 철도건널목 앞에 설치된 철도관리실이 국도 이용의 운전자의 시야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교통사고 위험 상존 • 기존의 보행동선은 도로를 여러번 횡단하는 구조로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취약	• 철도 건널목 앞 도로에 횡단보도 및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로 무단횡단 방지 및 교통안전 확보 • 철도관리실 철거로 운전자들의 시야 장애 요소 제거 • 보행동선 단순화로 도로횡단을 최소화 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 강화

2) 시사점

-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어린이 통학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들과 국도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교통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계기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NEWSis. ()

2014년 04월 30일 (수)

태백시 위험한 어린이 철도건널목, 권익위 중재로 해결

【서울=뉴스시스】강수운 기자 = 통학로에 있는 철도건널목 때문에 위험에 노출됐던 어린이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권익위 청사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태백경찰서, 태백시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최학균 상임위원 주재로 강원도 태백시 통골2길 통리초등학교 통학로에 있는 철도건널목 때문에 발생한 민원을 중재,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태백 통리초교의 통학로 철도건널목은 옛 영동선 철도와 38번 국도가 직각으로 교차하고, 교차지점에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가로 막는 철도건널목 관리건물이 있어 건널목을 건너 등하교하는 어린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주민들은 2012년부터 철도건널목 관리건물 철거 등 안전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관계기관들이 건물 철거 등에 이견을 보여 진전이 없자 올해 2월 60여명의 학부모들이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동안 권익위는 관계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태백경찰서, 태백시와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이날 오후 '태백시 통리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다음 달까지 철도건널목 관리건물과 철도부지내 철도시설물을 없애고, 태백경찰서는 6월까지 횡단보도 설치 및 철도건널목의 보행자 횡단위치를 바꾸기로 했다. 태백시도 6월까지 철도부지내 도로를 포장하기로 했다.

shoon@newsis.com

중부매일

2014년 04월 30일 (수)

권익위, 태백시 '위험한 어린이 철도건널목' 민원 중재

횡단보도 설치, 보행동선 단순화, 철도시설물 철거 등 합의

메디컬투데이 jb@jbnews.com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태백시의 '위험한 어린이 철도건널목' 민원에 대한 안전대책을 내놨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30일 서울 서대문구 미군동 권익위 청사에서 최학균 상임위원 주재로 강원도 태백시 통골2길 통리초등학교 통학로에 있는 위험한 철도건널목 때문에 발생한 민원을 중재해 한국철도시설공단, 태백경찰서, 태백시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원이 발생했던 태백 통리초교의 통학로 철도건널목은 옛 영동선 철도와 38번 국도가 직각으로 교차하고, 교차지점에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가로 막는 철도건널목 관리건물이 있어 건널목을 건너 등하교하는 어린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주민들은 2012년부터 철도건널목 관리건물 철거 등 안전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으나, 관계기관들이 건물 철거 등에 이견을 보여 진전이 없자 올해 2월 60여명의 학부모들이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동안 권익위는 관계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태백경찰서, 태백시와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30일 오후 '태백시 통리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권익위의 중재에 따라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다음 달까지 철도건널목 관리건물과 철도부지내 철도시설물을 없애고, 태백경찰서는 6월까지 횡단보도 설치 및 철도건널목의 보행자 횡단위치를 바꾸기로 했으며, 태백시 역시 6월까지 철도부지내 도로를 포장하기로 했다.

집단민원을 조정한 권익위 최학균 상임위원은 "권익위 중재로 통학로에 있는 장애물(철도건널목 관리건물)이 없어지고 보행동선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어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jinwin93@mdtoday.co.kr)

부산 광안대교 소음피해 대책 요구

민원번호 : 2AA-1311-170496(경찰민원과)

▶ 민원 개요

부산 광안대교를 통과하는 과속·폭주차량에 의해 대교 인근주민들이 야간 및 새벽 시간대 수면장애 등 심각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바, 피신청인 등은 재판부 강제결정(2007) 등에도 불구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하니,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달라.

*집단민원(31명), 환경민원, 장기숙원 해결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정○○ 외 30명
- 피신청인 : 부산광역시장(피신청인1), 부산지방경찰청장(피신청인2)
- 관련기관 :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2) 민원주요내용

- 부산 광안대교 통과 과속·폭주차량에 의한 소음과다 발생
- 지역주민들이 과속·폭주차량 단속을 통한 소음피해 대책 요구
- ※ 재판부 강제조정 결정(2007) 등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 무대책에 불만제기

【 광안대교 소음피해 관련 주요 경과 (고충민원 신청 전) 】

- ▶ 주민 639명 환경분쟁조정 신청(2005.7.11) : 기각 결정(2005.12.1)
- ▶ 주민 618명 민사소송 제기(2006.2.23) : 강제조정 결정(2007.12.10)
※ 조정결정 내용 : 개량된 과속 단속장비 상용화시 광안대로에 설치할 것(부산지방법원)
- ▶ 현재 과속경보시스템 설치(하층 2012.12.17, 상층 2013.10.31) 운영 중
⇒ 실제 속도단속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근원적 문제해결에 불만

2. 주요 쟁점사항

- 광안대교(현수교) 무인과속단속장비 설치의 선례가 없어 신기술을 적용하여야 하나, 현행 규정상 신기술 개발 등에 대한 예산반영 자체가 어려움
- 광안대교 운영 및 관리는 부산광역시장 소관이지만, 무인과속단속장비 설치 및 운영은

- 부산지방경찰청장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기관 간 적절한 역할 분담 필요
- 과속단속장비의 기술인증 등은 도로교통공단의 소관이므로 기술·행정적 지원필요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부산광역시) 지역주민들의 소음피해 대책요구 민원의 해소를 위하여 관련 사업 추진시기를 검토, 무인과속단속장비의 설치는 경찰청 사무이므로 사업타당성 및 기술인증 용역 부분에 대하여는 경찰청의 지원 필요
- (부산지방경찰청장)
 - 민원발생의 직접 원인은 소음피해이므로 그 해소대책은 부산시가 강구(방음벽 등)할 사안이고, 무인과속단속장비는 지방청별로 총량이 정해져 대체수요만 인정 되므로 광안대교에 신규설치는 어려움
 - 현수교에 무인과속단속장비 설치의 선례가 없어 R&D사업(용역 수반)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바, 기존기술을 우선 채용해야 하는 현행 관계규정상 예산반영 어려움
 - 부산광역시가 주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무인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이를 인수하여 차질없이 운영·관리 및 과속단속을 실시
-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 무인과속단속장비 설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 기종 및 최적설치 위치 선정 등의 기술지원과 관련 인증에 적극 협조
 - 필요시, 무인과속단속장비 기술개발 등에도 공동참여하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제공

2) 민원특성 : 환경민원, 집단민원, 경찰민원, 장기숙원 해결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소음피해 주민 민원 접수(2013. 11. 18.)
- 현지조사 및 관계기관 회의 2회 개최 (2014. 1~2.)
- ‘상시과속단속시스템 구축 용역’ 추진검토 협조요청(2014. 3. 3.)
 - ▶ 신기술은 상용기술이 아니므로 예산 지원이 어려움(2014. 4. 11. 부산광역시)
 - ▶ 현재 상용되는 루프검지기 기술은 교량에 적용할 수 없음(2014. 5. 19. 경찰청)
- 전문가 검토 및 인천대교 사례 등을 근거로 조정서(안) 작성 및 협의 요청(2014. 6. 27.)
 - ▶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서 보완
 - ▶ 피신청인 등 관련기관 위원회 조정(안)에 수용의사 확인(2014. 7. 16.)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기관들의 입장을 반영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중재안 협의·제시
- (이해·설득) 장기 미해결 과제에 대한 기관의 문제해결 필요성 제고
- (예산 확보) 신기술 상용화 수준에 도달할 경우 부산광역시 예산 반영 동의

5. 조정 결과

- (부산광역시장) 2016년까지 광안대교에 무인과속단속장비 설치, 단 신기술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2018년 재검토, 그때도 통과하지 못하면 2년 단위로 재검토 실시
- (부산지방경찰청장,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 부산광역시장의 무인단속장비를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수반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술적·행정적 지원 제공·협력
 - 부산광역시장의 설치한 무인과속단속장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산지방경찰청장에게 인계하고, 계약상 무상수리기간 이후의 관리비용은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부담하여 운영·관리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2007년 법원의 강제조정 이후 대책이행 지연 - 광안대교 주변지역의 소음피해에 대한 문제 해결 필요성에는 공감 -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	• 매2년 단위로 신기술 상용화시 우선적용 합의 - 광안대교 적용기술 개발에 부산시와 도로교통공단이 협력하여 추진 - 위원회 조정 결과 반영 피신청기관 등 적극적 업무 추진

2) 시사점

- 2007년 이후 실제 이행이 지연되어온 지역의 현안 문제를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2016년 까지 신기술개발과 적용 검토하고, 그때까지 기술개발이 상용화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
- ※ 2015. 5.말 현재 도로교통공단에서 부산시 협력하에 광안대교에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현재 기술수준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경찰청, 부산시, 권익위) 실무협의 등 추진예정

東亞日報

2014년 08월 08일 (금)
영남 15 B면

광안대교 인근 주민 600명 10년 묵은 민원 풀리나

“무인과속단속기로 폭주 근절”

주민 600명이 관련된 소음 민원이 10년 만에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오후 부산시청 12층 회의실에서 이성보 위원장 주재로 ‘광안대교 소음피해’ 민원에 대한 현장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회의에는 민원을 제기한 수영구 L아파트 주민대표 안병찬(66), 정인수 씨(55)를 비롯해 김종해 부산시 행정부시장, 전창학 부산지방경찰청 1부장, 신용선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조정안은 부산시가 2016년까지 광안대교에 적용 가능한 무인 과속단속 장비(현재 개발하고 있는 레이저 속도 측정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운영관리는 부산지방경찰청이 맡는다. 이에 적용될 신기술이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면 2년 단위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도로교통공단은 기술 인증 및 장비설치 등과 관련한 세부 기술 지원을 담당한다.

2003년 1월 개통한 광안대교는 부산 남구와 해운대구를 연결하는 길이 7420m, 너비 18~25m의 해상 복층교량. 매년 10월 열리는 불꽃축제의 주 무대로 부산 대표 관광명소다. 하루 평균 이용차량은 지난해 기준 9만4000대에 이른다.

그러나 광안대교에서 215m 떨어진 수영구 L아파트 주민 600여 명은 “야간 과속 차량과 불법 경주차량의 굉음으로 수면 부족과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2004년부터 민원을 제기했다.

광안대교의 소음도는 주간 65.9데시벨, 야간 60.5데시벨로 법정기준치(준주거지 주간 65, 야간 55)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 불법경주 등으로 소음교통
2004년부터 관련대책 요구

현수교에 단속장비 첫 적용 시도

이들은 2005년 5월 교량 시공사 등을 상대로 중앙환경보존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2007년 3월 부산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주민들은 시공사와 아파트 준공을 승인한 수영구, 광안대교 관리기관인 부산시설공단을 상대로 피해 배상과 함께 소음 저감대책을 요구했다. 또 광안대교의 일부 교량 부분에 방음 시설을 설치하고 시속 80km인 광안대

교의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한편 과속 방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촉구했다.

법원은 “경찰이 구간단속 무인카메라, 개량된 과속단속 장비를 시범 운용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우선적으로 광안대교에 설치하라”는 강제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부산시설공단은 해상 강풍으로 교량에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안전상의 문제 등을 감안해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았다. 또 고정식 무인과속단속카메라도 교량의 진동, 교량 골격 철판과 이음매, 아스팔트 두께 등 구조적 문제 때문에 설치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동식 카메라로 과속 단속만 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법원의 강제결정에도 시와 경찰이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그동안 수차례 기관협의를 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현수교에 적용 가능한 무인단속 기술과 장비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해 설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며 “유사한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경향신문

2014년 08월 06일 (수)
종합

광안대교 소음 민원 10년만에 권익위 조정으로 해결

광안대교 소음 민원이 10년만에 해결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법원의 결정에도 결론이 나지 않은 민원이 국민권익위로 조정으로 매듭지어지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부산시청에서 이성보 위원장 주재로 광안대교 소음피해 민원에 관한 조정회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부산시에는 도로교통공단의 지원을 받아 2016년까지 새 장비를 설치하고 부산경찰청에는 광안대교 과속 단속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소음피해를 호소해 온 주민들도 권익위의 조정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1월 개통한 광안대교는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구를 연결하는 길이 7420m, 너비 18~25m의 복층 해상교량이다. 매년 10월에 불꽃축제가 열리는 무대로 광안리 야경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다.

그러나 부산 수영구 2아파트 주민들은 과속·폭주 차량으로 인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며 10년 가까이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2005년 5월 시공사 등을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으나 기각결정이 나자 2007년 3월 부산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경찰청이 무인 카메라설치를 시범 운용한 뒤 전국으로 확대 설치할 경우 우선적으로 광안대교에 설치하라”는 강제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부산시와 광안대교사업단은 방음벽 설치를 검토했으나 방음벽 설치시 바다에서 부는 바람으로 교량에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았다. 경찰은 고정식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검토했으나 교량의 진동, 교량 골격 철판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으로 인해 속도 인식 오류가 발생하고 감지선 설치에 필요한 아스팔트의 두께가 15cm이나 광안대교는 4cm에 불과해 현행 기술과 장비로는 설치가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부산시와 경찰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에 “법원의 강제결정에도 불구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해결방안 마련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권익위는 현재 개발 중인 비접촉식(레이저) 속도 측정기 설치를 제시했다. 비접촉식 속도 측정은 기존 도로 매립식 감지기를 이용하지 않고 레이저센서를 이용해 짧은 시간에 1, 2차 촬영 후 차량 속도를 산출하는 기술이다. 권익위의 조정에 따라 부산시는 예산을 지원하고 경찰은 장비의 운영관리를, 도로교통공단은 관련 기술 지원을 맡을 예정이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경찰대학 이전부지 인접 미수용 토지 대책 요구

민원번호 : 2AA-1403-031455 (경찰민원과)

▶ 민원 개요

‘경찰대학 이전신축 사업계획’에 따른 경찰대학 이전부지 매수보상 결과, 주변의 미수용 토지인 총 37필지 총면적 277,000㎡에 대해 이를 수용하도록 재검토하거나, 부득이 수용할 수 없다면 민원토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도로(접근성)를 확보하여 달라.

*집단민원(18명), 생활불편민원

【‘경찰대 지방이전 신축사업’ 개요】

- ▶ 경찰대 이전부지 위치(대지면적) : 충남 아산시 신창면 황산리 일원(785,010㎡)
- ▶ 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88,726㎡(총 21동: 교육연구 5동, 생활 8동, 체육훈련 4동, 기타 4동)
 - ※ 총공사비 = 3,151억원(토지수용비 960억원 + 공사비 등 2,191억원)
 - ※ 사업기간 : 2013. 8. 7. ~ 2016. 4. 2.(약 2년 8개월 소요, 현재 20% 공정)
- ▶ 활동인구 : 1일 최대 1,368명(대학생 480명 포함)
 - ※ ‘어린이 교통교육장’ 등 일반인에게 공개, 1일 방문객 100명 내외 수준 예상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최○○ 외 17명(충남 천안시 ○○구 거주)
- 피신청인 : 경찰대학장
- 관련기관 : 충남 아산시장

2) 민원주요내용

- (1안) ‘경찰대학 지방이전 신축사업’에 수용되지 않은 인접 토지를 수용
- (2안) 민원토지에 대한 접근성(접근도로)을 실질적으로 보장

2. 주요 쟁점사항

- 미수용토지를 수용할 경우 120억원의 추가예산 소요
- 둘레길 조성시 고분군 분포에 따라 사업장기화 및 96억원의 추가예산 소요
- 경내도로를 통한 민원토지로 접근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경찰대학장 입장
 - 미수용 토지의 수용(1안)에 대한 검토결과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으므로 절차상 어려움이 있음
 - 다만, 장래의 필요(대테러훈련장 용도 등)에 대비하여 민원토지를 학교부지로 확보하는 방안(120억원 추가소요 필요) 검토 가능
 - 접근도로 확보(2안)에 대한 검토결과
 - 경내도로를 통해 민원토지로 접근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
 - 둘레길 조성시 고분군 분포에 따라 사업장기화와 예산(96억원) 추가소요
- 아산시장 입장
 - 예산부족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둘레길 포장 등)은 수용하기 어려움
 - 그 밖의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

2) 민원특성 : 생활불편 민원, 집단민원, 경찰민원, 토지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2014. 3. 4. 토지수용 또는 접근성(도로) 확보 요구 민원 접수
- 2014. 3. 5. 피신청기관(경찰청) 자료제출 요구
 - ▶ 경찰청(재정담당관) 자료 제출(3.26.)
- 2014. 5. 1. 신청인 및 관계기관(경찰대, 아산시 등) 현장회의 개최
- 2014. 5. 15. 민원해결을 위한 3개의 대안을 작성하여 검토요청
 - ▶ 토지수용 재검토(1안), 둘레길 조성(2안), 내부도로 이용(3안)
 - ▶ 경찰대학(5.27) · 아산시(5.22)의 검토의견서 접수
- 2014. 6. 30. 피신청기관 등 의견을 반영한 조정서(안) 작성 및 추가 검토요청
- 2014. 9. 2. 조정서(안) 검토회의 개최
 - ▶ 경찰대(대전준비사업단장), 아산시(시도지원과장), 경찰민원과장 등 참석
 - ▶ 경찰대학 및 아산시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서 보완, 조정서(안) 확정

2) 갈등해결수단

- 지역주민과 이전기관이 상호 공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추가 예산소요 없는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이해 폭 넓힘

5. 조정 결과

- (경찰대학장) 민원토지에 대한 접근성 보장 및 지역명소화에 최대한 노력
 - 경내도로를 이용하여 민원토지로 접근하는 방식 또는 둘레길을 조성하여 민원 토지로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문제 해결
 - 둘레길을 조성하는 경우, 도로에 포함되는 신청인 소유 토지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하고, 공사중에는 경내도로 사용
 - 미국 육군사관학교(West Point)의 관광자원 공개개념을 국내 최초 도입
- (아산시장) 피신청인의 상기사항 관련 행정적 지원에 협조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지역주민과 피신청인 간 신뢰감 미약 - 주민들은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 미약 - 피신청인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정찰할	•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합의조정 내용 확보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문제해결에 소극적 - 신청인들은 본인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향상 등

2) 시사점

-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이전되는 공공기관(경찰대학)이 상호 공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경찰대학 경내를 지역의 명물로 개방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 접근도로 등이 확보되지 않은 경찰대학 부지 인접 토지에 대해 접근도로를 확보해 줌에 따라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 집단민원 신청시 누락되었던 주민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문제제기를 하면, 조정결과에 준하여 지역주민에게 유리하게 업무처리 준거 확보

국민권익위, 경찰대 아산 이전부지 주민 민원 타결



경찰대 이전부지 현장 0

오는 2016년 경찰대학교가 이전할 충남 아산시 부지 주변 현장 모습

아산/아시아투데이 이신학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30일 경찰대학이 아산으로 이전해 오면서 대학부지에 인접한 토지의 통행이 차단돼 불편이 예상된다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조정해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대학은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서 2016년 4월까지 충남 아산시 신창면 황산리 일원(78만 5010㎡)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사(총 공사비 3151억원)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대 신축부지 부근에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은 “대학이 들어서면 주변 토지는 접근이 차단되게 돼 사용에 많은 제약이 생길 것”이라며 해당 토지를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주변 토지(대부분 임야)는 종전대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며 기각결정을 했고, 소유자들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도 이의 해결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미수용 토지도 최소한의 접근성은 보장돼야 한다고 보고, 경찰대 및 아산시와 수차례 기관협의를 거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30일 오후 4시30분 경찰대학 이전부지 현장에서 민원인들과 박재진 경찰대 교수부장, 강익재 아산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학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민권익위가 중재한 합의내용에 따르면 경찰대는 부지 주변 미수용 토지에 대해 학교 내 도로를 사용하거나 둘레길을 조성하는 방식을 도입해 실질적인 접근성을 보장하고 둘레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도로편입 토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대는 이전 후에 학교시설과 경관을 공개해 관광자원화 및 지역명소화 하여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고 아산시는 합의 사항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경찰대는 앞으로 미국 육군사관학교(West Point)가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학교를 공개해 미국동부의 전통적인 관광명소가 된 것처럼, 주변의 현충사와 연계한 지역관광코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집단민원을 조정한 최학균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경찰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주변 토지 통행단절과 이로 인한 재산권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경찰대를 관광자원화해 지역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lsh9979@asiatoday.co.kr

경남 고성군 교통사고 빈발구간 안전대책 마련

민원번호 : 2CA-1411-118440(경찰민원과)

▶ 민원 개요

최근 5년간 1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고성군 동해면 봉암리 ‘입암마을 ~ 봉곡삼거리’ 구간은 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 도로가 없는데다 인근의 조선산업 특구로 인해 오가는 대형트럭의 증가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민원에 대해 2015년부터 2021년 중에 가급적 빨리 주민보도 구간 및 보행자 전용 횡단시설 설치, 농경지 진입과 마을 내 통행을 위한 도로를 설치하여 입암마을 주민들의 보행자 안전을 확보

*안전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최○○(경남 고성군 ○○면 주민)
- 피신청인 : 경상남도 고성군수(피신청인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피신청인 2)
- 관련기관 : 경상남도 고성경찰서장

2) 민원주요내용

- 국도77호선 경남 고성군 동해면 봉암리 ‘입암마을 ↔ 봉곡삼거리’ 구간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발하니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민원구간(입암마을 ↔ 봉곡삼거리) 도로 확장 여부

3. 피신청인 입장

- (경상남도 고성군수)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공사를 하는데 있어 주민보상관계 협조, 주민의견 수렴, 민원사항 처리 등 적극 지원
 - 아울러, 국도 77호선과 만나는 군도 12호선 개선사업도 진행 중인데, 교통안전이 제고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여건을 조성해야 함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존도로의 선행개량, 주민보도구간 설치 및 부체도로 신청을 추진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14. 11. 4.), 관계기관 협의(14. 12. 16.)

2) 갈등해결수단

- (예산 확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15년부터 2021년 기간 중 도로 공사 실시

5. 조정 결과

- 2015년 ~ 2021년 사이 동 구간내 주민보도구간 설치, 보행자 전용 횡단시설 (통로BOX) 2개 설치, 주변 농경지 진입 및 마을 내 통행을 위한 부체도로를 설치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보행자 인도 없음 • 선행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로	• 보행자 인도 마련 • 선행개선으로 인해 굵은 도로 개선 • 보행자 전용 횡단시설(통로BOX) 2개 설치, 주변 농경지 진입 및 마을 내 통행을 위한 부체 도로 설치

2) 시사점

- 민원 구간은 지난 5년간 1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쳐 마(魔)의 구간으로 불림. 이 구간을 선행 개선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는 계기 마련
- 인근 조선특구차량들의 안전한 교통통행 보장하는 결과 도출

주민이 ‘마의 도로’ 안전시설 개선 이끌어냈다



최규현씨가 고성군 동해면 입암마을 앞 도로에서 사고 현장을 가리키고 있다.

5년간 교통사고 13건·사상자 20명 발생한 고성군 동해면 입암마을 최규현씨, 권익위에 위험성 알려... 도로선형 개선·진입로 개설키로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봉곡삼거리에서 입암마을 구간은 ‘마(魔)의 도로’로 불린다. 지난 5년간 이곳에서 13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 5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기 때문이다.

고성읍에서 동해조선특구로 들어가는 길목인 2차선 도로. 길은 곧게 뻗어 있지만 여느 시골 도로처럼 인도가 없다. 수년 전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조선특구가 생기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은 하루 7800여대. 특히 조선특구 진입로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통과 차량 상당수가 대형 트럭이다.

집이 마을 길가에 위치해 몇 번의 교통사고를 목격했던 최규현(77·선암정미소)씨는 올해 현장에서 마을주민 사망사고를 목격한 후 지난 11월 11일 도로의 위험성과 이로 인한 주민의 어려움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전했다.

현장조사를 한 권익위는 실무협의 끝에 도로 확장과 선형 개량, 보도구간 설치, 보행자 전용 횡단보도 시설(통로박스 2개), 마을 진출입 및 농경지 진입을 위한 부체도로 설치 등의 현장조정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오는 19일 고성군청에서 신청인인 최씨와 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 피신청기관인 부산국토관리청 박민우 청장과 하학열 고성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기로 했다.

주민의 진정에 의해 권익위가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권익위는 지난 7월부터 교통안전시설 개선요구 집단민원 해소 3개년 사업계획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중 위험도가 높은 고성군은 현장 추진으로 진행하고 있다.

권익위 서차관 서기판은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접수된 민원을 검토하는 중 주민 최씨의 민원접수에서 상당한 위험도를 발견, 빠른 처리를 위해 현장조정회의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국토관리청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이 민원구간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기존의 도로를 확장해 선형 개량하고 보도구간 설치 등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글·사진=김진현 기자
sports@knnews.co.kr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 stylized graphic of three overlapping leaf-like shapes in shades of gray, positioned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2014년
고충민원
조정사례집

산업농림환경민원

- 01 광명역세권 ○○아파트 교통소음 저감대책 수립
- 02 목포내항 주변 해수 역류 피해 방지대책 요구

광명역세권 ○○아파트 교통소음 저감대책 수립

민원번호 : 2BA-1308-159854, 2BA-1308-300652, 2BA-1309-146179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민원 개요

신청인의 거주지 인근 덕안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인해 생활환경 피해를 입고 있으니, 교통소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방음시설 설치 등 교통소음 저감대책 사업의 시행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구용역을 거쳐 2014. 6. 30.까지 세부 실시계획안을 마련하여 2015. 9. 30.까지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광명시는 2014. 6. 30.까지 덕안로를 교통소음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필요시 추가적인 교통소음 저감 대책을 시행하도록 조정 중재하여 주민 숙원 해결

*집단민원(2,506세대), 환경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광명시 광명역세권 ○○아파트 입주민 2,506세대
- 피신청인 : 경기도 광명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2) 민원주요내용

- 덕안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 저감대책 수립 · 시행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 주체(연구용역, 실시계획 등)
- 교통소음 관리 지역 지정여부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민원 택지개발 사업시행시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저감대책 (직각배치, 수목식재, 저소음포장)을 모두 이행하였고, 입주 후 교통소음 민원이 발생되어 과속방지카메라 설치, 저소음포장 등을 추가 시행하였으나, 교통소음이 환경기준[주간 65dB(A), 야간 55dB(A)]을 초과하고 있어 현재 교통소음 원인분석 등을 비롯한 추가 대책수립 · 시행을 검토중이고, 이를 위해서는 광명시장이 우선 이 민원 도로를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차량 주행속도를 현행 60km/hr에서 50km/hr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며, 방음벽은 주민 대다수의 동의에 따라 설치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 (경기도 광명시장) 신청인 거주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택지개발지구내에 위치하고 있고, 준공 후 현재 사후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있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교통소음 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 민원 도로의 교통소음 관리지역 지정과 속도 제한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교통소음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한 후 추가 대책 수립·필요시 검토할 계획임

2) 민원특성 : 환경민원, 집단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2회('13. 8. 21. '13. 10. 25), 출석조사2회('13. 9. 27. '13. 12. 4.)
- 4차례에 걸친 조정(안)에 대한 수정을 통해 신청인,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 간 합의 도출

2) 갈등해결수단

-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안을 통해 이해와 설득

5. 조정 결과

- 교통소음이 환경기준을 충족하도록 교통소음 저감대책 수립·시행
- (한국토지주택공사)
 - 외부 전문 연구기관에 교통소음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당사지들과 협의를 거쳐 2014. 6. 30.까지 세부 실시계획안 마련하고 사업 시행
 - 2015. 9. 30.까지 시설 설치 후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환경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광명시에 통보
- (광명시) 이 민원 도로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부실시계획안을 마련하는 2014.6.30.까지 교통소음관리지역으로 지정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광명시 ○○아파트 2,506세대의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소음 피해	방음시설 설치 및 소음 저감대책 마련으로 소음 피해 최소화

2) 시사점

- 민원 접수 후 5개월 동안 민원해결을 위해 현장조사, 출석조사를 병행하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조정안을 도출한 결과 방음벽 설치 및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선정하여 2년여간 지속된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 됨

권익위, 광명역세권 아파트 소음민원 해결

권익위, 광명역세권 아파트 소음민원 해결

(광명=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광명시 소하동 광명역세권 휴먼시아 아파트 2천506가구 입주자들이 제기했던 소음 문제가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오후 3시 LH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주민 대표, 양기대 광명시장, LH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재영 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LH가 내년 9월 말까지 덕안로에 방음시설을 설치토록 중재했다.

광명시는 차량 속도제한 등 추가 교통소음 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정했다.

휴먼시아 1·2·5단지 아파트 입주자들은 인근 덕안로를 지나는 차량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bhlee@yna.co.kr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

신경정신건강민원

도시수자원민원

교통노후민원

고충민원 특별조사팀

권익위 조정으로 광명 덕안로 소음민원 해결

【광명=뉴스시스】김도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광명시, 지역주민, LH가 경기 광명역세권 교통소음 저감 대책안에 합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와 광명시, 역세권 주변 휴먼시아 1·2·5단지 주민은 23일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열린 교통소음 대책 현장조정회의에서 방음벽 등 소음저감시설 설치를 명시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라 LH는 교통소음을 환경기준(주간 65dB·야간 55dB) 이하로 낮추기 위해 내년 6월 말까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시계획안을 마련하고, 9월말까지 방음벽 등 설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아파트 주변 지역을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과속 등 소음발생 요인을 단속한다.

이 날 LH 등이 합의한 조정안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 이해당사자들은 약속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앞서 휴먼시아 1·2·5단지 입주민 2506세대는 지난해 8월 단지 인근을 지나는 왕복 6차선의 덕안로 때문에 교통소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민원접수 후 LH와 시, 지역 주민 등과 12차례에 걸쳐 조정회의를 갖고 이번에 조정안을 도출했다.

황인철 휴먼시아 1단지 환경대책위원장은 "이제라도 문제가 해결돼 다행"이라며 "시와 LH는 앞으로 계획 수립 과정 등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재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권익위와 민원인 그리고 관계기관들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오랜 시간 교통소음으로 피해를 겪어온 입주자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했다.

dorankim@newsis.com

목포내항 주변 해수 역류 피해 방지대책 요구

민원번호 : 2AA-1401-165961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민원 개요

전남 목포시 동명동·만호동 주민 4,263명이 거주하고 있는 목포내항 주변은 만조수위보다 낮은 저지대 지역으로 만조수위 때 바닷물이 역류하여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하므로 해수침수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해 목포내항 재해방지연안정비사업에 필요한 실시설계용역비 3억 8천만원을 2014년 5월까지 해양수산부에 요청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될 경우 약 72억원의 예산으로 2020년까지 추진하고, 2016년까지 목포시 내수재해 구역에 배수펌프장 시설 2개를 설치하고, 하천과 대하수도 관로 준설 사업을 약 15억원의 예산으로 올해부터 10년간 추진 하도록 조정·중재

*집단민원(4,263명), 안전민원, 피해구제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백○○(목포내항 침수피해 주민 4,263명 대표)
- 피신청인 :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피신청인1), 목포시장(피신청인2)

2) 민원주요내용

- 목포내항 주변 지역은 만조수위보다 낮은 저지대 지역으로 만조수위 때 바닷물이 역류하여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므로 해수침수 피해방지 대책을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목포항 재해안전사업 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므로 별개의 신규사업으로 재해방지 사업 추진 여부
- 재해방지연안정비사업 예산 확보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목포내항 주변 지역은 만조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이고,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므로 대책 필요

- (목포지방해양항만청)

- 목포내항 주변 지역은 항만 인접 지역이므로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 목포시가 상호 협조하여 침수방지 대책이 필요
- 목포항 재해안전항만구축 사업(이하 '목포항 안전항만구축사업')과는 별개로 신규사업인 목포내항 재해방지연안정비 사업(이하 '목포내항 재해연안정비사업') 추진 필요

2) 민원특성 : 안전 · 피해구제 민원, 집단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 · 중재안 도출
- 수차례에 걸친 조정(안)에 대한 수정을 통해 신청인, 피신청인 간 합의 도출

2) 갈등해결수단 :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안 제시, 관련 예산 확보

5. 조정 결과

- (목포지방해양항만청) 목포내항 재해연안정비사업에 필요한 실시설계 용역비 3억 8천만원을 2014. 5월까지 해양수산부에 요청하고, 용역결과 목포내항 재해연안정비사업 필요시 약 72억원의 예산으로 2020년까지 추진
- (목포시) 목포시 내수재해 구역에 배수펌프장 시설 2개를 2016년까지 설치하고, 하천과 대하수도 관로 준설 사업을 약 1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만조 수위 때 바닷물이 역류하여 상습적인 침수 피해 발생	• 재해방지사업 추진과 배수펌프장 설치 등으로 침수 피해 예방

2) 시사점

- 피신청기관들이 항만 인접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지역민원 해결을 위해 상호협조하여 함께 노력함으로써 갈등을 해결
- 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관계기관간 해결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대해 신청인이 피신청기관의 입장과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여 조정이 성사되어 해결방안이 마련되었다는 데 큰 의미

<목포내항 바닷물 역류 침수피해 사라진다>

<목포내항 바닷물 역류 침수피해 사라진다>권익위, 관계기관 간 침수피해 방지시설 설치 중재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목포내항 인근 저지대 주민들이 바닷물 역류로 인한 침수 피해에서 벗어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관계기관 간 침수피해 저감시설 설치에 합의, 해묵은 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만조 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에 사는 목포시 동명·만호동 등 내항 인근 주민들은 밀물 때 바닷물이 역류해 상가와 주택이 바닷물에 잠기는 피해가 수십년째 되풀이되자 지난달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수차례 실무 협의와 현장조사 등으로 목포시와 목포지방 해양항만청 등 관계기관 간 입장을 조율했다.

권익위는 26일 오후 목포시 동명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정종득 목포시장, 남광률 목포항만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보 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중재안에 합의를 이끌어 냈다.

중재안에 따라 목포항만청은 시가 추진하는 목포항 재해안전항만구축사업과 별개로 목포내항 재해방지역안정비 사업에 필요한 실시설계용역비 3억8천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오는 5월까지 예산 반영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하고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72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시내 재해 구역에 배수펌프장 2개를 2016년까지 설치하고 하천과 대하수도 관로 준설사업을 15억원을 들여 10년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성보 위원장은 "이번 현장조정으로 해수침수 피해방지 대책이 마련돼 저지대 주민이 상습 침수 피해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강조했다.

chogy@yna.co.kr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 stylized graphic of three overlapping leaf-like shapes in shades of gray, positioned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2014년
고충민원
조정사례집

도시수자원민원

- 01 전북 김제 한센인정착촌 고충 및 민민갈등 해결
- 02 하남미사공공주택사업지구내 천주교 구산성지 존치계획
- 03 강원 정선 동강 소재 세월교 재축
- 04 학익유수지 환경개선사업 조속 추진 요구
- 05 양재대로 보도육교 설치
- 06 강원혁신도시 단독주택용지 도시가스 공급 요
- 07 양주신도시내 마을 진출입도로 안전대책 요구
- 08 공주 쌍신 산업단지 개발 기업고충 해결
- 09 부산에코델타시티 이주대책 시행

전북 김제 한센인정착촌 고충 및 민민갈등 해결

민원번호 : 2AA-1311-302794(도시수자원민원과)

▶ 민원 개요

축산업에 종사하는 전북 김제 ○○마을 주민 등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박○○)과 ○○○○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강○○)은 국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가축분뇨를 액체상태로 만든 액비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 4기(총 3,400톤 규모)를 만들었지만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고 있는 2013년 4월 김제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가운데 악취로 인한 □□마을간의 갈등으로 공사 준공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으나 위원회의 중재로 김제시가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고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갈등 해결이 가능하게 됨

*피해구제민원, 민(民)-민(民) 갈등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박○○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강○○
- 피신청인 : 전라북도 김제시장
- 이해관계인 : 전라북도 김제시 □□마을 주민

2) 민원주요내용

- 신청인들은 축산분뇨처리 등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국비보조금 등 253,284천원이 소요되는 축산분뇨 액비¹⁾저장조 4기를 개발행위허가 절차 없이 설치한 바는 있으나, 피신청인 관내 개발행위허가 없이 설치된 기존 액비저장조와는 달리, 이해관계인 민원 등을 사유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원상회복하라고 명령하였으니 양성화시켜 정상적으로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도움 요청

2. 주요 쟁점사항

- 악취 문제를 제기한 □□마을의 민원 해결 여부
- 처리되지 않은 원 가축분뇨 저장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시 악취 가중 문제 발생

1)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김제시장) 김제시 관내에 이미 설치된 다른 액비저장조들에 대한 행정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이 민원 저장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작물 설치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검토하도록 한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입법 취지상 악취 문제를 제기한 주변 마을의 민원해결 없이 불법 시설의 양성화는 불가

2) 민원특성

- 피해구제민원, 민-민 갈등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위원회 요구로 신청인 악취 방지 시설 보완 계획 제출('13. 12. 30.)
- 현장조사('14. 1. 9.), 신청인이 제출한 시설 보완 계획을 토대로 민원 해결 방안 마련
- 허가 반대 마을 대표 인근 유사 시설 시찰('14. 1. 15.)
- 위원회 조정안 주민 설명, 이해 · 설득('14. 1. 28.)
- 위원회 조정안 합의('14. 2. 6.)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 · 설득

5. 조정 결과

- (신청인) 악취저감 계획(탈취시설을 설치하고 바이오가스 시설에서 처리된 액비만을 저장한다는 내용 등)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2014. 2. 7.(금)까지 피신청인에게 개발행위 허가 신청
 - (김제시장)
 - 2013. 4. 19.자로 신청인에게 처분한 원상회복명령 철회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가급적 2014. 2월 중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 6~7월은 주 1회, 그 외에는 월 1회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악취 민원이 접수될 경우, 악취를 포집하여 전문 기관에 검사 의뢰
- ※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기준 초과 시 필요한 행정조치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2억5천여만원이 투입된 시설 준공 불가 및 철거 위기 • 2억3천여만원의 국비 등 지원 불가	• 개발행위허가 추진으로 시설 준공 • 국비 지원이 가능해짐

2) 시사점

- 국비 등 보조금이 투입되는 액비저장조 철거로 인한 비용 손실 예방 및 보조금 미집행시 그 책임 소재를 다투는 소송 전개 사전 차단
-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 한센인정착촌 주민들의 고충 해결 및 인접 마을의 역차별 논란을 야기한 민-민 갈등 해소
- 유사 불법 액비저장조에 대하여 사회적 비용 손실 없이 소유자 및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바람직한 양성화 방안 제시



2014년 02월 06일 (목)
지역

김제 마을간 가축분뇨설치 갈등 '타결'

김제 마을간 가축분뇨설치 갈등 '타결'

(전주=연합뉴스) 임청 기자 = 분뇨처리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벌인 전북 김제지역의 마을간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타결됐다.

6일 권익위에 따르면 신암마을내 분뇨처리 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벌인 신암마을과 이웃 쌍용마을 간의 민원이 권익위의 중재와 양측 마을의 양보 등으로 해결됐다.

신암마을을 주민 등으로 구성된 신암영농조합법인은 지난해 3월 국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축분뇨를 액체상태로 만드는 액비저장시설 4기(총 3천400t)를 설치하던 중 악취발생을 우려하는 인근 쌍용마을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원을 제기했었다.

이번 중재로 신암영농조합은 액비저장조에 1차 처리된 액비만 저장하기로 하는 등 악취저감 노력을 하기로 했고, 김제시는 쌍용마을의 민원을 받아들여 매월 정기적으로 액비저장조에 대한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현장 조정회의를 한 권익위 신영기 상임위원은 "평화로운 시골마을에 큰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갈등의 소지를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히 해결했다는데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와함께 "임실 수암마을 주민들이 낸 '지방도 717호선 조기 건설 및 수암마을 진입도로 개설' 민원도 원만히 해결돼 마을주민들이 이동 불편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lc21@yna.co.kr

국민권익
NEWSis()
권익 위
청정 뉴스
2014.02.06

2014년 02월 06일 (목)
종합

권익위, 신암마을 주민들 고충 해결



【서울=뉴스시】국민권익위원회 신영기 상임위원(오른쪽 두번째)이 6일 오후 전북 김제시 용지면사무소에서 열린 현장조정회의에서 신암마을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고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합의한후 민원인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4.02.06.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全羅日報

2014년 02월 07일 (금)
지역 08면

신암마을 개발행위 허가해주고 쌍용마을에 피해 없도록 관리 강화

김제 마을간 가축분뇨시설 갈등 '타결'

권익위, 수차례 현장방문 거쳐
중재안 제시... 양측 수용키로

가축분뇨 처리를 둘러싸고 갈등을 보인 김제 신암마을과 쌍용마을간 민원이 해결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6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및 2억3000여만원의 보조금 지급이 어려웠던 신암마을에 개발행위를 허가해주고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해 주민들의 갈등이 일단락 됐다.

이날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안에 따라 신암마을 주민들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액비저장조에 1차 처리된 액비만 저장할 것을 약속하는 등의 악취저감 계획을 제출하고, 김제시는 쌍용마을의 양배 아래 개발행위허가 및 보조금 집행이 가능토록 협조하는 한편 쌍용마을 의견을 받아 들어 매월 정기적으로 액비저장조에 대한 악취를 포집,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업무 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 한 후 용지면사무소에서 마을주민들과 강박석 염지축산영농조합 대표이사, 박상배 신암영농조합 대표이사, 이진식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영기 국민권익위원의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해 김제시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하고 보조금 집행이 가능토록 하는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김제 신암마을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발행위허가 관련 현장조정
주관 : 국민권익위원회 일시·장소 : 2014. 2. 6(목) 13:50, 김제 용지면사무소



6일 김제 용지면사무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 주재 현장조정회의에서 신암마을과 쌍용마을 관계자와 0건식 시장이 합의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신암마을 주민 등으로 구성된 신암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박상배)과 염지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강박석)은 국비보조금과 자부담 등 2억5328만원을 들여 가축분뇨를 액체상태로 만든 액비 저장

한 시설 47(총 3400톤 규모)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던 지난해 4월 김제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다.

한편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권익위 신영

기 상임위원은 "신암마을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한편 자칫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큰 불화를 야기할 수 있는 갈등 소지를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히 해결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제=최창홍기자·cy@

하남미사공공주택사업지구내 천주교 구산성지 존치계획

민원번호 : 2BA-1407-377865(도시수자원민원과)

▶ 민원 개요

하남시 지정 향토유적인 구산성지가 하남미사공공주택사업에 편입되어 존치하게 되는데, 이 민원 성지 외곽에는 성인 등 순교자 묘와 이를 현양하는 부지는 존치되지 아니하여 성지의 본래 목적을 다하기 어려우므로 순교자 묘와 현양터를 이전할 부지를 무상 공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합리적인 존치계획을 마련하도록 조정·중재

*피해구제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정○○(천주교 수원교구 구산성지 주임신부, 1만신도 서명)
- 피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관계기관 : 경기도 하남시장

2) 민원주요내용

- 하남시 지정 향토유적인 천주교 구산성지의 성인 등 순교자 묘와 현양터를 이전할 부지를 무상 공급하여 주고, 성지의 정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천주교 수원교구가 원하는 규모의 토지에 대한 무상공급 가능 여부
-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관리하는 현양터 묘역의 이전협조 여부 등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천주교 수원교구가 원하는 규모의 토지 무상공급
- (한국토지주택공사) 현양터 면적을 준치 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 그 외 추가 부지를 무상 공급하는 것은 곤란
- (하남시장) 구산성지는 역사성 깊은 향토유적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획하는 구산성지 존치내용에 따라 유적지정 변경 조치할 예정

2) 민원특성 : 피해구제 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 6회 활동('12. 11. ~ '14. 7.)
- 공공기관이 토지를 무상공급하기 어려운 점 이해·설득
- 존치되는 성지 주변에 대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여 집단민원 해소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 현양터 면적을 구산성지 존치부지 면적에 포함하고 인근에 문화공원 및 노외주차장 계획 수립
- (신청인) 순교자 묘를 2014년 9월까지 존치되는 성지 안으로 이전
- (하남시장) 문화공원 시설이관시 적극관리하고 존치되는 구산성지에 대한 향토유적 지정변경 추진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기존 존지면적은 존치부담금 납부하고 추가 토지공급은 유상공급 • 성지박 순교자묘 이전시기 불확정	• 현양터 면적을 존치면적으로 추가하고 성지 정형화를 위한 공공부지 계획마련 • 순교자묘 이전 협조 약속

2) 시사점

- 민원성지는 지방향토유적으로 등재되어 역사성을 인정하여 합리적인 보전계획 마련이 필요하였고, 성지박에 위치한 순교자 묘역이전에 있어 천주교 수원교구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천주교 수원교구 및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 모두 만족하는 결과 도출

국민권익위원회 NEWSsis. ()

2014년 08월 12일 (화)
종합

천주교 구산성지 민원현장 방문한 박재영 사무처장



【서울=뉴스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박재영 사무처장이 12일 오후 하남미사 공공주택 사업지구에 편입된 천주교 구산성지의 합리적인 존치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구산성지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듣고 있다.
2014.08.12.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국방국방민원

경찰민원

산업노동민원

도시수자원민원

교통도로민원

고충민원 특별조사팀

서울경제

2014년 08월 13일 (수)
사회 24면

또 '교황 효과'...구산성지 보존방안 타결

경기도 하남시의 '구산성지' 보존방안을 놓고 수년간 갈등을 이어온 천주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앞두고 합의에 성공했다. 남북 간 해빙 무드에 교황 방한이 적잖은 영향을 주는 등 '포프(Pope) 프란치스코'가 한국 땅을 밟기도 전에 그 효과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

박재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LH 하남사업본부에서 천주교와 하남시·LH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산성지 보존계획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구산성지는 지난 1980년 로마교황청이 순례성지로, 2001년 하남시가 향토유적으로 지정했지만 LH가 2009년 공공주택 사업지구로 편입하면서 보존방안을 놓고 갈등이 지속됐다.

LH는 하남시가 유적으로 지정한 부지는 성지로 존치하겠지만 인근의 순교자 묘역과 이를 기리는 현양터를 제외해 천주교 수원교구 등이 신도 1만여명의 서명을 모아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구산성지의 역사성과 현양터가 종교용 부지임을 내세워 구산성지의 확장을 적극 중재, LH가 현양터를 존치될 성지 면적에 포함하고 인근에 문화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천주교 수원교구도 한 발 양보해 순교자 묘는 다음달까지 존치될 성지로 이전하기로 했다.

박 부위원장은 "구산성지는 교황청이 지정한 순례성지이자 성인인 김성우 안토니오가 모셔져 있는 역사적인 곳"이라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앞두고 보존방안이 확정돼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손철기자 runiron@sed.co.kr

일간경기

2014년 08월 14일 (목)
사회 19면

권익위, 교황청지정 순례성지 '구산성지'보존 중재 하남미사 공공주택에 포함되어 보존방안 수년간 갈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2일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하남미사 공공주택 사업지구에 편입된 천주교 구산성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소재) 보존방안을 놓고 수년간 이견을 보여 온 천주교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입장을 조정 중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구산성지는 1980년 로마교황청이 순례성지로 지정하고 2001년 하남시가 향토유적(제4호)로 지정한 천주교 성지인데, 2009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지구로 편입하면서 보존방안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성지 보존을 위해 순교자 묘역과 현양터를 제외한 구산성지를 사업지구 안에 그대로 남겨 두겠다는 존치입장을 정했으나, 천주교(수원교구) 측은 순교자 묘역과 현양터가 없는 성지는 성지로서의 목적을 다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난 7월 1만여 명의 신도가 서명한 고충민원(민원대표 정종득 구산성지 주임신부)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고충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구산성지는 천주교 순례성지로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그 역사성이 있는 점, 조세심판원도 현양터를 종교용 부지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측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존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그 결과로 12일 오후 3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하

남사업본부에서 정종득 구산성지 주임신부, 김복운 하남시 부시장, 이상곤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박재영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구산성지 보존계획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내용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 현양터 면적을 구산성지 존치 면적에 포함하고, 인근에 문화공원과 노외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며, ▲천주교 수원교구는 순교자 묘를 존치되는 성지로 9월까지 이전하고, ▲하남시는 존치되는 구산성지에 대한 향토유적 지정변경을 추진 하기로 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하여 조정회의를 주재한 권익위 박재영 부위원장은 "구산성지는 교황청이 지정한 순례성지이자 성인인 김성우 안토니오가 모셔져 있는 역사적인 곳으로, 오늘 보존방안이 마련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구산성지가 천주교와 하남시를 대표하는 유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학모 기자 khm@1gan.co.kr

강원 정선 동강 소재 세월교 재축

민원번호 : 2AA-1309-287298(도시수자원민원과)

▶ 민원 개요

정선군 소재 제장·점재·수동 마을의 접근을 위해 동강의 계획홍수위 아래에 설치된 기존 세월교(洗越橋)가, 매년 여름 장마철 침수로 인해 장기간 고립(연간 최대 45일)되어 주거 생활에 불편에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세월교 개축을 위한 하천점용이 가능하도록 조정·중재하여 주민 숙원 해결

*집단민원(80명), 안전민원, 생활불편민원, 장기숙원 해결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김○○(정선군 제장·점재·수동 마을 주민 80명 대표)
- 피신청인 : 강원도 정선군수(피신청인1) 강원도지사(피신청인2)

2) 민원주요내용

- 정선군 소재 기존 세월교가, 매년 여름 장마철 침수로 인해 장기간 고립(연간 최대 45일)되어 주거 생활에 불편이 있으니 세월교 개축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세월교 개축이 하천기본계획에 위배되는 지 여부
- 개축을 위한 예산 부담 가능성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세월교 개축 필요
- (정선군수) 주변 여건상 부득이하게 세월교의 높이를 계획홍수위보다 낮게 하는 개축 계획을 수립하여 허가권자인 강원도지사에게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개축하고자 함
- (강원도지사) 하천구역 내 교량설치는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계획하폭, 계획홍수위 및 여유고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교량의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는 곤란

2) 민원특성 : 안전민원, 생활불편 민원, 집단민원, 장기숙원 해결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 및 출석조사('13. 10. ~ '14.1.), 관계기관 협의 2회

2) 갈등해결수단

- 상급기관의 법령해석을 통해 세월교는 하천기본계획에 부합함을 전제하지 않는 교량임을 확인하고 세월교 개축이 주거안전에 기요하는 사안임을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정선군) 생태·경관지역에서 세월교 개축에 따른 지방환경청 협의 및 구조물의 적정설계·수리변화 검토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2014. 4월까지 수립하여 강원도에 제출하고 하천점용허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2014. 12월까지 세월교 개축 착공
- (강원도) 정선군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재해안전 및 치수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속히 하천점용허가절차 이행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장마철 등 호우 때 마다 교량의 침수로 매년 45여 일 주거지 고립	• 신규 교량으로 7일정도만 침수 예상되어 마을 주민의 거주지 고립 최소화

2) 시사점

- 위원회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세월교 개축이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점임을 이해·설득
- 기존 교량 철거 후 보다 안전한 다리로 개축하도록 하여 보다 나은 지역 주민들의 거주여건 조성이 가능하도록 함

※ 민원 세월교 개축을 위한 발주가 완료되었고 '14년 6월 중 세월교 준공 예정

삼척 MBC

2014년 03월 26일(수)

동강생태경관보전지역 잠수교 개축



동강생태경관보전지역 잠수교 개축[R]=투

◀ANC▶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동강유역의 잠수교 3개가 개축됩니다.

강원도와 정선군의 입장이 서로 달라 공사를 못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해 나서면서 해결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군 신동읍을 흐르는 동강입니다.

강 건너 주민들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이 잠수교입니다.

S/U 말 그대로 강물이 불어나면 잠기는 다리이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건너다닐 수 없습니다.

심할 때는 1년에 45일이나 잠겼고 주민들은 그때마다 꼼짝없이 고립됐습니다.

◀INT▶이근철(주민) '우선 여기서는 농산물 나가는 거, 그리고 여기는 백운산 등산로기 때문에 여기 왔다가 물이 잠기면 나가지 못해요.'

주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호소해도 개선은 힘들었습니다.

하천점용 허가권을 가진 강원도는 교량을 새로 놓을 거면 홍수위보다 높아야 한다는 입장,

높이가 11미터 이상 돼야 한다는 건데 현장 여건과 맞지 않고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관훼손이 뻔해 환경부의 승인을 받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교인 실타래를 풀은 건 국민권익위원회.

집단민원을 접수한 위원회는 6개월 동안 기관간의 입장을 중재해 조정안을 만들어냈습니다.

◀ I N T ▶ 박재영(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국토부의 원래 하천기본계획에 의하면 이걸 굉장히 높도록 여기 보시면 이렇게 높이 계획고가 돼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연경관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보다는 더 낮춰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정선군은 올해 장마철이 끝나면 잠수교 3개를 개축하는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62억 원을 들여 잠수교를 2~3미터 가량 높일 계획인데 공사를 마치면 연간 평균 1.5일 정도만 물에 잠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인호입니다.

공감언론 **NEWSis.** ()
국내 최대
지역 뉴스포털
2007.2011

2014년 03월 25일 (화)
종합

정선군 동강 인근 마을 민원 현장 방문한 박재영 사무처장



【서울=뉴스시스】국민권익위원회 박재영 사무처장이 25일 오후 장마 때마다 교량이 물에 잠기는 통행 불편을 겪는 강원도 정선군 동강마을 민원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듣고 있다. 2014.03.25.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공감언론 뉴스시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스시 사진영상부(n-photo@newsis.com, 02-721-7470)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연합뉴스

정선 동강 세월교 둘러보는 권익위



(정선=연합뉴스) 2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강원 정선군 동강 점재교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점재교는 동강 변 마을을 잇는 세월교 가운데 하나이고, 높이가 낮아 큰비가 오면 강물에 잠긴다.
 2014.3.25 <<정선군 제공>>
 byh@yna.co.kr
 (끝)/배연호

국방국방민원

경찰민원

산업노동민원

도시수자원민원

교통도로민원

고충민원 특별조사팀

학익유수지 환경개선사업 조속 추진 요구

민원번호 : 2CA-1306-253242(도시수자원민원과)

▶ 민원개요

1994년부터 인천 남구 용현동 갯골수로 일원의 학익유수지에 오폐수가 흘러들어 악취문제로 고충을 받아온 주민(2,627명) 등이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하여 유입되는 오폐수 정화와 차단대책을 마련하고 학익유수지와 연계되는 갯골수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조정·합의

*집단민원(2,626명), 환경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주민대표 장○○ 외 2,625명(신청인1)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종합개발(주)(신청인2)
- 피신청인 : 인천광역시장(피신청인 1), 남구청장(피신청인 2)
중구청장(피신청인 3),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피신청인 4)

2) 민원주요내용

- (신청인 1(장○○ 외 2,625명)) 학익유수지에 오폐수가 유입됨에 따라 폐기물질 침전으로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거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으니 환경개선사업 조속한 추진 요구
- (신청인 2 (□□종합개발)) 학익유수지 결정 이전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피신청인 1·2와 매립기본계획 이행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학익유수지 변경 등을 통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승인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이행 협약 지연 등
- 감사원 감사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중단
- 환경개선사업 비용 부담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환경개선사업 조속 추진 필요
- (인천광역시) 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청인 2가 학익유수지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여 입안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던 중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주민제안서를 반려하였으므로 감사처분의 조치계획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재검토할 계획
- (남구청장·중구청장) 민원 시설 변경을 위한 주민제안 및 매립기본계획 반영 이전에 해수 및 내수의 자연배제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갯골수로에 대한 정비방안이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학익유수지에서 연안 해안으로 유입되는 오폐수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므로 오폐수 차단방안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

2) 민원특성 : 환경민원(생활하수 악취), 집단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 출석조사 및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 총 6회('13. 7. ~ '14. 3.)
- 감사원 감사처분으로 중단된 학익유수지 환경개선사업 조속 추진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방안 마련

2) 갈등해결수단 : 감사원 감사처분 이해 설득, 부처(국무조정실)간 협업

5. 조정 결과

- (인천광역시)
 - 학익유수지 주변 하수처리방식 개선(합류식→분류식) 등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통한 환경개선사업 추진
 - 하수처리장 운영방안 개선 등 학익유수지로 유입되는 오폐수 정화 및 차단방안 및 유수지내 퇴적된 폐기물 토사 제거방안 마련
 - 학익유수지 유수용량 유지방안 마련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유수면 매립면허,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 (남구청·중구청) 학익유수지의 유수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갯골수로 통수능력 향상

-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학익유수지 주변 연근해 오염원 진단을 위한 해양환경 측정망 조사 정점 추가 운영 등 상시 관리방안 수립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생활하수 등 오폐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만조시 물 흐름이 막혀 수질악화로 인한 상습적인 악취 발생으로 거주민 교통 지속	• 감사원 감사처분으로 중단된 학익 유수지 공유수면 매립과 환경개선 사업 추진으로 오래된 주민 숙원 해결

2) 시사점

- 감사원 감사 처분에 대하여 학익유수지의 고유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입안 제안자인 (주)□□종합개발과 인천광역시 학익유수지 하류부 준설과 빗물펌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기술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당초보다 향상된 유수용량을 확보토록 조정방안 마련
- 신청인들과 관계기관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장기간 갈등이 지속된 점을 감안하여 국무조정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협업을 통하여 집단민원 조정 해결

- 2013. 9. 6. : 언론보도 (KBS 9 뉴스추적) '유수지 오염수 바다로'



인천일보

'학익유수지 악취' 20년만에 해결되나

권익위원장 현장방문...시·군·주민 조정회의

하류부 준설·배수펌프 추가 등 중재안 제시

약 20년간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인천 학익유수지 악취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 중재안을 내놔다.

폐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주장해 온 주민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관계기관들의 협의를 통해 실마리를 찾은 격으로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는 10일 인천 남구 용현동 갯골수로 일대의 학익유수지를 현장 방문하고 민원 해결안을 제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학익유수지는 지난 1994년부터 인근의 생활하수 등 오폐수가 유수지로 흘러 들면서 폐기물이 부패해 생기는 악취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특히 학익유수지는 생활오수와 빗물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합류식 하수 처리방식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만조 때는 물의 흐름이 막혀 수

질이 상습적으로 악화해 왔다.

악취 피해에 시달려 온 주민들 중 2027명은 지속적으로 인천시와 권익위 등에 집단 민원을 제기해 왔다.

권익위는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관계기관들의 합의를 조율했다.

10일에는 이성보 권익위 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동진군청 중회의실에서 지역주민과 김교중 인천시 정무부시장, 한태일 인천광역시 남구 부구청장, 홍희경 중구 부구청장, 지희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권익위가 제시하는 중재안에 대한 참석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권익위의 중재 내용은 ▲인천시가 현재 용역 중인 하수도정비기본



10일 남구 용현동 갯골 유수지를 찾은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현장조정을 위해 유수지로 들어오고 있다.

/장민수기자 photo@hankooktimes.co.kr

계획에 학익유수지 주변 환경개선 방안을 포함할 것 ▲당초 유수용량을 유지하기 위해 학익유수지 하류부 준설과 배수펌프 시설 추가 설치 등에 대한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해 유수지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유수지로 유입되는 오폐수 정화의 차단대책을 마련 ▲

남구와 중구가 협의해 갯골수로의 물 흐름이 지장이 없도록 퇴적된 폐기물을 제거하는 등의 정비방안을 강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연근해 해양오염 진단을 위한 해양환경 측정지점을 추가할 것 등이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현장조정회의에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제공방안이 마련되어 다투게 생각한다"며 "특히 수년간 이어온 민원을 관계기관들이 협업을 통해 실마리를 찾은 것은 문제 해결 방법이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장민수-이순영기자 photo@hankooktimes.co.kr

양재대로 보도육교 설치

민원번호 : 2BA-1309-956146, 2AA-1310-112979(도시수자원민원과)

▶ 민원 개요

서울 서초보금자리택지지구에는 중·고교가 없고 어린이집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양재대로 맞은편의 우면2국민임대주택지구로 학생·부모 등의 통행이 불가피한데, 양재대로를 건너는 시설이 없으니 보도육교를 설치하여 주고, 택지지구에 인접한 양재천이 우기철에 유속이 빨라 위험하니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서초보금자리택지지구 개발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할지역 지자체가 협업하여 보도육교를 설치하도록 조정 중재하여 다수인 민원 해결

*집단민원(175명), 안전민원, 생활불편 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서초보금자리 A4BL 입주예정자회 : 박○○ 외 174명
- 피신청인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피신청인1), 한국토지주택공사(피신청인2)

2) 민원주요내용

- 서울 서초보금자리택지지구와 우면2국민임대주택지구를 통행할 수 있는 보도육교 설치 요구
- 택지지구에 인접한 양재천이 우기철에 유속이 빨라 위험하니 진입차단기, 구명로프, 구명튜브 등 안전시설 설치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보도육교 설치 필요 타당성
- 보도육교 설치 주체(비용부담 및 사업수행 주체)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서초구청장) 양재대로는 폭 50m(왕복10차로)로서 횡단보도를 설치하기가 적정하지 않은

점을 볼 때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초보금자리택지개발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이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설치하여야 함

- (서초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도육교를 설치할 경우 인·허가 등 행정지원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우기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양재천에 진입차단기, 구명로프, 구명튜브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겠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육교설치 타당성 용역을 하며 입주예정자 설문조사, 유사사례 조사, 보행경로별 교통여건 등을 검토결과 보도육교 설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외 지구이므로 육교 설치요구 수용 곤란

2) 민원특성 : 안전 · 생활불편 민원, 집단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 · 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13. 11. 7. 등 2회), 관계기관 협의(14. 1. 28. 등 3회)
- 보도육교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도육교 설치비용을 서초구에 지원하고, 서초구는 육교 및 양재천 방재시설 설치하기로 하여 집단민원 해소

2) 갈등해결수단 : 이해 · 설득, 관련예산 확보

5. 조정 결과

- 보도육교 설치 요구민원 해소를 위한 기관별 분담사항 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보도육교 설치예산 부담
- (서초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도육교 설치예산 지급받아 육교설치 양재천에 진입 차단기, 구명로프 · 튜브 등 안전시설 설치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민원 택지지구에서 중·고교 통학, 어린이집 왕복 등을 위하여는 1.2~1.6km를 우회하고, 횡단보도를 다수 건너야 하는 위험, 불편 존재 - 양재천 하상도로는 우기철 침수되는 빈도가 잦아 보행경로로 제공하기는 위험	• 보도육교 및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써 보행거리 단축 및 통행 안전 제공

2) 시사점

- 5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보행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됨.
- 택지개발 사업주체와 지방자치단체가 택지지구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해 협력함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강원혁신도시 단독주택용지 도시가스 공급 요구

민원번호 : 2CA-1401-097274 (도시수자원민원과)

▶ 민원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강원혁신도시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았으나 관계기관간 도시가스 배관시설의 설치주체 및 비용부담에 대한 이견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아 입주할 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의 주거생활 불편을 고려하여 도시가스 시설이 조속히 설치되도록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

*집단민원(506명), 생활불편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강원도 원주시 김○○ 외 505명
- 피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피신청인 1), 강원도지사(피신청인 2)
- 관련기관 : 참빛원주도시가스(주)

2) 민원주요내용

- 강원혁신도시 도시개발사업 지구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았으나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아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도시가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관련법령의 상충(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주체 및 비용부담)
- 간선시설 설치의무를 명확히 하도록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권고
- 강원혁신도시 준공 이전(14. 6월)에 제도개선 추진 불가능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입주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도시가스 공급 요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법령에 의거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은 도시가스 공급자인 관계기관(참빛원주도시가스(주))에게 있으므로 비용 등을 부담할 수 없음

- (강원도지사) 강원도는 도시구조상 도시가스 배관 설치비용이 높아 도시가스공급자의 부담상승은 결국 요금상승으로 이어져 다른 지역주민들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되는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참빛원주도시가스) 강원도는 도시가스사업 구조상 가스공급비용 대비 투자수익률이 낮고 초기설치 비용에 높아 회사경영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민원해결 차원에서 도시가스시설 설치비용의 50%를 부담할 계획임

2) 민원특성 : 생활불편 민원, 집단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 출석조사 및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 총 7회(14. 2. ~14. 5.)
-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주체 및 비용부담에 대한 관련법령 상충으로 관계기관의 이견을 조정하여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 마련

※ 관련규정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2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공급을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55조 제2호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 전기시설·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에 해당 지역에 전기·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2) 갈등해결수단 : 신청인에게도 비용부담 이해설득, 제3의 조정안 제시

5. 조정 결과

- (신청인·참빛원주도시가스(주))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비용에 대하여 각각 50% 분담
- (한국토지주택공사·참빛원주도시가스(주)) 도로 포장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각각 50% 분담
- (신청인·한국토지주택공사·참빛원주도시가스(주))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공사의 시행 및 부담금의 납부방법 등은 이 민원 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협의완료하고 즉시 공사에 착수
- (강원도) 도시가스 요금 결정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 상정시 이 민원의 조정 취지 등에 대한 제안설명 등을 통하여 도시가스 공급비용 상승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강원혁신도시 준공 이전에 입주가 불가할 경우 도시가스 설치는 3년 이후에 가능하므로 입주에 차질을 겪음	도시가스 배관시설 공사 완료되어 입주 진행 중

2) 시사점

- 위원회 조정으로 도시가스 설치 방안이 마련되어 단독주택용지 입주예정자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속히 제공

- 14. 10.: 언론보도 (KBS 7 뉴스) '혁신도시 가스분쟁에 주민들만 발동동'



연합뉴스 NEWSis. ()

도시가스 미공급 민원 중재하는 권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혁신도시사업단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원주혁신도시 내 단독주택용지 입주자 732명의 도시가스공급 관련 집단민원을 중재하고 있다.

민원인 730여 명은 분당대금을 다 내고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입주를 못할 처지가 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냈다.
2014.6.13 << 권익위 제공 >>

양주신도시내 마을 진출입도로 안전대책 요구

민원번호 : 2AA-1407-054730, 2BA-1408-291567(도시수자원민원과)

▶ 민원 개요

양주(옥정)신도시~고읍택지개발지구간 연결도로와 접하는 양주시 옥정동 진입도로 및 고읍동 진입도로의 경사 및 커브가 심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옥정동 진입도로를 직선으로 연결해주고 본선도로에 교차로 및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하여, 접속도로와 연결되는 본선도로에 교차로·신호등 및 횡단보도를 관계기관 협의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변경인가 후 설치하고, 부체도로 종점부 국유지를 활용하여 부체도로의 경사를 완화하고, 부체도로 곡선부 안쪽으로 확폭하여 커브를 완화하며, 접속도로 경사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정·합의

*집단민원(252명), 안전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채○○ 외 양주시 옥정동 주민 86명, 정○○ 외 양주시 고읍동 주민 164명
- 피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피신청인), 경기 양주시장(관계기관)

2) 민원주요내용

- 양주시 옥정동 진입도로의 경사 및 커브가 심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직선으로 연결해 주고, 양주시 고읍동 진입도로의 경사가 심하여 위험하니 경사를 완화해 주고, 본선도로에 교차로 및 횡단보도 설치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부체도로의 직선도로에 직선 연결 여부 및 교차로 설치 위치
- 경사도 완화 범위 등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지역주민) 부체도로를 본선도로에 직선으로 연결 및 경사·급커브 완화 요구, 본선도로에 교차로 및 횡단보도 설치 요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체도로를 본선도로에 직선으로 접속하는 방안은 당초 교통 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시 본선도로의 간선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택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수용 불가하며, 부체도로 및 접속도로의 경사 및 급커브 문제는 양주시와 협의하여 완화하고, 본선도로내 교차로 및 횡단보도는 관계기관 협의 및 교통 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통해 주민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할 계획

2) 민원특성 : 안전민원, 집단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주민설명회(2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조정·중재안 도출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5. 조정 (협의) 결과

- (한국토지주택공사)
 - 부체도로 경사 완화(10%→6.99%) : 부체도로 종점부 국유지 활용
 - 접속도로 경사 완화(16.8%→6.9%)
 - 부체도로 커브 완화 및 본선도로에 교차로·신호등·횡단보도 설치
- (경기 양주시장) 부체도로 경사 완화를 위한 국유지 활용 및 본선도로내 교차로 설치 등 LH의 협의사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본선도로에 연결되는 부체도로의 경사·커브가 심하고, 교차로·횡단보도 미설치로 주민들의 안전 및 교통불편 예상	• 본선도로에 연결되는 부체도로의 경사·커브를 완화하고, 교차로 및 횡단보도 설치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 해결

2) 시사점

-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환경을 사전에 차단·개선하여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NEWSis. ()

2014년 09월 04일 (목)

양주신도시 옥정·고읍마을 민원현장 방문한 권익위



【서울=뉴스시스】 국민권익위원회 최학균 상임위원이 4일 오후 경기도 양주(옥정)신도시와 고읍택지개발지구를 연결하는 도로와 이어진 옥정동 및 고읍동 마을 진출입로의 안전문제로 민원이 발생한 곳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듣고 있다. 2014.09.04.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권익위, 양주 옥정·고읍동 진입로 안전문제 조정

권익위, 양주 옥정·고읍동 진입로 안전문제 조정

(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양주신도시 옥정·고읍동 주민들은 마을 진출입 때 항상 불안하다.

진입로의 경사가 심한데다 급커브여서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주민 250여 명은 신도시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 같은 고충을 수차례 호소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았다.

권익위는 지난 7~8월 현장조사를 통해 안전문제 등을 확인했다.

그리고 4일 오후 LH 양주사업본부에서 주민 대표와 LH 관계자가 참석한 조정회의를 열어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LH는 진입로 연결도로에 교차로와 신호등, 건널목을 설치하고 고읍동 진입로 경사도를 16.8%에서 6.9%로 낮출 계획이다.

또 옥정동 진입로의 경사도를 10%에서 6.99%로 완화하고 곡선부를 확장해 급커브를 개선하기로 했다.

kyoon@yna.co.kr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

산업노동민원

도시소자민원

교통민원

고충민원 특별조사팀

공주 쌍신 산업단지 개발 기업고충 해결

민원번호 : 2CA-1405-362367(도시수자원민원과)

▶ 민원 개요

자동차 중고부품과 중고자동차를 국내외에 판매하는 주식회사 ○○이 충남 공주 쌍신동 일대에 190,000㎡의 규모로 사업부지 조성을 추진해 왔으나, 해당부지가 30여m 높이의 고속도로 비탈면에 접해 있고 가장자리도 20m 폭의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산업단지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에 대해, 위원회의 중재와 한국도로공사 및 공주시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해결방안을 찾게 됨

*기업민원, 경제활성화 관련 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
- 피신청인 : 충청남도지사, 공주시장, 한국도로공사

2) 민원주요내용

- 신청인이 충남 공주시 쌍신동 산1-1 일대 190,062㎡에 중고자동차 재활용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부지 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평면식으로 개발가능하도록 조치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및 갈등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고, 평면식 개발을 통해 고속도로 비탈면을 제거하여 미관 향상 및 유지관리비용 절감 가능
- (충청남도지사) 공주시 산업단지 지정 가능 물량이 부족하여 이 민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추가 물량 배정 필요
- (공주시장) 산업단지는 실수요자가 개발하여야 하고, 주변의 양호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함
- (한국도로공사) 산업단지로 조성하여야 접도구역 개발이 가능하고, 도로구역 공사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가피성·공익성 등을 따져 허가가 가능함

2) 민원특성 : 기업민원, 경제활성화 민원

3.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조사('14. 7. 22.), 국토부 방문 자문('14. 8. 5.)
-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물류단지에서 산업단지로 신청인 개발계획 변경 의사 제출('14. 10. 14.)
- 변경된 개발계획을 토대로 2차 현장조사, 관계기관 설득('14. 10. 23.)
- 위원회 조정안 합의('14. 11. 27.)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 · 설득

4. 조정 결과

- (신청인)
 - 산업시설용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등 산업입지 법령을 준수하면서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산업단지계획 수립
 - 토석채취허가 관련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절 · 성토 계획 변경
- (충청남도지사) 산업단지 물량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승인 요청
- (공주시장)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접수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 진행 후 승인 여부 결정
- (한국도로공사) 안전대책, 평 · 단면계획, 도로구역 토석처리 방법 등이 충족될 경우 도로구역 공사 허가

5.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면적 부족으로 사업 추진 여부 불투명 • 고속도로 법면 지속적 유지 · 관리	• 사업부지 최대 확보로 사업성 제고 • 유지 · 관리 대상 법면 없어짐

2) 시사점

- 개발 가능 면적 극대화해 기업의 사업성 제고 및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고속도로 법면 유지관리비 절감, 낙석 등 안전사고 예방

중도일보
1991년 창간 무궁화신문

금강일보
www.ggibo.com

문화채널
大田투데이

NEWSSTOWN
신한국신문

news
PAG

뉴스파고
백제NEWS

2014년 11월 28일 (금)
사회 06면

충청신문

부지 개발 막힌 中소 민원 관계기관 협업으로 해결

권익위, 공주시 중고자동차 판매업체 부지조성 문제 합의 이끌어

점도구역과 고속도로 비탈면 때문에 사업부지 조성에 어려움을 겪던 충남 공주시 소재 한 중소기업의 민원이 국 민권익위원회의 중재와 한국도로공사 및 공주시 등 관계기관의 협업으로 해결 방안을 찾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공주시 신관공공하수처리장 환경교육장에서 ㈜세종, 도로공사, 공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학균 상임위원 주자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중고자동차 판매업체인 세종이 제기한 사업부지 조성 민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

다.

자동차 중고부품과 중고자동차를 국내외에 판매하는 세종은 공주시 쌍신동 일대에 19만㎡ 규모의 중고차 재활용 관련 사업부지 조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30여m 높이의 고속도로 비탈면에 접해 있고 가장자리 도 폭 20m의 점도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부지 조성길이 막히자 지난 5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점도구역은 도로변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여서 부득이 비탈면 정상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계단식으로 조성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평면적으로 개발할 때보다 사용 가능 부지가 40% 정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결과 산업단지의 경우 점도구역 개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기업과 협의해 일부 자동차 관련 제조업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그러나 점도구역과 비탈면 개발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관계기관에 해당

기업의 사정을 설명해 승인을 이끌어 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세종은 산업용지의 3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등 산업 입지 법령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해 공주시에 승인신청을 하고,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도로공사는 안전대책 충족을 전제로 평면식 개발을 위한 도로구역 공사를 허가하기로 했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민원 해결은 권익위와 관계기관이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낸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주/정영순 기자 7000800@daey.com

권익위, 공주 소재 중소기업 민원 해결

2014년 11월 27일 (목)
종합

공주 쌍신 산업단지 평면식 개발 허가 요구 조정회의



【서울=뉴스시스】국민권익위원회 최학균 상임위원이 27일 충남 공주 신관공공하수처리장 환경교육장에서 공장부지 조성에 어려움을 겪던 공주 소재 자동차 판매 중소기업의 민원을 관계기관간 조정으로 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4.11.27.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부산에코델타시티 이주대책 시행

민원번호 : 2BA-1410-086940(도시수자원민원과)

▶ 민원 개요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신청인들의 토지·가옥이 편입되어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주 및 생활대책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이 지역 중 일부를 ‘부전~마산 복선철도 민간투자건설사업’ 구간으로 지정함으로써, 수자원공사와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서로 보상책임을 미루고 보상기준도 서로 다르게 적용되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이주 및 생활대책을 에코델타시티사업에서 수립하는 내용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수자원공사와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서로 협업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을 시행하기로 조정 중재하여 민원 해결

*집단민원(12명), 피해구제 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부산 강서구 반○○외 11명
- 피신청인 : 한국수자원공사(피신청인1), 한국철도시설공단(피신청인2)

2) 민원주요내용

-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신청인들의 토지·가옥이 편입되어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주 및 생활대책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이 지역 중 일부를 ‘부전~마산 복선철도 민간투자건설사업’ 구간으로 지정함으로써, 수자원공사와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서로 보상책임을 미루고 보상기준도 서로 다르게 적용되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이주 및 생활대책을 에코 델타시티사업에서 수립하는 내용으로 동일하게 적용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민원지역에 대한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책임기관 결정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한국수자원공사) 복선철도사업 구역에 편입된 토지·가옥에 대한 보상 및 이주·생활대책 수립책임은 피신청인2에게 있음. 피신청인2가 요청할 경우 신청인들에게 에코델타시티사업 구역내 이주대책용지를 공급할 수 있으나, 신청인들은 에코델타시티사업에 따른 보상대상이 아니므로 이주대책용지 공급가는 일반분양가(감정가)를 적용하여야 함
- (한국철도시설공단) 신청인들은 당초 피신청인1이 시행하는 에코델타시티사업 구역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대상자이었으므로 피신청인1이 해결하여야 함. 피신청인1이 신청인들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이주대책용지 공급가와 택지 조성원가의 차액은 한국수자원공사에게 보전 가능

2) 민원특성 : 집단민원, 피해구제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14. 11. 20. 등 2회), 관계기관 협의('14. 10. 23. 등 3회)

2) 갈등해결수단 : 이해·설득, 제3의 중재안 제시

- (한국수자원공사) 이주택지를 감정가로 공급, 생활대책 시행
- (한국철도시설공단) 감정가와 이주택지공급가의 차액 부담(10억6천만원)

5. 조정 (합의) 결과

- (한국수자원공사)
 - 선정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 기준 및 이주대책용지 공급가에 따라 에코델타사업구역 내 이주대책용지 공급
 - 민원지역 편입자가 생활대책 기준에 해당할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의 부담으로 생활대책을 시행함
- (한국철도시설공단)
 - 민원지역 가옥에 대한 이주대책대상자를 한국수자원공사에 통지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 민원지역 가옥에 대한 이주대책용지 공급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일반분양가(감정가)의 차액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민원지역에 대한 보상지연 및 수자원공사 사업지구 편입 주민에 비하여 철도시설공단 사업지구 편입 주민의 보상가가 상대적으로 낮을 우려 있음	신속한 보상 및 수자원공사 사업지구와 철도시설공단 사업지구 편입 주민에게 동일하게 보상함으로써 민원야기요인 예방

2) 시사점

- 5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하여 주민들의 보상민원 해소와 국책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음
-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및 편입지구 주민이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A stylized graphic of three overlapping leaf-like shapes in shades of gray, positioned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2014년
고충민원
조정사례집

교통도로민원

- 01 ○○민자고속도로 개설로 인한 도로구조 개선
- 02 구평 IC교 성토구간 교량화
- 03 경주 건천송전선로 지중화
- 04 북영천역 인근 통로암거 신설 요구
- 05 경주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성토부 교량화
- 06 ○○택지개발 사업 관련 교차로 개선
- 07 태안 신덕마을 통로암거 설치
- 08 원주-강릉 복선철도사업 통로암거 위치변경 요구
- 09 경부선 구미 상미구교 확장
- 10 갈계마을 부체도로 신설 요구
- 11 ○○고속도로 통행불편으로 인한 영농피해구제
- 12 고속철도 건설 관련 지하차도 개선
- 13 택지사업지구내 어린이 통학로 개선
- 14 횡성 둔내정거장 통로암거 확장
- 15 항공기 소음 주민 지원사업 변경
- 16 연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개선
- 17 지방도 확장 개선
- 18 도서주민 교통 불편 해소

○○민자고속도로 개설로 인한 도로구조 개선

민원번호 : 2BA-1310-330408 (교통도로민원과)

▶ 민원 개요

○○민자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마을 앞 성토(H=22~23m)로 인해 가상리 마을의 경관훼손과 고립, 통풍 부족으로 과수원과 마늘 등의 영농피해가 예상되니 성토구간(L=210m)을 교량으로 개선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교량 연장 및 인도 추가 설치 등을 반영한 설계변경을 통하여 주민 숙원을 해결함

* 집단민원(100명 이상), 생활불편 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가상리 마을: 이○○ 외 161명 ('13. 10. 31 접수)
 - 매산동 마을: 대표 이○○ ('13. 11. 5 접수)
- ※ 피신청인 시행 동일 사업 구간내 2개 마을에서 유사 취지의 민원을 각각 제기
- 피신청인: 상주영천고속도로주식회사(피신청인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피신청인2)
- 관련기관: 영천시장

2) 민원주요내용

- (가상리 마을)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마을 앞 성토(H=22~23m)로 인해 가상리 마을의 경관훼손과 고립, 통풍 부족으로 과수원과 마늘 등의 영농피해가 예상되니 성토구간(L=210m)을 교량으로 시공 요구
- (매산동 마을)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개설에 따라 마을 앞 성토(H=3~13m)로 인해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매산마을과 하명마을이 양분되니 성토구간 (L=300m)을 교량으로 시공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토공구간의 교량화 타당성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상주영천고속도로주식회사) 영천시 통과 구간은 당초 영천시의 요구노선을 반영하여 설계의 적정성,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반영하였으므로 수용곤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신설 고속도로와 가상리 마을과는 335m가 이격되고, 매산마을 역시 315m 이격되어 진동 소음 등 환경기준을 만족하기에 마을에 끼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수용곤란
- (영천시장)
 - 가상리 마을은 다른 평야지대와 달리 진입로가 산지부의 계곡으로 형성되어 23m 높이의 거대한 독으로 도로가 지날 경우 통풍과 밀폐감이 상당하다는 주민 의견에 공감
 - 매산마을은 고속도로보다 고지대에 위치하여 밀폐의 정도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마을 통행길에 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진입도로 확대 필요

2) 민원특성 : 집단민원, 생활불편 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 등 조정 · 중재안 마련
- 현장 및 자료 조사를 통해 민원 발생 원인 분석 (피신청인 모두에게 책임 있음)

2) 갈등해결수단 : 갈등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해결 중심의 대안 도출

5. 조정 결과

- (상주영천고속도로주식회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가상리 마을의 개방감과 바람길 소통을 위해 삼부천교와 인접한 군도 2호선까지의 고성토 구간을 교량으로 연장하도록 설계변경 · 추진
 - 매산마을을 지나는 진 · 출입 도로에 인도 추가설치 및 대형버스 교행이 가능하도록 설계 변경 · 추진
 - 필요시 설계변경내용을 시뮬레이션화하여 별도의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검토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마을은 다른 평야지대와 달리 진입로가 산지부의 계곡으로 형성되어 23m 높이의 거대한 독으로 도로가 지날 경우 통풍과 밀폐감이 상당	• 토공을 교량으로 도로구조를 개선하여 개방감과 영농피해 예방

2) 시사점

- 도로사업 구간 내 집단 민원 해소로 도로개설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주요 국책사업을 원활하고 차질 없이 진행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서울신문'

2014년 03월 14일 (금)

상주~영천 고속도 가상·매산마을 성토구간 공사 마찰 권익위, 현장 중재로 2년 갈등 풀었다

주민 “마을고립·영농피해” 민원
시행기관 “설계 변경 땀 비용 증가”
이성보 위원장 직접나서 합의도출

“민·관이 협력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고 영농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국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돼 의미가 큼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국책사업에 대한 집단 민원을 조정하러 13일 직접 현장을 찾았다. 이 위원장은 경북 영천에 있는 상주~영천 고속도로 9공구 현장 사무소에서 민자 고속도로 개설을 둘러싼 관계 기관과 마을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최종 중재하고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이성보(오른쪽에서 두 번째)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공사 관계자에게 현황을 묻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토교통부와 ‘상주영천 고속도로(주)’는 2008년 12월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 협약을 체결했다. 2017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한 공사로, 대구·구미권의 급증하는 교통량 분산과 대구·경북권의 물류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고속도로 개설 구간 중 흙을 두꺼워 높이 쌓아 만드는 성토 구간 공사가 문제였다. 이 성토 때문에 영천에 있는 가상마을(103가구)과 매산마을(70가구) 주민들은 마을 고립 및 영농 피해가 예상

된다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산악지대에 둘러싸인 가상마을은 입구에 높이 23m의 거대한 성토가 생길 예정이어서 마을이 고립되고 통풍이 막혀 복숭아 농사에 큰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 마을 입구에 높이 12m가량의 성토가 쌓일 예정이었던 매산마을 주민들도 아랫마을로 가지 못해 마을이 분할될 우려가 있다며 해당 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시행 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상주영천 고속도로(주)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왔다. 두 마을의 성토 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할 경우 총 50억원 정도의 비용이 더 투입되기 때문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두 차례의 현장 방문과 수차례의 관계자 실무협의를 거치며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이날 오후 이 위원장은 가상마을과 매산마을의 지대를 살펴보고 건설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뒤 조정회의를 직접 주재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가상마을 앞 성토 구간은 교량으로 바뀌어 공사가 진행되고 매산마을은 진입도로를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별도의 인도를 만들기 위해 설계를 변경할 예정이다. 영천시와 주민들은 더 이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가상마을 대표로 이 위원장을 만난 이희진 이장은 “공사 비용 등의 문제로 해결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권익위에서 직접 마을 지형을 살펴보고 ‘이대로 성토가 쌓이면 마을이 고립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며 “2년여간 지속돼 온 갈등이 권익위 중재로 해결돼 후련하고 감사한다”고 전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경북방송



© GBN 경북방송

삼주~영천고속도로 가상리와 매산동구간 교량화 요구에 대한 합의가 13일(목) 오후2시 9공구 현장사무실에서 주민대표와 영천시 및 부산지방국도관리청, 삼주영천고속도로(주) 등 관계기관이 모인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회의를 통해 최종 합의했다.

삼주~영천고속도로는 2012년 6월 착공해 삼주와 영천을 잇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총2조 2,324억원이 투입예정이지만 일부 가상리와 매산동 구간 교설토(19~23m)로 인하여 마을의 고립과 단절이 예상되자 지역주민들은 교량화를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GBN 경북방송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이해관계자들과 현장조사 및 수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량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지역주민들과 하나되어 부산지방국도관리청 및 삼주영천고속도로 사업단에 끊임없이 협조 요청하였고 국민권익위에도 이 같은 의견을 피력하여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합의에 따라 가상리 구간에 대하여 삼주영천고속도로주식회사는 삼부천교와 인접한 군도 2호선까지의 교설토 구간을 교량으로 210m정도 연장하도록 설계변경 추진하고 부산지방국도관리청과 영천시는 삼부천교의 교량 연장 등을 위해 시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 GBN 경복방송

또한 매산동 구간에 대하여는 마을 진출입 도로에 인도와 대형버스 교행이 가능하도록 2차선으로 설계변경 추진하고, 필요시 설계변경 내용을 시뮬레이션화하여 별도의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검토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이번 조정회의는 권익위와 민원인 그리고 관계기관들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조정회의 내용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GBN 경복방송

경북매일

2014년 03월 14일(금)

영천~상주 고속도로 가상마을 구간 교량 시공

국민권익위 조정 합의

부산지방국도청이 상주-영천 고속도로 구간인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와 매산동 개설 구간을 성토대신 교량으로 변경 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매산동 9공구 현장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정회의에서 교량변경 시공이 최종 합의됐다. 이에 앞서 매산동 마을 주민들은 지난 2012년부터 부산지방국도청과 (주)영천상주고속도로에 교량변경 민원을 제기했었다.

이날 현장조정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 김영석 영천시

장, 부산지방국도관리청장(주)영천상주고속도로 관계자, 가상리·매산동 주민 등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합의에 따라 가상리 구간에 대해 상주~영천고속도로는 삼부천교와 인접한 군도 2호선까지의 고성도 구간을 교량으로 210m 정도 연장되고, 매산동 구간에는 마을 진입로와 대형버스 교행이 가능하도록 2차선으로 시공된다.

한편 부산지방국도관리청과 영천시는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키로 합의했다.

영천/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가운데) 위원장이 조정계약서 서명 후 민원인 및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

2014년 03월 14일(금)

상주~영천 고속도로 주민피해 구제

국민권익위 현장 조정 집단민원 해결점 찾아 가상마을 앞 교량 설치 매산마을 진입로 확대

【영천】영천지역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조정으로 잇따라 해결점을 찾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주~영천 고속도로 개설사업 구간의 성토공사로 인해 불편이 예상된다는 주민 집단민원을 현장 조정으로 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 가상마을(103가구)과 매

산마을(70가구) 주민은 성토로 통풍이 막히고 마을도 분할될 우려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가상마을 주민은 계곡 형태인 마을 입구에 높이 23m의 도로와 긴 터널(폭 15m·길이 90m)이 생길 예정이어서 마을 고립은 물론 바람길 막힘에 따른 복숭아농사의 피해를 호소했다.

매산마을 주민은 입구를 성토식으로 하면 아래에 있는 하명마을과 양분되는 불편이 있다며 해당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도로사업 시행기관인 부산지방국도관리청과 상주영천고속도로 주식회사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여

러 차례 실무협의 끝에 이날 영천의 고속도로 9공구 현장사무소에서 마을 주민, 손태락 부산지방국도관리청장, 임진우 상주영천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 김영석 영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중재를 시도해 합의안을 끌어냈다.

중재안에 따라 가상마을 앞을 지나는 성토구간은 교량으로 바뀌 공사를 하기로 했다. 또 매산마을 진입도로는 대폭 확대해 대형버스 교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도 영천시 서부동 중앙선 철도 복원전역 옆에 통로박스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 민원이 권익위 중재로 해소됐다.

유시용기자 ys@yeongnam.com

구평 IC교 성토구간 교량화

민원번호 : 2BA-1310-045200(교통도로민원과)

▶ 민원 개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국도 33호선 구미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의 구평IC교 성토구간으로 인하여 경북 구미시 구평동 소재 무지개 마을 주민들의 조망권 피해 및 천생산 공원 이용객 등의 통행 불편이 있으니 성토구간을 교량으로 변경·설치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공사의 설계에 따라 설치 예정이었던 구평IC의 성토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하여 시공하고, 교량 설치에 따른 협조 및 필요 사항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기로 하는 등 조정·중재를 통해 집단민원을 해결함

*생활불편민원, 집단민원(1,281명)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장○○외 1,280명
- 피신청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관계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장

2) 민원주요내용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고 있는 일반국도 33호선 구미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구포~덕산1) 건설공사의 구평IC교 성토구간으로 인하여 경북 구미시 구평동 소재 무지개 마을 주민들의 조망권 피해 및 천생산 공원 이용객 등의 통행 불편 호소

2. 주요쟁점사항 및 갈등 분석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구평IC교는 당초 교량길이가 150m로 계획되었으나 실시설계 중 주민설명회에서 마을 간 개방감 저하 등의 주민 요구를 반영하여 교량 연장을 당초 계획보다 130m 연장한 280m로 설계하였으므로 교량 추가연장은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어 수용이 어려움
 - 현재 기존 천생산공원 진입로를 대체하는 천생산 공원 진입로 중 진입부 40m 구간의 도로는 폭이 15m로 설계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도 2차로서 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없게 설계되어 있으며, 이 민원 성토구간 설치를 위한 공정 등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으므로 수용이 불가

- (경상북도 구미시장) 이 민원 마을의 조망권 확보 및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민원 공사 시행청인 피신청인이 주민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

2) 민원특성 : 생활불편민원, 집단민원

3.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13. 11. 06., '13. 12. 20.), 출석조사('13. 12. 03., '13. 12. 10.)
-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여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 및 구미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 적기 준공에 기여
- 지역 주민들의 보행안전과 통행권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집단민원 해소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4. 조정 결과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공사의 설계에 따라 설치 예정이었던 구평IC의 STA 6+455 지점에서 STA 6+580 지점(125m 연장)까지의 성토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하여 시공하고, 교량 설치에 따른 협조 및 필요 사항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총사업비를 변경 신청을 하고, 총사업비가 확보되면, 이 민원 공사 완료(2017. 9. 17. 예정) 전까지 시공
- (구미시장) 피신청인의 성토구간 교량화 등과 관련한 업무 협의요청에 적극 협조. 또한, 천생산 공원 진입도로가 종전대로 유지되는 경우, 교통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도 설치 등을 검토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및 도로시설을 정비·보완 조치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중단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 • 도로공사로 인한 대규모 성토구간으로 구미시 무지개마을 주민들의 고립감 형성 • 성토화가 되면 구평초등학교 학생들이 좁은길로 통학을 하게 되어 통학안전 위험	•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가 정해진 시기에 완료될 수 있는 단초 제공 • 성토구간의 교량화로 구미시 구평동 소재 무지개마을 주민들의 고립감이 해소 • 지역주민들의 천생산 공원 이용 불편과 구평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위험 감소

2) 시사점

- 구평IC 구간이 교량화가 되어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가 정해진 시기에 완료 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어 구미시 구평동 소재 무지개마을 주민들의 고립감 해소
 - 천생산 공원 이용 불편과 구평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과 학생들의 통학안전에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끌어냄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 ※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와 조정·합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처(기획재정부) 등의 총사업비 조정절차 등을 거쳐 '17. 12.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

경북매일

2014년 01월 21일(화)

권익위, 구미 우회국도 공사 집단민원 해결

【구미】 구미 33번 우회국도 공사에 대한 집단 민원이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말끔히 해결됐다.

이 도로는 부산국도관리청이 구미 선산에서 칠곡 산까지 연결하는 국도 33번 우회도로로 125m 구간의 구미시 구평동(무지개마을) 인근에 15~20m 높이의 흙을 쌓아 마을이 섬처럼 고립될 위기에 처했었다.

이에 마을주민들은 마을보다 높게 흙으로 채워진 도로가 마을 앞을 지나면 마을 진입로가 굴처럼 변하고 시야가 막혀 마을이 고립될 수 있다며 설계변경 등을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또한, 도로 완공 시 인근 구평초등 학생들은 인도가 아닌 좁은 길로 다녀 교통사고 등에 노출돼 위험하다며

구미시와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설계변경 등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구미시나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은 주민들의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추가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마을 사람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 접수 후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실무협의를 거친 뒤 흙을 높여 긴 설하는 도로 대신 이곳 구간을 고가다리로 시공기로 결정해 민원이 마무리됐다.

신영기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번 권익위 조정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돼 우회도로 공사도 예정대로 끝낼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시민일보

2014년 01월 21일(화)

구미시 '구평IC 성토 집단민원'

권익위와 조기완공 중재 합의

경북 구미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로 인해 구평IC 일부구간이 성토되어 무지개마을 고립, 천생산 이용객 불편, 구평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문제가 예상된 무지개마을의 집단민원(1280명)을 국민권익위원회, 부산지방국도관리청 중재로 해결이 가능하게 됐다.

시를 지나는 국도33호선 구포~덕산1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구평동 무지개마을 앞 구평IC 일부 구간이 성토화 되면 기존마을 진입로가 통로 박스로

변경되어 마을이 고립되고 매년 수만 여명이 다녀가는 천생산 공원 이용객의 불편과 구평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에 위험 우려가 있어 지역주민들이 구미시와 시행청인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대책 마련을 여러차례 요청했다.

구평IC 성토구간에 대한 피해 대책마련을 위해 주민설명회 등 개최 주민의 의견을 반영 하려고 노력했지만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의 추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민원해결에 어렵게 되었다.

이에 구미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수차례 현장조사와 실무협의를 통해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하여 지난 17일 오후 1시 지역주민과 구미시 최종원 부시장, 국민권익

위원회 신영기 상임위원, 손태락 부산지방국도관리청장 등이 참석하여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 중재안을 합의했다.

중재안 내용은 무지개마을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은 당초 설계에 따라 설치 예정이었던 성토구간(125m)을 교량으로 변경 공사완료 예정일 오는 2017년 9월17일 전까지 시공하기로 했다.

구미시는 천생산 공원 진입로가 종전대로 유지되면 교통수요 및 주변여건 등을 감안 보도설치 등 도로시설을 정비·보완하고 성토 구간 교량화 등에 관련한 업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구미=박병상 기자 pbs@siminilbo.co.kr

경북일보

2014년 01월 21일 (화)

구미시, 무지개마을 고립 해결 국민권익위·부산국토청 중재안 합의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로 인해 구평IC 일부구간이 성토되면서 인근 무지개마을 고립, 천생산 이용객 불편, 구평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문제가 예상된 무지개마을의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중재로 해결이 가능하게 됐다.

구미시를 지나는 국도33호선 구포~덕산1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구평동 무지개마을 앞 구평 IC 일부 구간이 성토화 되면 기존마을진입로가 통로 박스로 변경되면서 마을이 고립되도록 계획돼 있었다.

또 매년 수만 여명이 다녀가는 천생산 공원 이용객의 불편과 구평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에 위험 우려가 있어 지역주민들이 구미시와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대책 마련을 여러차례 요구했다.

구미시는 구평IC 성토구간에 대한 피해 대책마련을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 의견을 반영 하려고 노력했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추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민원해결에 어렵게 겪고있었다.

이에 구미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수차례 현장조사와 실무협의를 통해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 지난 17일 오후 지역주민과 구미시 최종원 부시장, 국민권익위원회 신영기 상임위원, 손태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이 참여해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 중재안을 합의했다.

중재안 내용은 무지개마을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당 초 설계에 따라 설치 예정이었던 성토구간(125m)을 교량으로 변경 공사완료 예정일 2017년 9월17일 전까지 시공하기로 했다.

또한 구미시는 천생산 공원 진입로가 종전대로 유지되면 교통수요 및 주변여건 등을 감안 보도설치 등 도로시설을 정비·보완하고 성토구간 교량화 등에 관련한 업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하철민기자 hachm@kyongbuk.co.kr

경주 건천송전선로 지중화

민원번호 : 2AA-1401-166793(교통도로민원과)

▶ 민원 개요

천년고도 관문에 30m 높이의 송전탑이 설치될 경우 관광도시 경주의 이미지가 저하되고 주변 토지 지가 하락도 예상되니 울산~신경주 복선전철건설공사로 설치되는 경북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일원의 공중 송전선로를 지중화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건천송전선로 2,260m 중 공중으로 건설되는 260m 구간을 지중화하기로 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주민숙원 해결과 함께 울산~신경주 복선전철공사의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짐

*환경민원, 집단민원(719명), NIMBY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조○○ 외 718명
- 피신청인 : 한국철도시설공단
- 관련기관 : 경주시,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송유관공사

2) 민원주요내용

- 울산~신경주 복선전철건설공사로 설치되는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일원의 송전선로 지중화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예산확보 및 실질적 피해 확인 곤란
- 적기 준공('14. 12.) 불가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관광도시 경주의 이미지 저하 및 주변 토지 지가 하락이 예상되니 지중화 요구
- (한국철도시설공단) 예산확보 및 적기 준공('14. 12.)을 위해 지중화 불가
- (관련기관) : 시민들의 고충해소 및 경주의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송전선로 지중화 필요

2) 민원특성 : 환경민원, 집단민원, NIMBY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조정 · 중재안 마련
- '14. 2. 5. : 실지방문조사 및 피신청기관 협의
- '14. 2. 10.~2. 14. : 관계기관 협의(경주시,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송유관공사)

2) 갈등해결수단 : 이해 · 설득

5. 조정 결과

-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천송전선로 2,260m 중 공중으로 건설되는 260m 구간을 지중화 및 지중화 공사시 송유관 등 지장물과의 충분한 이격거리(3.0m 이상)를 확보하는 등 울산~신경주 복선전철건설공사 설계 변경
- (경주시,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송유관공사) 양성자 가속센터 부지 내 공사용 진입로 개설 및 경부고속도로 하부 굴착공사 관련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사항 적극 협조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주민 공사 반대로 울산~신경주 복선전철건설 공사 추진에 어려움 발생 • 울산~신경주 복선전철건설공사 원활한 추진	• 지속적인 갈등으로 울산~신경주 복선전철 건설공사 적기 준공에 어려움 발생 • 울산~신경주 복선전철건설공사 적기 준공

2) 시사점

- 민원 해결로 신경주~포항 복선전철건설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는 계기 마련

북영천역 인근 통로암거 신설 요구

민원번호 : 2BA-1312-155194(교통도로민원과)

▶ 민원 개요

경북 영천시 서부동은 과거 북영천역사와 한성유치원 사이 과거 철도건널목을 통해 경작을 위한 출입이 가능하였으나, 북영천역사 신설과 경지정리로 인하여 진출입로가 단절되어 통행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을 겪고있으니 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건설사업 시 서부동에서 송정들로 통행을 위한 통로암거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되면 너비 4.5m 및 높이 4.5m 크기의 통로암거를 설치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여 집단민원을 해결함

*안전민원, 생활불편민원, 집단민원(9,507명)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정○○ 외 9,506명
- 피신청인 : 한국철도시설공단
- 관계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장(관계기관1), 영천경찰서장(관계기관2)

2) 민원주요내용

-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시 서부동에서 송정들로 통행을 위한 통로암거 개설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및 갈등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서부동에서 송정들로 통하는 진출입로는 1990년 경 북영천역사 신설과 송정들 경지 정리로 인하여 철도건널목을 통한 진출입로가 단절되어 23여 년간 불편함을 겪었으므로 통로암거 신설 필요
- (한국철도시설공단) 서부동 송정들 구간은 이미 경작을 위한 통로암거(6.0×4.5)가 설치될 계획이고, 예산 확보가 곤란하여 추가 설치는 불가
- (영천시장) 부동 마을 주민들이 경작을 위해 국도를 이용하는 통행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서부동 마을에서 송정들로 통하는 통로암거의 신설 필요

- (영천경찰서장) 서부동 마을에서 송정들로 통하는 현재의 진출입로는 국도를 이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영천시가 상호협조하여 통로암거 및 도로 신설 필요

2) 민원특성 : 안전 · 생활불편 민원, 집단민원

3.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해 조정 · 중재안 도출
- 자료수집 및 의견수렴('13. 12. ~ '14. 2. 5.), 현장조사('14. 2. 6.), 관계기관 협의('14. 2. ~ 3.)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 · 설득

4. 조정 결과

-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되면 중앙선(본선) 342km460.00 지점에 통로암거를 사업완료 전까지 설치
- (영천시) 통로암거 추가 설치에 대한 설치 타당성과 위치 등을 검토하여 피신청인에게 요청,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이 민원 통로암거를 설치하기로 한 경우 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통로암거를 중심으로 사업구역 밖 양방향으로 진출입 도로(4.5m이상)를 신설
- (영천경찰서) 통로암거 및 교통시설물설치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협조

5.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중단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 • 통로암거 미설에 따른 서부동마을 주민들의 통행불편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 내재	•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정해진 시기에 완료될 수 있는 단초 제공 • 통로암거 설치의 단초 마련으로 서부동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 해소

2) 시사점

- 통로암거의 신설방안 마련을 통해 대구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정해진 시기에 완료 될 수 있는 단초 제공 및 서부동마을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
- 서부동 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통행 불편이 해소되고, 자칫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었던 구간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끌어냄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 대구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조정 · 합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처(기획재정부) 등의 총사업비 조정절차 등을 거쳐 '16. 12.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

종합뉴스 NEWSis. () 국내 최대
인명 뉴스통신
2007-0211

국민권익위, 영천 서부동 마을 진출입 민원해결

【영천=뉴스is】김재원 기자 = 20여년간 마을 진출입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경북 영천시 서부동 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소될 전망이다.

6일 오후 경북 영천시 서부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권익위 조정위원회에서 영천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화릉동 통로박스 신설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지난 1990년 중앙선과 북영천역 신설 이후 24년간 약 1.8km를 돌아다니는 불편을 겪어왔던 주민들은 대구선 복선전철사업이 시행되면서 통로박스 신설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영천시도 2011년부터 철도시설공단에 통로박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수차례 걸친 실무 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국민권익위에 영천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이번에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철도시설공단은 통로박스 신설에 합의하고 총사업비 변경 신청 후 시공하며 영천시와 영천경찰서는 통로박스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 수립 및 연결도로 개설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현장조정회의는 이태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장과 김종수 영천시 부시장, 김현식 영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영기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이 주재했다.

jwkim@newsis.com

영남일보
The Yeongnam Ilbo

영천 서부동 진입로 23년만에 뚫었다

90년 驛舍 신설·경지정리로 단절...1만명 집단 민원
권익위 중재...철도시설공 너비 4.5m 통로 만들기로

【영천】 23년간 마을 통행에 불편을 겪어온 영천시 서부동 주민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소됐다.

6일 권익위에 따르면 영천시 서부동 주민은 오래전부터 농사를 짓기 위해 통행하던 길이 1990년 영천역사 신설과 송정들 경지 정리로 단절

되자 북쪽으로 800m 떨어진 철도건설목을 이용했다. 여기서 최근 대구선 복선전철화 건설사업으로 철도건설목에 터널 형식의 통로(암거)마저 설치돼 교통사고 위험까지 높아졌다.

이 때문에 주민은 마을 진출입에 불편이 크다며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영천시, 영천경찰서 모두 통로 신설의 필요성에는 찬성했으나 예산 확보 문제로 주민과 마찰을 빚었다.

지난해 12월 주민 1만명의 집단민원을 받은 권익위는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해당 기관의 입장을 조율했으며, 6일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민원을 해결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정부와 협의해 사업비를 추가해 마을에 직선으로 들어가는 너비 4.5m, 높이 4.5m의 통로

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영천시는 새 통로에 맞춰 진출입 도로를 건설하기로 했으며, 영천경찰서는 교통시설물 설치에 협조하기로 했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신영기 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서부동 마을 주민의 통행 불편이 해소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있었던 구간이 개선돼, 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시용기자 ys@yeonam.com

영천시, 철도시설공단과 '화룡동 통로박스 신설' 합의

6일 권익위 조정회의에서 '최종설치결정'

(아시아뉴스통신=은윤수)



6일 오후 2시 경북 영천시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국민권익위 조정위원회 '화룡동 통로박스 신설'에 대해 최종 조정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영천시청)

경북 영천시(시장 김영석)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6일 오후 2시 열린 국민권익위 조정위원회에서 '화룡동 통로박스 신설'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과 북영천역 신설이후 약 1.8km를 돌아서 다니는 불편을 겪어야 했던 지역주민들은 대구선 복선전철사업이 시행되면서 통로박스 신설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영천시는 지난 2011년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통로박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협조 요청했고 수차례 걸쳐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국민권익위에 영천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권익위 조정합의안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통로박스 신설에 합의하고 총사업비 변경 신청 후 시공하며 영천시와 영천경찰서는 통로박스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 수립 및 연결도로 개설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김영석 시장은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조정합의를 통해 영천시민의 고충이 원만히 해결되고 대구선 복선전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모든 관계자 및 시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경주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성토부 교량화

민원번호 : 2CA-1310-268146, 2BA-1312-183628(교통도로민원과)

▶ 민원 개요

경북 경주시 내남면(이하 '이 민원 마을'이라 한다) 주변으로 경부고속도로(H=3.5m), 경부고속철도(H=10m), 국도35호선(H=7.5m) 및 울산-포항간 복선전철(H=16m) 등 많은 국가기간교통망이 경주국립공원(남산) 등을 피해 통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이 민원 마을 앞 농경지에 고성토로 건설될 경우 이 민원 마을은 고성토의 국가기간교통망으로 둘러싸이게 되어 고립화될 뿐만 아니라 경관훼손·조망권 상실 등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생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은 물론 바람길 차단으로 농경피해가 예상되니 성토 구간 860m를 교량으로 변경·시공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일부 구간(약 380m)를 교량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여 집단민원을 해결함

*집단민원(1,112명), 환경민원, NIMBY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최○○ 외 1,111명 (13. 10. 25 접수)
- 피신청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민원주요내용

- 경주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마을 앞 성토(H=15.7m)로 인해 경주시 내남면의 경관훼손과 고립 및 통풍 부족에 따른 영농피해가 예상되니 성토구간(L=860m)을 교량으로 시공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예산확보 곤란
- 조망권과 일조권 및 통풍장해 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유무 등

3. 갈등 분석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이 민원 도로는 마을 중앙과 약 400m, 주택과 최인접거리가 약 250m로 조망권과 일조권 및 통풍장애 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농로마다 통로암거를 설치할 계획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 곤란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조정 · 중재안 마련
- '13. 12. - '14. 4 : 현지조사 및 관계기관 회의 개최 (5회) 및 관계기관 협의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 · 설득

5. 조정 결과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이 민원 마을의 고립방지, 개방감 및 바람길 확보, 홍수피해 방지와 STA.9+450 지점에 위치한 농로의 존치를 위해 형산강교 교대에서 위 농로까지의 구간 약 380m를 교량으로 변경 시공

※ 공사비 약 120억 원 소요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주민 공사 반대로 공사 추진에 어려움 발생 • 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 원활한 추진	• 시공사 경영 정상화

2) 시사점

- 4년여 간 중단되었던 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가 재개 되어 적기에 완공할 수 있게 되었고, 공사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건설회사도 한 시름 놓게 되었으며, 주민들 또한 기존 설계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계기 마련

건설경제

2014년 04월 29일 (화)
온라인

권익위, 경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4년 만에 공사 재개

권익위, 경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4년 만에 공사 재개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을 지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가 4년만에 재개된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마을 앞 '죽' 형태의 도로 건설을 두고 주민들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4년간 갈등을 빚어온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주시 내남면은 동쪽은 16m 높이의 울산~포항복선전철도로 남쪽은 3.5m 높이의 경부고속도로, 북쪽은 7.5m 높이의 국도35호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이다. 서쪽이 유일하게 뚫려 있지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로 15.7m 높이의 독이 설치되면 이마저도 막힌다며 독 대신 교량식으로 도로 건설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해 왔었다.

반면 부산국토청은 도로와 마을 중앙까지 거리가 400m나 되며, 가장 가까운 주택도 250m 가량 떨어져 있다며 마을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에 권익위는 △부산국토청은 내남면 앞에 독 형태로 계획된 860m 도로 중 농경지 중앙에 있는 농로까지(약 350m)를 교량으로 변경하고 △주민들은 기존교량에서 50m에 이르는 부분은 현장여건상 독 형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받아들여 더 이상의 이익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점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성보 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4년여 간 중단됐던 공사가 재개돼 공사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건설회사도 한 시름 놓게 됐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공사가 완료돼 경주시민들의 교통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택지개발 사업 관련 교차로 개선

민원번호 : 2BA-1311-214083(교통도로민원과)

▶ 민원 개요

○○택지개발으로 신설하는 광역도로와 종전의 시도를 연결하는 도로의 회전 반경이 확보되지 않아 우회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니 불합리한 교차로 구조 개선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일부 구간의 현행 왕복 3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개선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여 집단민원을 해결함

*집단민원(601명), 안전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이○○ 외 600명
- 피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관련기관 : 경기도 김포시장

2) 민원주요내용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김포한강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신설하는 양곡-운양간 광역도로(대로2-6)와 종전의 시도10호선을 연결하는 연결도로(소로1-102)의 회전반경이 확보되지 않아 우회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니 불합리한 교차로 구조 개선 요구
- 신설 대로로 인해 기존의 시도 10호선이 이면도로로 밀려 상가침체가 예상되니 대로상의 현행 4거리를 기존 시도10호선과 연결하는 5거리로 변경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교차로 구조 개선의 타당성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한강신도시와 양곡-운양 도로 교통체계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반영된 사항으로 현행 4거리 체계인 교차로에 시도10호선을 접속할 경우 5거리

교차로가 형성되어 직접 접속은 불가. 시도 10호선과의 연결도로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교차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

- (김포시장) 신호등, 안전시설 보완 등으로 교차로 환경개선을 위해 피신청인과 적극 협의 추진하고, 시도10호선 주변 상가 활성화를 위한 검토 필요

2) 민원특성 : 안전민원, 집단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 등 조정 · 중재안 마련
- 현장 및 자료 조사를 통해 본 민원 발생 원인 분석(피신청인 모두에게 책임 있음)

2) 갈등해결수단 : 갈등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해결 중심의 대안 도출

5. 조정 결과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로와 시도를 연결하는 소로 30m 구간의 현행 왕복 3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 · 개선하고, 시도 주변 상가 안내 간판 초기 설치비용을 제공
- (김포시장) 신청인들과 협의하여 상가 안내간판을 설치 · 관리하고, 시도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로 확보 등을 검토 · 추진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연결도로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 위험 구간 상존	• 교차로 구조 개선으로 사고 위험 해소

2) 시사점

- 교차로 구간의 교통안전과 상권활성화의 기반조성 등 집단 민원 해소를 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주요 국책사업을 원활하고 차질 없이 진행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민 · 관이 상호 이득을 얻는 효과를 거둠



2014년 05월 13일 (화)
경제

김포신도시 신설·기존 도로 접속 갈등 1년만에 해결

김포신도시 신설·기존 도로 접속 갈등 1년만에 해결

(김포=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경기도 김포신도시의 신설 광역도로(왕복 6차로)와 기존 도로(왕복 2차로)를 연결하는 접속 도로 문제를 둘러싼 주민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1년만에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13일 오후 청사에서 주민 대표, 문연호 김포부시장, 정석래 LH 김포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재회의를 개최, 주민과 LH 사이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김포시 장기동 신도시내 왕복 3차로(한쪽은 2차로, 다른 쪽은 1차로)인 접속도로를 왕복 4차로로 확장해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고, LH가 주변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해 안내 간판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돼있다.

주민들은 신도시 개발사업과 안내간판·접속도로 개선사업 등에 협력하고, 김포시는 기존 도로에 보행 도로를 건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5월 이 마을 주민 600여명은 LH에 접속도로 구간이 좁아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기존 도로가 이면도로로 밀려나 상권이 침체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반면 LH 측은 광역도로는 교통영향분석에 근거해 개설했고, 연결도로도 도로 설계 기준에 맞춰 시공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민원 중재 신청을 냈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중재안이 주민의 안전한 통행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rika@yna.co.kr

경기신문

2014년 05월 14일 (수)
경기08면

김포신도시 장기동 접속도로 갈등 풀려

주민·LH간 분쟁... 권익위, 중재회의 개최
도로 확장·상권 활성화 방안 등 합의안 도출

김포신도시의 신설 광역도로(왕복 6차로)와 기존 도로(왕복 2차로)를 연결하는 접속 도로 문제를 둘러싼 주민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1년 만에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13일 청사에서 주

민 대표, 문연호 김포부시장, 정석래 LH 김포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재회의를 열고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김포시 장기동 신도시내 왕복 3차로인 접속도로를 왕복 4차로로 확장해 차량 소통을 원활

히 하고, LH가 주변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해 안내 간판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주민들은 신도시 개발사업과 안내간판·접속도로 개선사업 등에 협력하고, 김포시는 기존 도로에 보행 도로를 건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5월 이 마을 주민 600여명은 LH에 접속도로 구간이 좁아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기존 도로가 이면도로로 밀려나 상

권이 침체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LH 측은 광역도로는 교통영향 분석에 근거해 개설했고, 연결도로도 도로 설계 기준에 맞춰 시공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민원 중재 신청을 냈다.

권익위 관계자는 "중재안이 주민의 안전한 통행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포=김용권기자 ykk@

태안 신덕마을 통로암거 설치

민원번호 : 2BA-1403-184406(교통도로민원과)

▶ 민원 개요

충남 태안군 소원면 신덕2리 마을 한가운데에 국도32호선 만리포-태안 도로건설공사로 신설되는 도로가 7m 높이의 성토로 건설될 예정이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이용하던 기존 농로가 폐쇄될 경우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크므로 마을 주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신덕마을 인근(STA.7+620 지점)에 통로 암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해당 지점에 4.0m×4.0m 규격의 통로 암거를 설치하기로 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여 집단민원을 해결함

*집단민원(57명), 안전민원, 생활불편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가○○ 외 56명
- 피신청인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 민원주요내용

- 국도32호선 만리포~태안 도로건설공사로 인해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신덕마을이 양분됨은 물론, 기존 농로가 단절되니 STA.7+620 지점에 통로암거 설치 요구
- ※ 국도32호선 북쪽에 약 50여세대, 남쪽에 약 20여세대 거주, 주민 약 70%가 65세 이상의 고령자

2. 주요 쟁점사항

- 통로암거 추가설치의 필요성
- 주민 불편 여부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신설도로로 마을이 양분됨은 물론 기존 농로가 단절될 예정이고, 농로가 단절될 경우 최대 약 1.0km를 우회하는 불편과 교차로를 횡단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로암거 필요

- (피신청인) 마을 인근에 마을도로 및 농경지 진출입을 위한 부체도로와 교차로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므로 통로암거 추가 설치는 곤란

2) 민원 특성 : 안전 · 생활불편 민원, 집단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조정 · 중재안 마련
- '14. 4. 23. : 실지방문조사 및 피신청기관 협의

2) 갈등해결수단 : 이해 · 설득

5. 조정 결과

- 피신청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STA.7+620 지점에 4.0m×4.0m 규격의 통로암거 설치
- 신청인
 - 국도32호선 만리포~태안 도로건설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주민 공사 반대로 국도건설공사 추진에 어려움 발생 • 통로암거 추가 미설치시 주민통행불편 가중	• 국도건설공사 원활한 추진 •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2) 시사점

- 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주민안전 및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확보함

2014년 06월 13일 (금)
사회

국민권익위 태안 신덕마을 농로연결 민원 해결

국민권익위 태안 신덕마을 농로연결 민원 해결

(태안=연합뉴스) 유익주 기자 = 도로건설 공사로 인해 끊어질 처지였던 충남 태안군내 한 마을의 농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다시 이어지게 됐다.

13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태안군 소원면 신덕마을은 새로 건설되는 만리포-태안 간 국도 32호선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 50여가구, 남쪽에 20여가구 등 모두 70여가구 12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농촌마을이다.

도로 건설 주체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이 도로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존의 마을 농로를 없애고 대신에 국도변에 농기계와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작은 농로와 평면교차로 2개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주민들은 "농로와 교차로를 이용하게 되면 멀게는 1km나 돌아서 다녀야 하고, 고령자인 주민들이 농기계를 몰고 평면교차로를 다니는 것은 교통사고 위험도 크다"며 마을 중간에 굴다리를 만들어 줄 것을 주장해 왔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이 같은 요구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주민들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약과 현장조사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한 뒤 이날 오전 태안군 소원면사무소에서 지역 주민들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 시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국민권익위의 합의안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공사를 마치기 전까지 신덕마을 가운데에 폭 4m, 높이 4m의 굴다리를 설치해 주민과 농기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권태성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은 "오늘 조정으로 둘로 갈라질 뻔한 마을과 농경지가 다시 연결되고, 새로 신설되는 굴다리로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기계를 이동할 수 있게 됐다"며 "마을 주민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원주-강릉 복선철도사업 통로암거 위치변경 요구

민원번호 : 2BA-1401-289540(교통도로민원과)

▶ 민원 개요

강원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마을은 약 178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북쪽에 농경지가 있는 경작 지대이나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으로 설치예정인 통로암거(5.0×4.5)가 기존 농로와 곡선으로 연결되어 마을과 농경지의 통행에 있어 시야 확보가 곤란하여 교통사고와 겨울철 결빙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통로암거와 농로가 직선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암거의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 이 사업 완료 전까지 통로암거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집단민원을 해결함

*집단민원(82명), 안전민원, 생활불편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김○○ 외 81명
- 피신청인 : 한국철도시설공단(피신청인)
- 관계기관 : 강원도 평창군수

2) 민원주요내용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으로 설치예정인 통로암거(5.0×4.5)와 기존 농로가 직선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암거의 위치 변경을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통로암거 위치 변경시 매몰비용 발생 여부 및 현재 통로암거의 위험성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송정리마을에서 농지로 통하는 진출입로가 굴곡으로 설치되면 평상시는 물론이고 겨울철 강설과 결빙에 따른 잦은 교통사고 위험 및 운전자의 시야 차단으로 위험하니, 통로암거 위치 변경 필요

- (한국철도시설공단) 통로암거의 위치 변경은 매몰비용 발생 등으로 불가
- (평창군수) 송정리 마을 주민들이 경작 등을 위해 신설되는 통로암거를 곡선으로 설치시 통행에 따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므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주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로암거의 위치변경 검토 등을 통한 개선이 필요

2) 민원특성 : 집단민원, 안전 및 생활불편 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자료수집 및 의견수렴(14. 1.~14. 6. 13.), 현장 조사(4. 16.), 출석조사(5. 30.), 관계기관 협의(14. 4.~14. 6.)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 민원 사업 구간에 포함된 서원기 (현) 79km200 지점 토공구간에 이 민원 사업 완료 전까지 이 민원 통로암거를 기존에서 위치를 지점(6m수평이동)으로 변경하여 신설
- (평창군수) 이 민원 사업 구간에 포함된 서원기 (현) 79km200 지점 토공구간에 통로암거 (5.0×4.5)가 위치 변경(6.0m 수평이동)될 경우 사업구역 밖의 농로와 연결되는 부분을 통로암거와 직선으로 개설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중단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 • 통로암거 미설에 따른 송정리 마을 주민들의 통행불편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 내재	•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정해진 시기에 완료될 수 있는 단초 제공 • 통로암거 설치의 단초 마련으로 송정리 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 해소

2) 시사점

- 4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강원도 평창군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오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 마련

-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송정리 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통행 불편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끌어냄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 ※ 원주~강릉간 고속전철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통로암거의 설치 위치에 대한 설계변경 등을 거쳐 '17. 12.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

국방도훈민원

경찰민원

산업환경민원

도시수자원민원

교통도훈민원

고충민원 특별조사팀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굽은 농로' 민원 현장 방문한 권익위



(서울=연합뉴스)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오른쪽 셋째)이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의 곡선 형태 농로와 굴다리 때문에 발생한 교통불편 민원 현장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2014.6.18 << 권익위 제공 >>

photo@yna.co.kr

(끝)/사진부공용



권익위, 원주~강릉간 철도구간내 굴다리 민원 해결



(평창=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권태성 상임위원(오른쪽 두 번째)이 18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주민센터에서 진부면 송정리의 곡선 형태 농로와 굴다리 때문에 발생한 교통불편 민원을 중재한 가운데 관계기관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4.6.18 <<지방기사 참고, 국민권익위 제공>>

jlee@yna.co.kr

(끝)/이재현



권익위, 원주~강릉 간 철도구간내 굴다리 불편 해결



국민권익위원회 권태성 상임위원(오른쪽 세번째)이 18일 오후 강원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의 곡선 형태 농로와 굴다리때문에 발생한 교통불편 민원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제공=권익위) 2014.6.18/뉴스1 © News1 윤창완 기자

사고 위험 큰 '굽은 굴다리', 농로 반듯하게 새로 만들기로

(평창=뉴스1) 윤창완 기자 = 2018년 동계올림픽과 지역개발 등을 위해 건설되고 있는 원주~강릉 간 복선철도사업 구간에 포함된 강원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지역의 굽은 농로와 굴다리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의 중재로 새로 만들어진다.

권익위는 18일 오후 평창 진부면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권태성 권익위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김영하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장과 노재수 평창부군수, 마을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중재안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회의를 통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사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지금의 굴다리를 6m 옆으로 옮겨 새로 만들어주고, 굴다리 바깥쪽 모서리도 정리해 차량이 대기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평창군은 위치가 바뀌는 굴다리에 맞춰 농로를 반듯하게 직선으로 개설·연결해주기로 했다.

이 굽은 농로와 굴다리 때문에 지나가는 운전자들은 시야확보가 어렵고, 특히 겨울철에는 바닥까지 얼어붙으면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크게 우려되는 실정이었다.

이에 주민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경부선 구미 상미구교 확장

민원번호 : 2AA-1405-303968(교통도로민원과)

▶ 민원 개요

경부선 구미~약목간 283km700 지점에 설치된 상미구교는 1934년에 설치되어 노후화된 아치구조의 통로박스로 대형차량의 통행이 불가하고 소형차의 통행도 불편하니 상미구교를 상사서로(도시계획도로, 폭 20m)와 같은 규모로 확장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상미구교를 도로 폭 20m 이상으로 확장하고 구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그 부담을 나누어지는 조정안을 통해 집단민원을 해결함

*집단민원, 생활불편 민원, 장기 숙원 해결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구미시 상모사곡동 발전협의회 외 7개 단체 대표 이○○
- 피신청인 : 경상북도 구미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2) 민원주요내용

- 상미구교를 도로 폭 20m 이상으로 확장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통행량 고려시 상미구교 확장의 필요성
- 확장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여부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구미시장) 상모사곡동 마을뿐만 아니라 구미시의 교통불편 해소 및 상습 정체지역 해소를 위해 상미구교 확장은 필요하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구간에 설치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확장비용을 분담할 경우, 확장 가능
- (한국철도시설공단) 상미구교는 경상북도 구미시장이 공사비 일부를 분담할 경우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8조에 의해 왕복2차로로 개량 및 확장이 가능하나,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맞추어 개설할 경우에는 구미시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함

2) 민원특성 : 생활불편 민원, 집단민원, 장기 숙원 해결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 등 조정 · 중재안 마련
- '14. 6. 3. : 현지조사 및 관계기관 회의 개최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 · 설득

5. 조정 결과

- 경상북도 구미시장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상미구교를 2017년 말까지 도시계획도로 폭 20m 이상으로 확장
 - 경상북도 구미시장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비용을 분담하여야 할 상미구교 확장공사의 사업범위는 철도를 횡단하는 통로박스로 하고, 경상북도 구미시장이 25%, 한국철도시설공단이 75%를 분담
 - 통로박스 상부 철도시설물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통로박스 및 도로 등 시설물은 경상북도 구미시장이 관리
- ※ 공사비 약 80억 원 소요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구미시 주민 통행 불편 • 도시 내 연결 단절로 상미구교동 발전 저해	• 주민 통행 불편 해소 • 상미구교동 균형발전 가능

2) 시사점

- 각 기관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대안 마련으로 해결
- 구미시 상미구교동 균형발전 가능성 마련

MBC

2014년 06월 25일 (수)
방송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구미 고충민원 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구미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자들과 함께경부선 구미 상모구교 현장을 방문한 뒤
구미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구미-약목간 상미구교 확장공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미 상모사곡동 주민들은 그동안
구미시와 철도공단 등을 상대로
노후화된 상미구교 확장공사를 요구했지만,
해당 기관들이 예산 집행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여왔습니다.

확장공사는
연장 40미터, 폭 20미터 4차로로 설치되며,
사업비 80억원 가운데 공단이 75%,
구미시가 25%를 부담해
오는 2017년 말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국방국회위원회

경찰위원회

산업노동위원회

도시수자원위원회

교통위원회

고충민원특별조사팀

갈계마을 부체도로 신설 요구

민원번호 : 2BA-1402-200282(교통도로민원과)

▶ 민원 개요

전북 남원시 아영면 갈계리 갈계마을 주민들은 1980년대 88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지난 30년간 고속도로 하부의 좁은 통로암거를 통하여 마을 건너편에 위치한 농지 약 3만평을 경작하는 불편을 겪어 오던 중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고속국도 제12호선 담양~함양간 확장공사에 따라 신설된 통로암거가 확장 설치되었으나 이와 연결된 기존의 농로 폭이 좁아 대형 농기계 등의 진출입이 곤란하니 대형 농기계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부체도로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전라북도 남원시장이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부체도로를 신설하도록 조정·중재하여 30여년 만에 주민 숙원을 해결함

*집단민원(216명), 생활불편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박○○ 외 215명
- 피신청인 : 한국도로공사(피신청인1), 전라북도 남원시장(피신청인2)

2) 민원주요내용

- 대형 농기계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부체도로 신설을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및 갈등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한국도로공사) 기존 통로암거를 확대하여 이 민원 통로암거와 연결되는 부체도로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어 추가 부체도로 신설은 불가하고, 고속도로 구역과 최대 68m가량이 이격된 이 민원 마을도로에 대한 신설 또는 개량은 이 민원 공사의 사업구역 밖으로 남원시장이 예산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
- (남원시장) 이 민원 마을 주민들의 원활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은 사업구역 내 부체도로를 신설하는 것이므로 이 민원 공사의 시행청인 한국도로 공사에서 신설하는 것이 타당

2) 민원특성 : 생활불편 민원, 집단민원

3.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자료수집 및 의견수렴('14. 2.~'14. 2. 23.), 현장 조사('14. 4. 24.), 관계기관 협의('14. 2.~'14. 5.)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4. 조정 결과

- (한국도로공사) 남원시가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도로부지가 확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체도로의 신설을 위한 공사를 시행하고, 부체도로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
- (남원시장) 군도 29호선과 신설 통로암거와 연결되는 마을 반대편 외곽으로 폭 약 4.5m이상의 부체도로 신설을 위한 용지보상 예산을 확보하여 2015. 6. 30.까지 부체도로 부지를 확보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고속도로 건설사업 중단 등 사업이 장기간 표류 • 통로암거와 연결되는 부체도로가 없어 통행 불편과 사고 발생 위험 내재	• 담양~성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의 정해진 시기에 완료 될 수 있는 단초 제공 • 부체도로 신설로 갈계마을 주민들이 30여 년간 겪었던 생활불편 해소

2) 시사점

- 4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30년 이상 지속되어온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 마련
- 담양~성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갈계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됨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新亞日報

2014년 07월 07일 (월)

‘88고속도로 부체도로 설치’ 해결방안 마련

국민권익위, 남원 아영면서 현장고충민원 조정회의

국민권익위원회는 남원시 아영면서 현장고충민원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4일 남원시 아영면사무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권태성 상임위원, 남원시 박형규 부시장, 한국도로공사 담양함양건설사업단 이학구 단장, 갈계마을 주민대표 박남중 이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8고속도로 부체도로 설치’에 대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갈계마을 주민들은 88고속도로에 따라 농경지가 단절돼 통

행과 영농에 어려움이 있어 고속도로 확장 시 농경지와 연결되는 부체도로 개설을 염원해 왔고, 이번 현장조정회의를 거쳐 해결방안이 비로소 마련됐다. 이번 조정을 통해 남원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상호 협력하는 계기가 됐으며, 향후 88고속도로 관련 민원해결에 좋은 선례가 됐다.

박형규 부시장은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 등 각종 민원 중에 고충민원은 많은 기관이 관련돼 좀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 관련기관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중재해 줌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갈계마을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조정을 통해 양측은 신설 통로박스에 연결되는 부체도로에 대한 토지매입 및 개설에 대해 합의했으며, 88고속도로 확장이 조속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는데 상호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남원/송정섭 기자
swp2072@hanmail.net

전민일보

2014년 07월 07일 (월)

남원 갈계마을 통행불편 숙원 풀린다

권익위 현장조정회의 개최

부체도로 개설 등 상호 합의

농경지 단절 따른 고충 해소

남원시 아영면사무소 회의실에서 4일 국민권익위원회 권태성 상임위원, 남원시 박형규 부시장, 한국도로공사 담양함양건설사업단 이학구 단장, 갈계마을 주민대표 박남중 이장 등 20여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88고속도로 부체도로 설치에 대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갈계마을 주민들은 88고속도로에 의해 농경지가 단절되어 통행과 영



4일 남원시 아영면사무소에서 88고속도로 부체도로 설치에 대한 현장조정회의가 열렸다.

농에 어려움이 있어 고속도로 확장 시 농경지와 연결되는 부체도로 개설을 염원해 왔고, 이번 현장조정회의를 거쳐 해결 방안이 비로소 마련됐다. 이번 조정을 통해 남원시와 한국

도로공사가 상호 협력하는 계기가 됐으며, 향후 88고속도로 관련 민원 해결에 좋은 선례가 되었다.

박형규 부시장은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 등 각종 민원 중에 고충민원은 많은 기관이 관련돼 좀처럼 해결하기 어려운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 관련기관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줌에 감사하다는 말과 앞으로 갈계마을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조정을 통해 양측은 신설 통로박스에 연결되는 부체도로에 대한 토지매입 및 개설에 대해서 합의 했으며, 88고속도로 확장이 조속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는데 상호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남원=최철철기자

내외일보

2014년 07월 07일 (월)

남원 아영 갈계마을

고충민원 해결방안 마련

국민권익총, 현장조정회의

남원시 아영면사무소 회의실에서는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 권태성 상임위원, 남원시 박형규 부시장, 한국도로공사 담양함양건설사업단 이학구 단장, 갈계마을 주민대표 박남종 이장 등 20여명의 내빈을 모시고 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88고속도로 부체도로 설치에 대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갈계마을 주민들은 88고속도로에 의해 농경지가 단절돼 통행과 영농에 어려움이 있어 고속도로 확장 시 농경지와 연결되는 부체도로 개설을 염원해 왔다.

또한, 이번 현장조정회의를 거쳐 해결 방안이 비로소 마련됐다.

이번 조정을 통해 남원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상호 협력하는 계기가 됐으며, 향후 88고속도로 관련 민원해결에 좋은 선례가 됐다.

한편, 박형규 부시장은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 등 각종 민원 중에 고충민원은 많은 기관이 관련돼 좀처럼 해결하기 어려운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 관련기관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줌에 감사하다는 말과 앞으로 갈계마을 발전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현장조정을 통해 양측은 신설 통로박스에 연결되는 부체도로에 대한 토지매입 및 개설에 대해 합의 했다.

또한, 양측은 88고속도로 확장이 조속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는 데 상호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남원/류재오 기자
rjo@naewoeilbo.com

전주매일

2014년 07월 07일 (월)

남원 아영면, 고속도 부체도로 조정회의

지난 4일 남원시 아영면사무소 회의실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태성 상임위원, 남원시 박형규 부시장, 한국도로공사 담양함양건설사업단 이학구 단장, 갈계마을 주민대표 박남종 이장 등 20여명의 내빈을 모시고 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88고속도로 부체도로 설치에 대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갈계마을 주민들은 88고속도로에 의해 농경지가 단절되어 통행과 영농에 어려움이 있어 고속도로 확장시 농경지와 연결되는 부체도로 개설을 염원해 왔고, 이번 현장조정회의를 거쳐 해결 방안이 비로소 마련되었다.

이번 조정을 통해 남원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상호 협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88고속도로 관련 민원해결에 좋은 선례가 되었다. 박형규 부시장은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 등 각종 민원 중에 고충민원은 많은 기관이 관련돼 좀처럼 해결하기 어려운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관련기관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줌에 감사하다는 말과 앞으로 갈계마을 발전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날 현장조정을 통해 양측은 신설 통로박스에 연결되는 부체도로에 대한 토지매입 및 개설에 대하여 합의 하였으며, 88고속도로 확장이 조속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는 데 상호 협조할 것을 다짐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상남도

산청군

도시수자원관리

전통문화

고령시

○○고속도로 통행불편으로 인한 영농피해구제

민원번호 : 2BA-1404-091670(교통도로민원과)

▶ 민원개요

1970년에 개통한 고속도로의 통로가 협소하여 농기계진출입이 불가하여 영농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으니 확장·개선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농경지 진입 부체도로를 개설하고 정읍시장에게 관리권을 이관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여 40년 이상의 오래된 주민숙원을 해결함

*집단민원(69명), 생활불편 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김○○ 외 68명
- 피신청인 : 한국도로공사(전북본부)
- 관련기관 : 전라북도 정읍시장

2) 민원주요내용

-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전북 정읍시 태인면 소재 호남고속도로 순천기점 144.42Km 지점과 144.82Km 지점에 위치한 2개의 통로박스가 2.5×3m 규모로 협소하여 확장을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통행로 확대 및 대체도로개설 여부
- (현장여건)
 - 기존 통로암거에 대한 높이 부족으로 대형농기계 통과 불가
 ※ 영농현황 : 20가구, 3.3ha (전 9,460㎡, 답 22,240㎡, 과수원 1,375㎡)
 - 해당구간은 저성토구간으로 통로박스를 확장할 경우 현재의 높이보다 2m이상 낮아져, 이용에 불편이 예상됨
 - 대형 농기계는 증산교(라멘교)를 활용하여 우회하였으나, 사유지로 도로가 차단됨에 따라 현재 도로공사에서 임시도로(L=70m) 개설중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1970년 호남고속도로 개설 당시 최초 통로박스 설치 후 주변상황 변화에 따라 발생한 민원으로 별도의 호남고속도로 확장계획이 없기에 민원 통로박스 확장은 현실적으로 곤란

※ 1970년 호남고속도로 개설 당시 민원 통로박스를 설치하였고, 1986년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있었으나 민원 통로박스는 종전대로 존치

- (정읍시장) 대형 농기계 진입이 불가하여 기계화 영농의 어려운 실정 등에는 공감하나, 이는 고속도로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

2) 민원 특성: 생활불편 민원, 집단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 등 조정·중재안 마련
- 현장 및 자료 조사를 통해 본 민원 발생 원인 분석(피신청인 모두에게 책임 있음)
-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대체도로를 개설하기로 결정

2) 갈등해결수단: 갈등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해결 중심의 대안 도출

5. 조정 결과

- (한국도로공사)
 - 2015. 6.까지 농경지 진입 부체도로 개설(연장 1.1Km, 폭 5m)
 - 부체도로 개설 후 정읍시장에게 관리권을 이관
 - 향후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시 민원 통로박스 확장·개선
- (전라북도 정읍시장)
 - 부체도로 인수 시 용지비용을 도로공사와 사후 정산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농기계 진입이 불가하여 영농에 제한	• 대체도로 마련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

2) 시사점

- 농촌의 환경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 당시의 도로시설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발생한 민원을 민·관이 협력하여 40년간 해묵은 집단 민원을 해결하여 주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음

전주일보

2014년 07월 14일 (월)
지역 10면

태인 점촌마을 40년 고충 해결

국민권익위 중재... 호남고속도로 통과박스·농로 등 합의

태인면 점촌마을에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시는 점촌마을 앞 호남고속도로 건설 당시에 비좁게 설치된 통과박스(2.3X3)를 통해 40여년 불편을 겪어온 마을 주민의 숙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협약을 통해 해결됐다고 11일 밝혔다.

태인면사무소에서 최영만 부시장과 권익위 권태성 상임위원, 박명득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이 참석해 현장 조정위원회를 열고 중재안에 대해 최종 합의하여 시와 권익위, 한국도로공사 간 사업추진에 따른 협약을 가졌다.

점촌마을 주민들은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20여 가구와 3.3ha의 농경지가 고속도로와 주변 산으로 둘러싸이게 되어 설치된 비좁은 통과박스(2.3X3)를 통해하며 큰 불편을 겪어왔다.

시에 따르면 주민들은 고령화되고, 농기계화가 되면서 대형 농기계 통행이 불편해지자 한국도로공사에 통과박스 확장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측은 호남고속도로 개선 계획이 없고, 통과박스 확장이 어렵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주민



40여년 간 불편을 겪어온 태인면 점촌마을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호남고속도로 통행불편에 따른 영농피해 구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협약을 맺었다.

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현장조사 등을 거쳐 관계기관의 입장을 중재해 왔다.

협약을 가진 한국도로공사는 호남고속도로와 인접한 교량(중산교)에서 농경지로 진입할 수 있는 농사용도로 1.1Km(폭5m)를 우선 개설하고,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개선사업이 있을 경우 지금의 좁은 통과박스를 대형 농기계 통행할 수 있도록 확장키로 했다.

또 시는 농사용 도로가 완료되면 도

로부지 매수비용 일부를 부담하고이를 인수하여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시 관계자는 "오늘 조정으로 점촌마을 주민들의 40여년 생활불편이 말끔히 해소되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된 지 오래된 고속도로나, 철도의 협소한 통과박스 확장 민원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음=하재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

산림농림환경민원

도시수자원민원

교통도로민원

고충민원 특별조사팀

전민일보

2014년 07월 14일 (월)
지역 09면

태인면 점촌마을 40여년 주민숙원 해결

고속도로 건설로 생긴 굴다리
농기계 진입·통행 불편 겪어정읍시-국민권익위-도로공사
농사용 도로 1.1Km 우선 개설정읍시 태인면 점촌마을 주민들의
40여년 숙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
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결됐다.점촌마을 주민들은 1970년 호남고
속도로가 건설되면서 20여 가구와
3.3ha의 농경지가 고속도로와 주변
산으로 둘러싸이게 됐다. 당시 설
치된 비좁은 굴다리(2.5m×3m)를
이용해 농사를 지으면서 큰 불편을
겪어왔다.그러던 중 주민들은 농촌인구가
점점 고령화되고 농사일도 점차 기계
화 되면서 한국도로공사에 대형 농
기계가 드나들 수 있도록 굴다리를확장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한국도
로공사 측은 고속도로 개선계획이
없어 굴다리 확장도 어렵다고 하자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60
명)을 제기했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주민들의 숙원
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지
난 11일 태인면사무소에서 마을주민
들과 박명득 한국도로공사 전북본
부장, 최영만 정읍시 부시장이 참석
한 가운데 관태성 국민권익위 상임
위원 주재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
으며, 사업 추진에 따른 협약식을
가졌다.합의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굴다리와 인접한 기존 교량(중산교)
에서 농경지로 진입할 수 있는 폭
5m의 농사용 도로 1.1Km를 우선 개
설하고, 앞으로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개선사업이 있을 경우 지금의 좁
은 굴다리를 대형 농기계가 통행할

지난 11일 태인면사무소에서 호남고속도로 병행차로에 따른 영농피해 구제현장 회의를 했다.

수 있도록 확장해 주기로 했다.

또, 정읍시는 농사용 도로가 완성
되면 도로부지 매수비용 일부를 부
담하고, 해당 도로를 시가 인수해
관리키 합의를 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점촌
마을 주민들의 40여년 생활불편이해소되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
된 지 오래된 고속도로나 철도의 협
소한 통과박스 확장 민원이 날로 증
가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
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영기자

전주매일

2014년 07월 14일 (월)
종합 02면정읍 태인면 점촌마을 40년 숙원
통행불편 국민권익위 중재로 해결1970년 마을 앞을 가로지르는 호남고
속도로 건설 당시에 비좁게 설치된 통과
박스와 농로로 인해 40여년 불편을 겪어
온 태인면 점촌마을 주민의 숙원이 국민
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점촌마을 주민들은 고속도로가 건설되
면서 20여 가구와 3.3ha의 농경지가 고
속도로와 주변 산으로 둘러싸이게 됐다
다. 당시 설치된 비좁은 통과박스(2.3×3)
를 이용해 농사를 지으면서 큰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던 중 마을주민들은 주민
들이 고령화되고, 농기계화가 이루어지
면서 대형 농기계 통행이 불편해지자 한
국도로공사에 통과박스 확장을 요구했
다.그러나 한국도로공사 측은 호남고속도
로 개선 계획이 없고, 통과박스 확장이
어렵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주민들은 지난 4월 국민권
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
쳐 관계기관의 입장을 중재해 왔다.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11일 태인면사
무소에서 최영만 부시장과 권익위 관태
성 상임위원, 박명득 한국도로공사 전북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위원
회를 열어 중재안에 대해 최종 합의를
끌어냈고, 시와 권익위, 한국도로공사
간 사업추진에 따른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합의안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호남고속도로와 인접한 교량(중산교)에
서 농경지로 진입할 수 있는 농사용 도
로 1.1Km(폭5m)를 우선 개설하고, 앞
으로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개선사업이 있
을 경우 지금의 좁은 통과박스를 대형
농기계가 통행할 수 있도록 확장기로 했
다. 또 시는 농사용 도로가 완료되면 도
로부지 매수비용 일부를 부담하고이를
인수하여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전북매일신문

2014년 07월 14일 (월)
지역 08면

태인면 점촌마을 호남고속도 비좁은 통과 박스 권익위 중재

40년 통행불편 뒤늦은 해결

정읍시-도공-권익위 협약
농경지 진입로 우선 개설

1970년 마을 앞을 가로지르는 호남 고속도로 건설 당시에 비좁게 설치된 통과박스와 농로로 인해 40여년 불편을 겪어온 태인면 점촌마을 주민의 숙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점촌마을 주민들은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20여 가구와 3.3ha의 농경지가 고속도로와 주변 산으로 둘러싸이게 됐다. 당시 설치된 비좁은 통과박스(2.3x3)를 이용해 농사를 지으면서 큰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던 중 마을주민들은 주민들이 고령화되고, 농기계화가 이루어지면서 대형 농기계 통행이 불편해지자 한국도로공사에 통과박스 확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 측은 호남고속도로 개선 계획이 없고, 통과박스 확장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정읍시와 한국도로공사, 국민권익위는 지난 11일 태인면사무소에서 중재안에 대해 최종합의를 했다. 이 합의안에 따라 국도로공사는 호남고속도로와 인접한 교량(증산교)에서 농경지로 진입할 수 있는 농사용 도로 1.1Km(폭5m)를 우선 개설한다.

그동안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현장조사 등을 거쳐 관계기관의 입장을 중재해 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11일 태인면사무소에서 최영만 부시장과 권익위 권태성 상임위원, 박명득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위원회를 열어 중재안에 대해 최종 합의를 끌어냈고, 시와 권익위, 한국도로공사 간 사업추진에 따른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한국도로공

사는 호남고속도로와 인접한 교량(증산교)에서 농경지로 진입할 수 있는 농사용 도로 1.1Km(폭5m)를 우선 개설하고, 앞으로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개선사업이 있을 경우 지금의 좁은 통과박스를 대형 농기계가 통행할 수 있도록 확장키로 했다.

또 시는 농사용 도로가 완료되면 도로부지 매수비용 일부를 부담하고이를 인수하여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정읍=김정인 기자(jkim@)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

산업노동환경민원

도시수자원민원

교통안전민원

고충민원특별조사팀

고속철도 건설 관련 지하차도 개선

민원번호 : 2BA-1407-186543(교통도로민원과)

▶ 민원 개요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 관련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사이 지하차도 66m구간을 미복개하여 강설과 도로 결빙으로 교통사고가 예상되니 복개하여 안전한 교통도로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시설 일부를 변경하여 시공하고, 그에 따라 차감되는 사업비를 캐노피 설치비용으로 충당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여 집단민원을 해결함

*집단민원(1,537명), 안전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이○○ 외 1,536명
- 피신청인 : 한국철도시설공단(호남본부)
- 관련기관 : 전라북도 정읍시장

2) 민원주요내용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호남고속철도건설 사업구간인 정읍시 소재 농소지하차도 미복개 구간을 캐노피로 복개·설치할 것을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캐노피 설치의 적정성
- (현장여건) 정읍시 호남고속철도 사업 구간 내 기존 호남선과 신설 고속철을 지나는 지하차도 7개소가 개설되어 있으나 민원 지하차도만이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사이 66m구간이 미복개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 사업이 금년 준공과 내년 3월 개통 예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고, 미 복개 구간의 제설 및 결빙 방지를 위해 자동염수분사방식으로 설계·시공할 계획으로 수용 곤란

- (정읍시장) 지역 특성상 강설이 잦은 지역이나 미 복개로 인한 도로 결빙 등으로 교통사고 빈발이 우려되므로 캐노피 설치가 절대 요구됨

2) 민원특성 : 안전민원, 집단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 등 조정 · 중재안 마련
- 현장 및 자료 조사를 통해 본 민원 발생 원인 분석
-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도로시설(캐노피 설치)을 설치하도록 결정

2) 갈등해결수단 : 갈등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해결 중심의 대안 도출

5. 조정 결과

- (한국철도시설공단)
 - 정읍시 관내에 설치하는 7개의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시설(염수분사장치, 벽면타일, 안전울타리 등) 일부를 변경 · 시공
 - 그에 따라 차감 발생하는 사업비를 농소지하차도 캐노피 설치 비용으로 충당하고 2015. 3. 까지 설치
- (전라북도 정읍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는 민원 캐노피 설치 사업비 총 18.5억 중 4억원을 제공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동절기 도로결빙으로 안전사고 위험 상존	• 도로시설물 개선 설치로 사고 위험 해소

2) 시사점

- 호남고속철도사업이 개통을 앞두고 막바지 마무리 정리 과정임에도 안전문제에 소홀 하지 않으려는 관계기관의 의지가 잘 정리되어 집단 민원을 해결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미

NEWSis()

2014년 09월 03일 (수)
종합

권익위, 호남고속철 정읍 농소지하차도 관계기관 중재·합의



【정읍=뉴스시스】김종호 기자 = 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호남고속철도 정읍 공사구간 중에 설치된 155m 길이 '농소지하차도'에 대해 겨울철 결빙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정읍시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정읍시청을 방문, 관계자 간 조정회의를 열었다. 지하차도 66m 개방구간에 대한 덮개설치를 전제로 하는 권익위 조정안에 서명한 철도시설공단 이현정 호남본부장과 김생기 정읍시장, 권익위 박재영 부위원장, 시민대표 이한욱 애향운동본부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4.09.03. seun6685@newsi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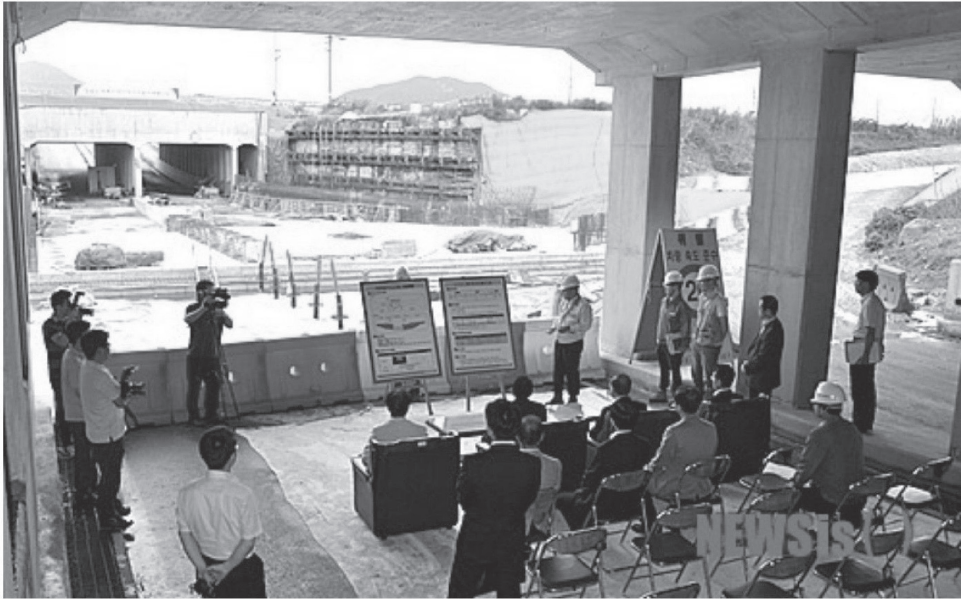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 적극적 중재·조정 돋보여

【정읍=뉴스시스】김종호 기자 = '정읍선상역사 신축 및 동서지하차도' 건설에 대한 원안추진 사안의 성공적 합의를 이끌어 냈던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시 한 번 호남고속철도 관련 집단민원으로 정읍을 찾아 문제를 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3일 오후 호남고속철도 정읍시 구간 '농소지하차도'에 겨울철 결빙방지 대책으로 덮개를 설치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또 민원당사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시민 대표를 비롯해 관계기관인 정읍시 간의 조정안을 마련, 3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다시 한 번 범시민적 민원을 해결해 내는 성과를 올렸다.

민원의 대상은 정읍시 농소동에 위치한 '농소지하차도'로 기존 호남선과 신설 고속철도를 한 번에 통과하는 길이 155m의 지하차도다.



【정읍=뉴스시스】김중호 기자 = 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호남고속철도 정읍 공사구간 중에 설치된 155m 길이 '농소지하차도'에 대해 겨울철 결빙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정읍시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정읍시청을 방문, 관계자 간 조정회의 열었다. 개방된 채 설치된 지하차도의 중앙 66m 구간에 대한 덮개설치 사안을 놓고 조정회의 전 관계자들의 현장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2014.09.03. seun6685@newsis.com

이 지하차도는 정읍시 구간에 설치된 7개 지하차도 중에서 유일하게 가운데 66m 구간 뒷부분이 개방된 채 설치됐다.

때문에 지하차도의 구조적 특성상 결빙 등으로 겨울철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시설공단에서는 고속철도의 총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별도의 예산을 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동염수분사방식'으로의 시공을 제안했고 반면 시민들은 덮개(캐노피) 설치 외에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서 좀처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었다.

이날 조정회의는 권익위 박재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시민대표인 애향운동본부 이한옥 본부장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현정 호남본부장, 김생기 정읍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현장조사를 실시했던 권익위는 지하차도의 개방된 구간에 총사업비 18억5000만원을 들여 덮개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전제로 서로 한발씩 양보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고 이에 3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다.

조정안은 총 사업비 중 정읍시가 4억원을 시비로 공동부담하고 시설공단은 사업비 절감을 위해 정읍시와의 협의를 거쳐 벽면 타일 등 시설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奎北日報

2014년 09월 04일 (목)
지역 12면

호남고속철도 정읍구간 농소지하차도 결빙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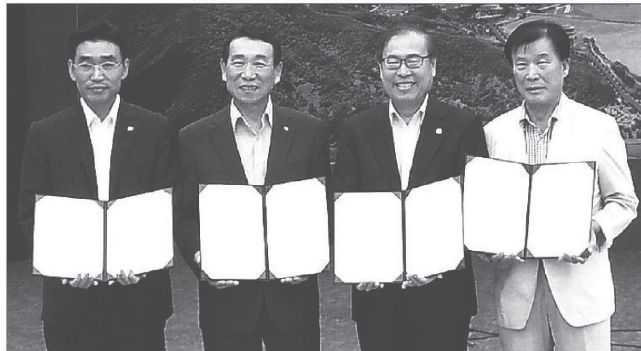
권익위, 현장조정회의 개최
철도시설공단 뚝개 설치키로
시 비용 공동부담 중재 이끌어

호남고속철도 정읍시 구간 농소지하차도에 겨울철 결빙방지 대책으로 뚝개를 설치해 달라는 정읍시민 1500여명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3일 오후2시 정읍시청에서 박재영 부위원장, 김생기 정읍시장, 이현정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장 및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권익위와 정읍시, 시민들에 따르면 정읍시 농소동에 있는 농소지하차도는 기존 호남선과 신설 고속철도를 연결하는 66m 길이의 지하차도로 정읍시를 지나는 7개 호남고속철 지하차도 중에서 유일하게 뚝부분이 개방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겨울철 눈이 많은 지역 특성상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우려하며 뚝개설치를 요구했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 공사가 12월 준공 예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지하차도는 '자동열수분사방식'으



3일 정읍시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재한 호남고속철도 정읍시 구간 농소지하차도 겨울철 결빙방지 대책 현장 조정회의에서 이현정 호남본부장, 김생기 시장, 박재영 부위원장, 이한욱 정읍시 예방운동본부장(사진 왼쪽부터)이 합의안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로 시공할 계획이어서 추가 공사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합의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정읍구간 7개 지하차도에 설치할 벽면타일등 시설일부를 정읍시와 협의하여 변경시공하고, 이로 인한 절감사업비를 농소지하차도 뚝개(66m) 설치비용에 충당한다.

또 정읍시장은 뚝개설치비 중 4억 원을 공동부담하고, 시민들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는 하지 않기로 했다.

박재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호남고속철도사업은 내년 3월 개통을 앞두고 마무리가 한창으로 시민안전문제에 귀 기울이고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 준 관계기관에 감사하다”며 “지하차도 뚝개 공사가 진행되는 을 겨울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 열수분사방식은 강설시 자동으로 열수를 분사하여 결빙을 방지하는 시설로 노면에 전기열선을 설치하여 제설 및 결빙을 방지하는 히팅시스템과 대비된다. 정읍=임정훈기자 hoonyou@

택지사업지구내 어린이 통학로 개선

민원번호 : 2BA-1406-230987(교통도로민원과)

▶ 민원 개요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어린이의 통학로가 8차선 도로를 횡단하게 되어 교통사고 등 위험이 상존하니 통학로를 안전하게 개선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학군을 재조정하여 통학로를 안전하게 개선하는 조정을 마련함에 따라 집단민원을 해결함

*집단민원(1,060세대), 안전민원, 생활불편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아파트 대표 나○○(입주세대 1,060세대)
- 피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
- 관련기관 : 경기도 교육감, 김포 교육장, 김포시장

2) 민원주요내용

- □□아파트 취학 아동의 통학로를 안전하게 개선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통학로 개선 및 학구 재조정 가능 여부
- (현장여건) 공동학구로 지정된 푸른솔초등학교와 운유초등학교 사이에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소재하고 운유초등학교는 통학로가 8차선 대로를 횡단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한국토지주택공사) 해당 한강2-6호선 대로는 이동성 위주로 설계(시속80Km)되어 이동성과 상충되는 과속방지턱 등의 시설물 설치 불가하나 펜스 등 이동성을 해치지 않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계획
- (경기도 교육감, 김포교육장) □□아파트 어린이의 통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 구역을 공동학구로 운영하여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2) 민원특성 : 안전민원, 생활불편 민원, 집단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 등 조정 · 중재안 마련
- 현장 및 자료 조사를 통해 본 민원 발생 원인 분석
-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도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학군 재조정으로 근원적인 해결점 모색

2) 갈등해결수단 : 갈등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해결 중심의 대안 도출

5. 조정 결과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강 2-6호선 대로에 어린이 안전구역임을 알리는 교통안전예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교통안전심의 위원회 상정
- (경기도 교육감) 혁신학교 지정 절차를 거쳐 푸른솔초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
- (김포 교육지원청 교육장) 학부모 의견 수렴 후 현행 공동학구를 단일학구로 변경
- (경기도 김포시장)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안전 시설물 설치 등에 적극 협력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불안정한 통학로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상존	• 도로시설물 개선 설치로 사고 위험 해소하고 학군 재조정으로 근본적인 해결

2) 시사점

- 겉으로 보이는 통학로 도로문제 뿐만 아니라 혁신학교 지정이나 학군조정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까지 협의가 이루어짐

믿을수 있는 인터넷 언론
CNNNEWS

2014년 09월 17일 (수)
종합

국민권익위원회, 김포한강신도시 통학로 집단민원 해결

운유초등학교 학생들 시속 80km로 설계된 8차선 도로 횡단해서 등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7일 오후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 안에 있는 푸른솔초등학교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달라는 모아미래도엘가 아파트 1,060세대 주민들이 지난 6월 제기한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김포 한강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지난 6월 입주한 모아미래도엘가 아파트는 인근에 공동학구로 지정된 일반학교인 푸른솔초등학교와 혁신학교인 운유초등학교가 있다.

푸른솔초등학교는 통학 시 아파트와 접해 있는 2차선 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나, 운유초등학교는 학부모가 선호하는 혁신학교임에도 통학을 위해선 시속 80km로 설계된 8차선 도로를 횡단해야 해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안전한 통학로 마련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8차선 도로(한강 2-6 호선)는 신도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과속방지턱 등 속도를 줄이는 시설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권익위는 민원접수 후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17일 오후 3시 푸른솔초등학교에서 주민들과 김원찬 경기도 부교육감, 박외순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록 김포시장, 박인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보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국방도원민원

경찰민원

산업노동환경민원

도시수자원민원

교통도원민원

고충민원 특별조사팀



이날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운유초등학교 통학로인 한강2-6호선에 초등학교가 인접한 곳임을 알리는 교통안전 예고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차로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하는 방안을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 경기도교육감은 여건이 성숙되면 절차를 거쳐 푸른솔초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기로 하고,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은 푸른솔초등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대다수가 동의하는 경우 푸른솔초등학교와 운유초등학교를 단일학구로 변경지정한다.

참고로 혁신학교는 교사중심의 주입·암기식 입시중심의 경쟁교육을 지양하고, 교사중심 수업에서 학생중심으로, 삶과 성장을 중시하는 능동적 학습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며 연 2회 교육감이 지정한다. 경기도는 관내 1,191개 초등학교 중 165개가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있다.

▲ 김포시장은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주민들은 경기도교육감과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진하는 푸른솔초등학교의 혁신학교 지정과 단일학구로의 변경지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 조정은 겉으로 보이는 통학도로 문제뿐만 아니라 혁신학교 지정이나 학구조정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까지 합의가 이루어져 뜻 깊다”면서, “어린이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포= 김진부 기자

형성 둔내정거장 통로암거 확장

민원번호 : 2AA-1404-092105(교통도로민원과)

▶ 민원 개요

둔내정거장 하부에 폭 6.0m, 길이 약 130m의 통로암거를 설치할 예정이나, 이 통로암거의 폭을 12.0m로 확장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통로암거를 확장하고 그 비용을 피신청인들이 부담하는 조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집단민원을 해결함

*집단민원(12가구), 생활불편 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이주보상대책 추진위원회 백○○, 이○○
※ 이주대상자 현황 : 12가구
- 피신청인 :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도 횡성군수

2) 민원주요내용

- 둔내정거장 아래에 설치되는 통로암거의 폭을 12미터로 확장 요구
※ 신청인 요구 수용시 공사비용 : 약 32억원

2. 주요 쟁점사항

- 둔내정거장 하부 통로암거 확장의 필요성
- 예산확보 방안 및 가능성 여부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둔내정거장에 편입된 주택의 이주단지가 둔내정거장 후면에 조성될 예정으로 향후 이 민원 통로암거는 이주단지의 유일한 통행로이므로 확장 필요
- (한국철도시설공단) 현재 둔내정거장 후면은 임야와 농지이므로 이 민원 통로암거 확장은 불필요. 다만, 도시계획이 있을 경우 횡성군에서 도시계획에 맞춰 확장 가능
- (횡성군수) 둔내정거장 후면은 도시확장 계획이 있는바, 이 계획에 맞춰 통로암거 확장 필요

2) 민원특성 : 생활불편 민원, 집단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 등 조정 · 중재안 마련
- '14. 5. 30., 10. 8. : 실지방문조사 및 피신청기관 협의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 · 설득

5. 조정 결과

-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도 횡성군수)
 - 당해 철도건설공사 준공 전까지 서원기(현) 42km860 지점에 위치한 통로암거의 폭을 6.0m에서 12.0m로 확장
 - 통로암거를 6.0m에서 9.0m로 확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부담하고, 9.0m에서 12m로 추가 확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횡성군수가 부담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이주자택지 입주자들의 통행불편 예상 • 둔내정거장 배후 지역 발전 저해	• 이주자택지 입주자들의 통행 불편 해소 • 둔내정거장 주변 지역 발전

2) 시사점

- 각 기관을 이해 설득하여 통로암거 확장 비용을 분담토록 하는 수용가능한 조정안 제시
- 둔내정거장 주변 지역 발전 가능성 마련

news1

2014년 10월 16일(목)
종합

권익위, '횡성 둔내정거장 지하통로 확장 민원' 중재



국민권익위 16일 원주-강릉 간 철도 건설사업으로 주민 집단민원이 제기된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내정거장 통로확장 건을 중재한 가운데 권익위 권태성 상임위원, 한규호 횡성군수, 철도공단 김영하 강원본부장, 지역주민 대표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횡성군). 2014.10.16/뉴스1 2014.10.16/뉴스1 © News1 권혜민 기자

횡성군-철도공단 간 중재로 지하통로 6m→12m 확장

(횡성=뉴스1) 권혜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6일 오후 원주-강릉 철도 건설사업으로 신설되는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내정거장의 지하통행로를 확장해야 한다는 주민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1시30분 횡성군 둔내면사무소에서 권태성 상임위원 주재로 조정회의를 열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횡성군이 사업비를 분담해 지하통로 폭을 기존 6m에서 두배인 12m로 확장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민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둔내정거장 뒤에 이주자 택지를 조성할 경우 교통량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주민들이 제기한 것이다.

그 동안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사고위험도 없고 인근에 지방도가 계획돼 있기에 통행로 확장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횡성군은 역세권 개발 등을 위해 확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는 양 기관의 입장을 조율, 이날 한규호 횡성군수와 김영하 철도공단 강원본부장,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로를 확장하도록 조율했다.

권태성 권익위 상임위원은 "폭 6m의 통로는 통행불편은 물론 정거장 동·서측을 차단해 지역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조정으로 통행여건이 개선되고 지역 발전의 계기도 마련됐다"며 "기관 간의 협업이 민원해결의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권익위는 이날 오전부터 둔내면사무소에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철도 건설에 따른 둔내면민들의 각종 민원을 상담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

산업유형민원

도시수자원민원

교통민원

고충민원특별소팀

항공기 소음 주민 지원사업 변경

민원번호 : 2CA-1408-075356(교통도로민원과)

▶ 민원 개요

항공기 소음대책지역인 ○○시 ○○아파트 주민지원 사업으로 승인 받은 아파트 복지회관 신축 사업을 수도관의 노후로 음용 및 생활용수로 부적합하다는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주민복지에 필요한 상수도 급수관 교체사업으로 변경·승인하여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급수시설 설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집단민원을 해결함

*집단민원(779명), 환경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아파트 입주자 대표 최○○외 496세대 778명(14. 8. 7. 접수)
- 피신청인 : 서울지방항공청장, 한국공항공사
- 관련기관 : 경기도 김포시장

2) 민원주요내용

- 주민지원 사업으로 승인 받은 아파트 복지회관 신축 사업을 상수도 급수관 교체사업으로 변경·승인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지원 근거 마련 여부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피신청인)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에도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 관리 및 수선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지원 사업반영이 곤란
- (관련기관) 주민지원 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근거 마련을 위해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 정비할 계획
 - ※ 경기도는 수도 옥내배관 지원을 위해 주택규모별 총 공사비 30 - 80%지원액 중 도비 30%, 시비70%의 지원을 위해 조례 개정 준비중이고, 서울, 대전, 대구광역시도 기 시행중 임.

2) 민원특성 : 환경민원, 집단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 등 조정 · 중재안 마련
- 현장 및 자료 조사를 통해 본 민원 발생 원인 분석
-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안전한 음용수로 건강한 생활에 기여할수 있도록 해결점 모색

2) 갈등해결수단 : 갈등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해결 중심의 대안 도출

5. 조정 결과

- (피신청인) 수도관 교체 지원근거 조례 정비시 지원사업 변경승인
- (관계기관) 2014년 내 수도 급수조례 개정후 변경승인 요청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식수 시설개선근거 미비로 주민 불편	• 안전한 음용수 확보로 주민건강에 기여

2) 시사점

- 지자체에서 마땅히 지원 근거가 없는 급수시설 설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주민 식 생활 개선 문제가 정리되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음용수로 건강한 생활이 가능해짐

선경일보 경인종합일보

2014년 11월 21일 (금)
종합 01면

권익위, 김포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급수민원 해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 19일 오후 김포시청 회의실에서 조정회의를 열어 김포 항공기 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변경을 두고 496세대 780여명의 김해아파트 주민들과 한국공항공사가 1여 년간 끌어온 갈등을 중재해결했다.

김포시 김해아파트는 1993년도에 준공된 22년차 건물로 1993년도 이전 건축법에는 당시 허용된 아연도금강관을 사용해 급수관을 시공했으나 1994년부터 시공이 금지된 자재로서 현재는 중금속 및 녹물로 인해 식수는 물론 생활용수로도 사용이 어려운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 이번 집단민원은 한국공항공사가 항공기 소음 대책지역인 주민

지원 사업으로 승인받은 아파트 복지회관 신축사업을 상수도 급수관 교체사업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으로, 지난 8월 권익위에 접수됐다. 그동안 서울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는 해당 지자체인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에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관리 및 수선비용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다며 사업변경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실무협의를 현장조사를 토대로 지난 19일 오후 2시 주민대표들과 유영록 김포시장, 유영근 김포시의회 의장, 안상로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 정세영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상임위원 주재로 양

측의 입장을 중재해 최종 합의를 했다.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내용에 따라 김포시장은 김포시 김해아파트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공사가 주민지원 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를 연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공항공사는 김포시가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여 사업변경신청을 하면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요청을 받은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이를 승인하기로 하며, 주민들은 향후 노후급수관 교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염정애 기자
skilbo@naver.com



연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개선

민원번호 : 2BA-1401-149718(교통도로민원과)

▶ 민원 개요

국도3호선 연천~신탄리 도로건설공사로 경기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와 신서면 도신리 일원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우기시 침수 피해가 예상되니 민원 공사 구간 중 STA.0+800~7+800까지 구간에 대하여 도로구역 내외의 배수로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관계기관들을 설득하여 방지시설 설치 및 토사 수로 정비, 배수계획 수립 등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조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집단민원을 해결함

*집단민원(120명), 생활불편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서○○ 외 119명
- 피신청인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경기도 연천군수
- 관련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민원주요내용

- 연천~신탄리 1공구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경기 연천군 연천읍과 신서면 일원의 배수시설 개량을 요구
- ※ 배수로 정비 구간 7.0km

2. 주요 쟁점사항

- 배수시설 개선의 필요성 및 개선 공사 시행 주체
- 배수시설 개선 공사의 범위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도로 구역 내 배수로는 정비가 되었으나 그 외 지역의 배수로는 정비가 되지 않아 2013년에도 축사와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으니 배수로 정비가 필요함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 구역 내 배수로는 설계변경 등 개선이 가능, 도로구역 외의 배수로는 자연발생한 토사수로로 이를 관리하는 연천군이 개선하여야 함
- (연천군수) 연천군 관내 마을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이유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가 원인이므로 도로 구역 외의 배수로 또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개선하여야 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의 배수로를 SOC 실증연구센터 내의 배수로에 연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가능

2) 민원특성 : 생활불편 민원, 집단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 등 조정 · 중재안 마련
- '14. 3. 21, 8. 14. : 출석조사(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연천군수)
- '14. 4. 4. : 실지방문조사 및 피신청기관 협의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 · 설득

5. 조정 결과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도로구역 내 토석류가 배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시설 설치
 - 침수피해가 심한 1, 3, 4, 6구역 기존 토사수로 정비
- (경기도 연천군수)
 - 소하천 정비 및 도로구역 외 지역의 기존 토사수로 정비
 - 도로구역 외 지역의 기존 토사수로의 토지 사용 사전 동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배수 계획을 반영하여 SOC실증센터 내 배수계획 수립 · 시공
- (신청인) 국도3호선 연천~신탄리 도로건설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우기시 농경지 및 주택, 축사 등 침수 피해 발생 • 연천군 주민들 장마철 침수피해 걱정	• 배수시설 개선으로 침수피해 예방 • 저지대 또한 원활한 배수 가능

2) 시사점

- 각 기관을 이해·설득하여 배수시설 개선 비용을 분담토록 함
- 7km에 이르는 국도 건설공사 구간에 대해 각 기관의 역할 및 임무 합리적 부여

현대일보

2014년 11월 24일 (월)
15면 사회



연천 상습침수피해, 해결 실마리 찾다

권익위, 국도3호선 연천~신탄리 공사 구간 배수로 개선 중재

지난 2012년부터 수차례 침수피해를 입었던 연천군 연천읍 육산리와 신서면 도신리 주민들의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 지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3호선 연천~신탄리 도로건설 공사로 인해 농경지·주택·축사 등이 상습적으로 침수, 지난 1월 도로 배수로와 연결된 기존 배수로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된 곳이다.

그동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도로구역 안에 있는 배수로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정비를 해 왔으나, 도로구역 밖의 지역은 범위가

넓고 사유지가 많아 개선이 불가하며 주민들이 요구한 약 7.0km 구간의 배수로를 방치해 왔다.

권익위는 그간 수차례의 실무협의회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연천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입장을 조율하고 21일 오후 2시 연천군 신서면 사무소에서 지역 주민들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안종환), 연천군수(김규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설관리단장(정남진)이 참석한 가운데 권대성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중재안에 따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건설공사 준공 전까지

도로구역 내 배수로의 흙과 돌이 기존 배수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 배수로도 침수피해가 심한 곳은 정비하기로 합의했다.

연천군은 경사가 심한 3곳은 산에서 흙과 돌이 내려오지 않도록 시설을 보강하고 배수로가 연결된 소하천을 정비하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분담해 기존 수로 일부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SOC 실증센터 건설로 설치되는 배수로에 도로의 배수로를 연결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했다.

연천/윤석진 기자
yj@hyundailbo.com

지방도 확장 개선

민원번호 : 2BA-1409-246054(교통도로민원과)

▶ 민원 개요

○○지역의 지방도 240m 구간이 면 소재 중심가를 1차선으로 협소하게 지나감에 따라 교통 혼잡과 사고가 빈발하니 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개선하여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이 도로 확장 및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조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집단민원을 해결함

*집단민원(185명), 안전민원, 생활불편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김○○ (무안군 주민 185명 대표)
- 피신청인 :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 무안군수

2) 민원주요내용

- 전남 무안군 해제면 양매리 873 일원의 805호선 지방도의 확장·개선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소요 재원 확보 여부
- (현장여건) 민원 도로는 지방도805호선과 도시계획도로로 중복 지정되었고, 약 240m 구간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협소하여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구간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전라남도지사) 민원 도로는 무안군수가 지정 관리하는 도로로 무안군수가 처리하여야 함
- (무안군수) 민원 도로는 지방도 805호선으로도 지정되어 도로관리청인 전라남도지사가 확장 개선하여야 함

※ 민원 도로는 2009. 9. 21. 무안군 도시계획도로로 최종 고시 (최초지정 : 1974년) 된 장기 미집행 시설이며, 2003. 3. 27. 군도26호선에서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로 승격 고시하였다.

2) 민원특성 : 안전민원, 생활불편민원, 집단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 등 조정·중재안 마련
- 현장 및 자료 조사를 통해 본 민원 발생 원인 분석
-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기관별 비용분담 등 역할 부여로 해결점 모색

2) 갈등해결수단 : 갈등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해결 중심의 대안 도출

5. 조정 결과

- (전라남도지사) 민원 도로를 확장·개선하기 위한 총사업비 중 공사비를 부담, 공사비는 무안군수가 보상비 예산을 확보한 후 무안군수와 협의하여 집행
- (무안군수) 민원 도로 확장을 위해 총사업비 중 보상비를 부담, 현행 1차선을 2차선 (폭 7m→12m)으로 확장·개선하는 사업을 전라남도지사와 협의·추진
- (신청인) 도로개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편입 토지 등에 대해 협의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력

※ 도로 확장 개선 총 사업비 : 약 17억원(공사비 5억원, 보상비 12억원)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기형적인 협소한 도로구조로 인해 잦은 사고 발생 및 위험 상존	• 도로확장으로 도로의 안전성 제고

2) 시사점

- 전라남도과 무안군이 민원 도로를 중복 지정관리하면서 도로관리 주체가 불명확하였으나 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하여 공사비를 분담함에 따라 집단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함

NEWSis. ()

2014년 12월 11일 (목)
종합

권익위, 무안군 해제면 상습정체도로 집단민원 해결



【서울=뉴스is】국민권익위원회 권태성 상임위원이 11일 전남 무안군 해제면사무소에서 상습정체도로 집단민원을 관계기관간 조정으로 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4.12.11.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뉴스파고

2014년 12월 11일 (목)
종합

권익위, 무안군 해제면 상습정체도로 집단민원 해결

전남도·무안군 사업비 분담해 확장(1차선→2차선)토록 중재

뉴스파고 hks4176@naver.com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소재지를 지나는 2차선 도로가 1차선으로 좁아지면서 상습교통정체 및 사고위험 등을 우려해 온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결되게 됐다.

해당도로는 무안군 해제면 양매리 873번지 일원의 면 소재지에 위치한 약 240m의 도로로, 일부구간이 전라남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 805호선과 무안군수가 지정한 도시계획도로(중로3-501호선)로 중복 지정돼 있다.

권익위는 지난 9월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을 받아 조사과정을 거쳐, 11일 오전 11시 무안군 해제면사무소에서 주민들과 위광한 전라남도 건설방재국장, 김철주 무안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권익위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전라남도과 무안군이 개선 사업비를 분담하는 것으로 최종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공사비를 부담하고, 무안군은 보상비를 부담해서 현재 폭 7m인 1차선 도로를 12m인 2차선으로 확장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해제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全南日報

2014년 12월 12일 (금)
종합 02면

무안 해제면 상습정체路 권익위, 집단민원 해결 전남도·무안군 사업비 분담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무안군 해제면 소재지를 지나는 2차선 도로가 1차선으로 좁아지면서 상습교통정체 및 사고위험 등을 우려해 온 집단민원을 중재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도로는 무안군 해제면 양매리 873번지 일원의 면 소재지에 위치한 240m의 도로로 일부구간이 전라남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 805호선과 무안군수가 지정한 도시계획도로(중로3-501호선)로 중복 지정됐다.

지난 1974년 11월 무안군이 도시계획도로로 최초 지정했으나 2003년 3월에 전남도에서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로 승격하면서 사업비 등 사업 주체를 놓고 논란을 겪었다.

권익위는 지난 9월 주민들로부터 이 같은 집단민원을 받아 조사과정을 거쳐, 무안군 해제면사무소에서 주민들과 위광한 전남도 건설방재국장, 김철주 무안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권익위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 전남도와 무안군이 개선 사업비를 분담하는 것으로 최종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공사비를 부담하고 무안군은 보상비를 부담해서 현재 폭 7m인 1차선 도로를 12m인 2차선으로 확장하게 된다.

장우석 기자 ws.jang@jinilbo.com

도서주민 교통 불편 해소

민원번호 : 2BA-1409-260948(교통도로민원과)

▶ 민원 개요

완도지역 도서 주민들의 낙도 보조항로 여객선인 섬사랑1호의 기항지를 완도군 소재 원동항에서 해남군 소재 남성항으로 변경 운행함에 따라 운항거리 및 시간이 종전 기항지보다 단축되었음에도 여전히 종전과 같은 여객 운임으로 운영하고 기항지에서 연계되는 대중교통이 없어 불편하니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 선박운임을 재조정 및 교통편의수단(100원 택시) 제공 등 조정안을 마련하여 집단민원을 해결함

*집단민원(151명), 생활불편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박○○ (5개 도서주민 151명 대표)
- 피신청인 :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 완도군수,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2) 민원주요내용

- 전남 완도군 백일도, 흑일도 등 완도 서부권 도서 주민의 낙도 보조항로 여객선인 섬사랑 1호의 기항지를 변경 · 운행 중이나 여객선 기항지와 연계되는 대중교통이 없으니 개선이 필요
- 백일도 기준 운항 거리가 종전 기항지보다 1/4 거리로 운항거리 단축에 따른 여객 운임을 재조정하고 육로 교통 편의를 위해 기항지 추가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육로 교통시설 확충여부

【 현장여건 】

- 해양수산부(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서 운영하는 낙조 보조항로인 섬사랑 1호는 완도군 서부권 5개도서 182세대 382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해상교통임
- 완도군 노화도 이목항에서 출발해 횡간도~흑일도~백일도를 거쳐 2012년부터 해역 수심이 낮아 월 10회 정도 결항함에 따라 도서주민들과 협의하여 기항지를 완도군 원동항에서 해남군 남성항으로 변경 · 운행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승객은 45명, 차량은 4대 이상 이용하고 있으나 내륙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 체계가 미비한 실정임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거리 단축에 따른 섬사랑1호 여객선 운임 조정과 교통편의를 위해 중간 기항지를 추가하는 방안 검토
- (전라남도 완도군수) 해남군 남성항 이용 완도 군민인 도서민은 소수에 불과하고 버스노선 연장시 주변 도로여건 및 기존 승객의 불편으로 버스연장이 곤란하다는 해남군의 입장과 달리 비록 행정구역을 달리하고 있으나 완도 군민인 신청인들의 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전라남도에서 시범 운영중인 100원 택시 제도 등에 반영할 계획
- (전라남도지사) 교통 취약자인 도서주민의 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완도군수가 100원 택시 공모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적극 검토 할 것
 ※ 100원 택시는 이낙연 전남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버스 운행이 안되는 벽지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버스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하게 하고 소요 비용은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제도

2) 민원특성 : 생활불편 민원, 집단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 등 조정·중재안 마련
- 현장 및 자료 조사를 통해 본 민원 발생 원인 분석

2) 갈등해결수단 : 갈등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해결 중심의 대안 도출

5. 조정 (협의) 결과

-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2015년부터 선박운임을 재조정 운영하고, 신청인들과 협의 후 해남군 소재 갈두항(땅끝항)에 추가 기항 추진
- (완도군수) 섬사랑1호 이용 도서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100원 택시 운영을 위한 조례정비 및 예산 확보 후 도지사와 협의 추진
- (전라남도지사) 완도군수로부터 100원 택시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반영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해상교통과 육상 대중교통 연계체계 미흡으로 주민 불편 상존	육상 대중교통 투입으로 선착장 연결하는 대중교통 체계 마련

2) 시사점

-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2년여 동안 소외 된 낙도 주민들에게 해상과 육로를 연결하는 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문제까지 합의가 이루어짐

KBS 목포

2014년 12월 12일 (금)

[뉴스9] '백 원택시'로 섬 주민 교통 불편 해소



[앵커멘트]

완도 백일도 등
완도 서부권 5개 섬 지역 주민들이
육지를 오갈때
해남 남성항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기항지와 연계되는
대중교통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컸던 이 곳에
내년부터 백 원 택시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중 교통이 없는
외진 곳에 위치한 해남 남성항.
완도 백일도와 흑일도 등
완도 서부권 5개 섬 주민들이
육지를 오갈 때 이용하는 곳입니다.

2년 전,
기존 완도 완동항이
낮은 수심으로 결항이 잦아
이 곳으로 기항지를 변경했습니다.

<인터뷰>정혜영/
"콜택시 이용해야 하니까 부담이 커요.
몇 명이 함께 모여서 택시 불러서
다니고."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이 곳에
'''백원 택시'''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는
현정 조정 회의를 열고
완도군은 내년에
전라남도의 '''백원택시''' 사업에 공모하고,
전라남도노는 이를
적극 검토해 반영하라는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또 기항지 변경으로
백일도를 기준 운행거리가
기존 9km에서 4km로 단축됐지만,
운임은 그대로라는 지적에 따라
운임체계도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바뀐 운임은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인터뷰>국민권익위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직접
5차례 현장을 보고 다니면서 판단.."
이밖에도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해남 땅끝항에도 부정??적으로
여객선을 운항하도록 해
섬 주민들의 오랜 고충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객선평입니다.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 stylized graphic of three overlapping leaf-like shapes in shades of gray, positioned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2014년
고충민원
조정사례집

고충민원 특별조사팀

01 우륵교 차량통행 등 교통난 해소 요구

우륵교 차량통행 등 교통난 해소 요구

민원번호 : 2BA-1312-243547 (고충민원특별조사팀)

▶ 민원 개요

강정고령보 위에 설치된 교량인 우륵교의 차량통행이 달성군 및 대구광역시의 반대로 불가한바, 우륵교의 1.2km 소요거리를 사문진교로 12km 돌아감으로써 주민 생활불편 및 연간 300억원의 물류비용 발생, 사문진교의 교통체증 악화 등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우륵교 차량통행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고령군 주민 13,048명의 집단민원에 대하여 군민 간, 의회 간, 고령군 및 경상북도와 달성군 및 대구광역시 등 지자체 간 갈등을 끈질긴 대화와 중재 노력 끝에 광역도로 개설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여 조정·중재

* 13,048명의 집단민원, 지역갈등 민원, 의회 등이 개입한 정치적 민원, NIMBY민원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고령군 주민 13,048명
- 피신청인 : (고령군수 · 경상북도), (달성군수 · 대구광역시)
- 관련기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

2) 민원주요내용

- 강정고령보에 설치된 우륵교의 차량통행이 불가하여 불편과 손실이 크고, 사문진교의 교통체증이 심각하므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우륵교 차량통행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경제적 타당성, 교통안전 등 우륵교 차량통행 가능여부
- 기관장, 지역주민, 의회 등 지역 간 갈등 해소
- 광역도로 개설 추진 가능여부

3. 갈등 분석

- (고령군 및 경상북도) 차량통행 차단으로 사문진교로 12km 돌아감으로써 교통체증 및 많은 물류비용이 발생하므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우륵교의 차량통행이 필요

- (달성군 및 대구광역시) 인근상가 및 주민반발, 문화관광 자원 훼손, 보행안전성 저해, 진입도로 개설에 막대한 비용 소요 등으로 차량통행을 수용하기 어려움
- (부산지방국토청 및 수자원공사) 시설보완, 교통 안전대책, 자전거 종주노선 확보, 차량 제한통행 방법 등 문제점 보완 및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14. 3.~9.) 16회, 출석조사('14. 6. 3.)
- 3년간 지속된 주민 간, 기관 간 첨예한 갈등을 광역도로 개설이라는 대안을 제시

2) 갈등해결수단: 제3의 중재안 제시

5. 조정 결과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광역도로 개설을 적극 추진, 광역도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추진내용, 방법, 예산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
- (달성군수와 고령군수) 광역도로 개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역 간 교통난 해소와 화합 차원에서 이에 적극 협조하고, 상호 협력
- (부산지방국토청과 수자원공사) 광역도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지역 간, 주민 간, 기관 간 갈등 증폭 • 광역도로 개설 등 대안 전무 • 지역 간 정치적 대립	• 지역 간, 주민 간, 기관 간 갈등 해소 • 광역도로 개설 추진 중 • 경제적 효과 및 지역 화합 기대

2) 시사점

-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관계기관 및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고, 제3의 대안을 제시하여 우рук 차량통행을 둘러싼 지역 간, 기관 간 첨예한 집단갈등을 해소하는 계기 마련

- 아울러 매년 3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고령군 및 달성군, 대구와 경북 간 지역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끌어냄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 광역도로 개설 사업 국토부 투자심사 통과('14. 9. 15.), 기재부 예비타당성 용역 대상사업 최종 선정('14. 11. 28.), KDI 주관 예비타당성 용역 착수보고 회의 개최('15. 1. 20.) 등 광역도로 사업 추진 중

KBS 대구

2014년 09월 11일 (목)

[뉴스9] 달성군-고령군 3년 갈등 종지부...새 다리 건설



[앵커멘트]

낙동강 강정고령보 상단 우측교의
차량 통행을 두고
대구시 달성군과 경상북도 고령군이
3년 가까이 끌어온 갈등이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 상류 8백 미터에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류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건설한
강정고령보 상단의 우측교입니다.

대구 달성군 다사읍과
경북 고령군 다산면을
최단거리로 왕래할 수 있는 다릅니다.

하지만 다리 입구는
차량 통행을 막기 위한
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애초에 자전거 종주나
보를 관리할 목적으로 우측교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국방노동위원회

경찰민원

산업노동환경시민원

도시수자원민원

교통도로민원

고충민원특별조사팀

차량통행이 허용되지 않자,
고령군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대구로 갈때
우륵교를 이용하지 않으면
인근의 사문진교를 통해
10Km 이상이나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서우/경북 고령군 다산면
'바로 코 앞에 있는 거리를 12킬로미터로
돌러 가는 것도 일입니다.'

반면 우륵교 건너
대구시 달성군의 입장은 다릅니다.

교통체증이 우려되는데다
다리의 안전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차량통행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양 지자체의 주장이
침예하게 맞서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구시장과 경상북도지사 등
4개 지자체장을 불러 모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강정고령보
상류 8백미터 지점에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달성군 다사읍과 고령군 다산면 사이에
3.9Km의 광역도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의현/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
"향후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역도로 건설은
전체 천 3백 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절반은 국비, 나머지는
대구시와 경상북도,
그리고 달성군과 고령군이
분담할 예정입니다.

달성군-고령군 갈등 중재한 국민권익위

지자체 간 갈등을 빚었던 현안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법을 찾은 것은 조정과 대화의 힘을 증명한 사례다. 또 이해관계에 따라 지자체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졌다고 여겨진다.

낙동강 강정고령보 상단에 설치된 우록교 차량 통행 여부를 두고 시작된 달성군과 고령군의 마찰은 첨예했다. 2011년 강정고령보 완공 후 고령군 주민들은 교통 편의 등을 이유로 우록교 차량 통행 허용을 요구했으나, 낙동강 맞은편에 위치한 달성군은 수질 오염과 안전사고를 우려해 완강히 반대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고령군 주민 1만3천여명은 청와대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국민권익위가 중재자로 나선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달성군과 고령군을 10여차례 방문하며 적극적인 중재활동을 펼쳤다. 결국 강정고령보 상류 1km 지점에 달성군 다사읍과 고령군 다산면을 잇는 연장 3.9km의 광역도로를 건설하는 방안으로 합의점을 도출했다. 합의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예산을 조기 확보해 도로 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11일 강정고령보 디아크 다목적댐에서

열린 현장 조정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장 을 비롯해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달성군수, 고령군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자원공사 대구경북본부장, 고령군 주민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 면면을 보더라도 여러 지자체와 정부기관이 얽혀 있었던 복잡한 현안이었음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록교 차량 통행 여부는 달성군과 고령군이 3년 동안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대립한 탓에 전혀 풀릴 기미가 없었던 공공갈등의 대표적 사례였다. 그럼에도 갈등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 것은 국민권익위의 중재와 이해당사자의 양보 덕분이었다. 우록교 난제 타결은 대구시와 구미시의 해묵은 현안인 대구 취수원 낙동강 상류 이전도 중재와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다.

대구 취수원 이전은 250만 대구시민의 깨끗한 물 음용과 관련된 시급한 문제로, 계속 미룰 수만은 없는 사안이다. 국토교통부와 대구시, 구미시, 경북도 등 관련 기관에서 우록교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중재자로 나서면서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의 장(場)을 마련하는 것이 갈등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014년 고충민원 조정사례집

발행일 2015. 8
인 쇄 2015. 8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 민원조사기획과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전 화 044-200-7314
팩 스 044-200-7928

제작 · 인쇄 서울기획인쇄 044-866-2181

